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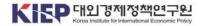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김흥종 외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김흥종 외



연구보고서 16-17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인 쇄 2016년 12월 25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유월애 02) 859-2278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 가 10.000원

ISBN 978-89-322-1632-4

978-89-322-1072-8(세트)



서 언

2016년 6월 23일에 실시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브렉시트 찬성은 미처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전세계 외환·금융 시장이 크게 출렁였고, 국경을 닫아걸겠다는 반세계화 움직임이 더욱 힘을 얻었으며, 유럽통합의 미래에 대한 회의감마저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어느 정도 수습되었으나, 2017년부터 시작되는 영국의 EU 탈퇴협상은 유럽체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해외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경제에도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브렉시트의 성격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는 협동연구 형태로 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습니다. 이 연구가 협동연구로 진행됨에 따라 브렉시트 탈퇴협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과 법적 쟁점,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 · EU FTA를 포함한 한 · EU 통상관계의 변화 등에 대하여 폭넓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브렉시트의 성격과 향후 진행 절차, EU의 제도적 환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브렉시트의 배경과 경과과정, 탈퇴절차 및 향후 영국과 EU의 관계, 한국과의 경제관계 전망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며, 거시경제와 산업의 측면에서 브렉시트의 영향을 살펴보고 분야별로 그 충격을 예측해야 합니다. 거시경제적 영향에서는

단기적 영향과 중장기적 영향이 다를 것이고, 산업별 영향에서는 제조업 분야를 포함하여 농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하며, 충격의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구분하여 정밀하게 계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GVC를 고려한다면 국제투입산출모형 분석도 필요합니다. 자본ㆍ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제도적 접근방법과 자본ㆍ금융 시장 특유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에 의한 영국의 EU 탈퇴절차, 그리고 한국과의 통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EU 법과 조약법 일반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탈퇴절차에서는 리스본 조약 50조의 엄밀한 해석, 단일시장 접근성의 법적, 제도적 해석이 필요하며, 인적자유이동에서는 근로자와 시민권을 구분하고 동일성의 원칙 적용여부 등을 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 EU FTA 개정 분야에서도 개정의 주체, 조약개정의 절차와 의무, 보상가능성, 잠정적용 등 법적 쟁점을 광범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경제 및 통상연구를 해왔으며, 한 · EU FTA 협상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던 본원 구미 · 유라시아본부 유럽팀의 김흥종 선임연구위원이 연구를 주도하였으며, 유럽팀의 임유진 연구원, 국제거시금융 본부의 한민수 부연구위원, 무역통상본부의 김영귀 연구위원, 김종덕 부연구위원과 조문희 부연구위원이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연구원의 민성환 박사, 홍성욱 박사와 자본시장연구원의 천창민 박사, 최순영 박사, 그리고 유럽법 전문가인 고영노 법무부 전문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에 참여

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 연구는 또한 진행과정에서 학계와 정부의 귀중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연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국제거시금융 본부의 정성춘 본부장에게 감사하며, 연구의 심의를 맡아주신 본원의 김영찬 초청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강유덕 교수, 기획재정부의 최지영 과장, 산업통상자원부의 제경희 과장, 삼성경제연구소의 김득갑 박사에게 감사드립 니다.

이 연구는 원내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의 연구 총괄 및 연구참여(브렉시트 배경, 경과과정, 전망, 정책 시사점 등), 원내 국제거시금융본부(거시경제적 효과-단기충격) 및 무역통상본부(중장기 거시경제효과 및 산업별 수출·생산 효과), 그리고 원외의 산업연구원(산업별 수출 영향), 자본시장연구원(금융·자본 시장 영향) 및 법무부(조약 및 협정문 분석)의 공동연구로 추진된바, 다양한 기법의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이 융합되어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브렉시트의 영향을 여러 각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다수의 원내외 세미나를 통해서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연구자간 협의를 통해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장점으로는 우선 적절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으로 연구 우수성을 높이는 데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관련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브렉시트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 및 향후 전망, 그리고 거시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산업별 수출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 자본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탈퇴절차와 한 · EU FTA 개정상 제기되는 법적, 제도적 불확실성과 문제점에 관하여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나쁘지만은 않다는 점,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 GVC의 편입 정도에 따라 제조업 내 세부 산업별 영향이 다르다는 점, 자본 ·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탈퇴절차에서 단일시장 접근성 및 동일성 원칙 적용여부에 따른 법적, 제도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 추가의정서를 통한 한 · EU FTA 개정 가능성 및한 · 영 FTA 협상을 염두에 둔 한 · EU FTA 개정 시 고려사항, 한 · 영 FTA 협상 시 대영관계 MFN 적용여부 등 다수의 고려사항에 관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다 풍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외개방에 관한 영향평가를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1차금속, 자동차, 화학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해야 하며,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활동보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어서 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한 · EU FTA에서 한 · 영 특혜관계의 잠정 적용을 명문화해야 하고, 한 · 영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 연구가 향후 정부의 대(對)유럽 및 대세계 경제통상정책의 수립과 집행,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 정 택



국문요약

2016년 6월 23일에 실시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국민은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하였다. 국민투표 결과 이후 영국의회의 승인 절차에 따라 영국정부와 EU 간 탈퇴협상의 시작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탈퇴과정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탈퇴협상이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협상 연장의 동의를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문제가 있으며, 탈퇴협상 후 협정문이 완성되어도 EU의 배타적 권한의 범위에 따라 각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할분야에 대한 처리문제, EU 의회 승인과정에서 영국의원들의 투표권 문제 등 곳곳에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

브렉시트 후 영국과 EU 간의 관계를 상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단일 시장 접근성 허용 여부인데, 이는 4대 이동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독자 적 통상정책과 이민 통제권, 동일성 원칙의 유지여부가 단일시장 접근성을 가 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패스포팅 권한을 유지하려면 4대 이동의 자유를 제 한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 단일시장모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 분적 단일시장모형의 경우에 자연인의 이동 중 일부 범주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은 FTA에서의 허용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타 3대 이동의 자유를 EU가 받기 어렵다. 비(非)단일시장모형으로서 FTA의 경우 패스포팅 권한을 유지하 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영국이 탈퇴협상을 통해서 단일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계경제의 GDP를 2017년 0.06 ~0.34%, 2018년에는 0.12~0.66% 감소시키며, 우리 경제의 GDP에도 2017년 0.06~0.35%, 2018년 0.15~0.78%만큼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브렉시트는 2017~18년 사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2p 정도 상승시키며, 실 업률도 약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와 투자에도 부정적이나 소비보다 투자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비는 최대 0.38% 감소하는 데 반해 투자와 수출은 각각 0.05~0.74%, 0.08~1.18% 감소가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간 경제관계를 약화시키고 이러 한 효과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는 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에서 오히려 긍정 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드브렉시트와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를 나 누어서 분석해 보았는데, 각각의 경우 우리 경제에 0.088%와 0.043%의 경제 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되어, 하드브렉시트의 경우가 소프트브렉시 트의 경우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 영국과 EU 경제에는 큰 악영향이 예상되는데.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영국과 EU는 각각 -1.56%, -0.18%,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각각 -0.949%, -0.133%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영국과 EU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한 · 영 FTA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 · 영 FTA가 없는 경우와 비교를 해 보면 한 · 영 FTA를 체결할 경우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0.038%p, 소프트브 렉시트의 경우 0.037%p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 · 영 FTA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영국과 EU 간 탈퇴협상의 최종형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은 한국과 FTA를 맺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0.018%p,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0.017%p 정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EU는 반대로 어느 경우에서든지 한 · 영

FTA가 없는 경우 0.002%p 정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한 · 영 FTA 체결은 브렉시트로 인한 이득을 약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다.

한편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전 산업의 대(對)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 투입산출분석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브렉시트는 우리 산업의 대영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효과는 제3국의 대영 수출이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3국 수출이 영향을 받는 경로인데, 직접효과의 3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보다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낮고 글로벌 가치사슬이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더 클 것이다.

다음으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제조업 세부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함수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산업별 브렉시트로 인한 GDP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파악해 보았는데, 우리의 대EU 수출에서 1차 금속과 화학산업이 EU의 GDP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산업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영국 수출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산업이 GDP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고, 섬유 및 가죽산업이 GDP 충격에 가장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브렉시트로 인하여 EU나 영국의 GDP가 감소하면 일차적으로 1차금속과 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등의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상은 단기적 거시경제 변화 분석 시 사용한 시나리오별로 추계해 보았을 때도 유사한 추세를 보여준다. 즉 대EU 수출에서는 1차금속과 화학, 섬유가죽이, 대영 수출에서는

자동차, 화학, 1차금속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추정하였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기타수송기기와 기계류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생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직물의 경우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의복과 전자, 화학, 기타제조업에서 생산이 증가하나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 반면 기타수송기기, 기계, 자동차, 철강, 섬유, 비철금속에서 생산이 감소한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에는 그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수 있다.한・영 FTA가 없는 경우에는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산업에 따른 증감이 혼재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산업 생산이 감소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의 금융 및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활동을 보면, 국내 금융회사의 관점에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패스포트 제도의 유지여부인데, 영국에 진출한 국내은행들의 경우 상당수는 대륙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이 있고, 없는 은행들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영국에 집중되어 있어 패스포팅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상황은 유사하다. 국내 금융회사의 사업 현황을 종합해볼 때 단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영국을 포함한 EU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유럽지역의 해외사업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는 해외

사업 전략을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보면, 한국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럽 투자자들의 투자여력과 한국 자산의 상대적 매력도이다. 즉브렉시트로 인한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주요 변화는 규제적인 요인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특히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및 EU의 경제성장률 둔화 수준과 이에 따른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여력 및 포트폴리오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한 · 영, 한 · EU 간 통상관계는 한 · EU FTA의 개정, 영국과 EU 관계, 탈퇴협정의 내용, 영국과 EU의 국내 정치상황 등 여러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 · EU FTA 발효 5년이 지나 새로운 단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고려해볼 때 이 FTA에 의해 양국에 부여하던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한국과 영국이 양자 통상협정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양국 통상관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EU 탈퇴와 동시에 한 · EU FTA는 영국에 대해 종료되므로 한국과 영국은 양국의 무역에 적용할 통상 규범을 되도록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 한국과 EU는한 · EU FTA에서 영국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는 협정 개정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협정의 효력이 계속해서 양측에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 영 관계에서는 우선 새로운 한 · 영 FTA의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한 · 영 FTA 체결을 추진할 경우 EU 법상 '성실한 협력 의무'로 인해 탈퇴협정 타결 전에 영국이 독자적으로 한국과 FTA 협상을 시작할 수 없으므로 한시적이지만 양국간 무역 특혜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 EU FTA를 개정할 때, 영국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 · 영 FTA 발효 시까지 한시적으로 한 · EU FTA를 영국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개정 협상에 영국이 EU와 함께할 수 있으므로 협정 종료 이전에도 협상이가능하고, 협정 종료 전에 협상을 추진하게 하므로 양국의 무역 특혜가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에도 좋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 · EU FTA가 혼합협정의 성격이 있으므로 개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잠정 적용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FTA 등 개방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이행평가를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한 종합 평가로 확대하고 이를 규범화하여 개방적 통상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개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브렉시트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반세계화, 자국중심주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지난 30여 년 동안의 개방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선진국 국민들은 지금의 경제적 침체를 개방화와 세계화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브렉시트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대외개방을 통해서해외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경쟁을 제고하여 경제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통상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개방의 효과를 엄밀히 분석하고 개방의 혜택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에 따른 국내 경제의 충격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평가보고서가 모든 개방정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 EU에 대한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 본 등 다른 주요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 을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업계 및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고, 특히 한국의 대영, 대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조업, 특히 1차금속, 자동차, 화학 등 우리의 핵심 수출상품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간접효과가 직접효과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많이 편입된 품목일수록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는 영국과 EU 양국간의 관계보다 양국과 우리나라가 어떠한 무역특혜관계를 재설정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영국과 EU 간의 관계가 어떻게 결정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유럽 통상전략은 일단 영국과 유럽 대륙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단위로 생각했던 EU를 분리하여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영 및 대EU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대영 통상전략은 영국이 갖고 있는 다층적인 경제관계, 즉 대서양 관계(미국-영국), 영연방 (Commonwealth), 영국-일본, 영국-중국 관계, 그리고 영국-EU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연방, 일본, 중국 등 영국과 주요 대외통상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EU 국가로서의 영국'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던 범주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넷째, 영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대영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본 시장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유럽 대륙에서 영국의 활동은 좀 위축될 수 있으나 여타 지역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활발

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패스포팅 권한의 상실이 한 · 영 및 한 · EU 간 금융 ·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차원에서 영국자본을 더욱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섯째, 한 · EU FTA의 개정작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협정문에 대한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덧붙이는 형태로 영국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 EU FTA 협상 당시 영국의 이해가 EU의 그것과 비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영국조항의 삭제는 한국과 EU 간 이해의 균형을 깰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 EU FTA 개정작업이 단순히 브렉시트의 내용을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효 5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국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한 · EU FTA 개정 당시에 한 · 영무역특혜관계의 갑작스러운 소멸을 예상하여 한 · 영관계에서 한 · EU FTA 잠정적용 또는 MFN 관계 적용유예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한 · 영 FTA와 관련하여 영국은 한국과 잠정협정의 형태로 한 · EU FTA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이 잠정협정을 새롭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잠정협정 기간 중 상대방의 예상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특히 과거 한 · EU FTA 협상 당시 영국 측의 요구가 있었으나 EU 차원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 양국간 산업구조 차이로 인한비교우위 분야, 그리고 영국 · EU 간 누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 법률서비스 등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 농산물

지재권 추가 보호, 투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일곱째, 한 · EU FTA에서 EU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부 조항이 영국에 대해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범위는 지식재산권의 형사적 집행과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조항에 한정되어 사실상 협정 본문 대부분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해 영국과의 정책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브렉시트와 같은 반세계화적 사건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개방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에 우호적인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 WTO 등 다양한 국제기구나 G20, ASEM, APEC 등 다자간 협력체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개방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김흥종 · 임유진) ····································	23
1. 연구의 배경	24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5
3. 선행 연구	27
4. 보고서의 구성	29
제2장 브렉시트의 배경, 경과과정 및 향후 전망(김흥종·임유진·고영노)···	31
1. 배경	32
가. 영국적 정체성(Britishness)과 유럽회의주의	33
나. 국내정치적 요인	35
다. 이민 문제의 대두 ·····	36
라. EU 분담금 문제 ·····	38
2. 경과과정	
3. 탈퇴절차	41
가. EU 조약 제50조에 따른 탈퇴절차 ······	42
나. 탈퇴절차와 관련한 주요 법적 문제	45
4.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 ·····	48
가. EU 단일시장 ·····	49
나.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 ·····	57
5 소격	63

제3장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효과(한민수·김영귀) ······	65
1. 단기적 효과	66
가. 분석모형과 방법 ·····	66
나. 브렉시트 파급 시나리오 및 가정	68
다. 분석결과	69
2. 중장기적 효과	73
가. 분석모형 및 자료 ·····	73
나. 분석 시나리오 ····	75
다. 분석 결과	·· 79
제4장 브렉시트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김종덕·조문희·홍성욱·	
민성환 · 김영귀 · 천창민 · 최순영) ·······	85
1. 브렉시트의 파급경로 분석: GVC를 중심으로 ·····	86
1. 브렉시트의 파급경로 분석: GVC를 중심으로 ····································	
	86
가. 브렉시트와 세계 투입산출	·· 86 ·· 90
가. 브렉시트와 세계 투입산출 ····································	·· 86 ·· 90 ·· 92
가. 브렉시트와 세계 투입산출 ····································	·· 86 ·· 90 ·· 92 ·· 98
가. 브렉시트와 세계 투입산출 ····································	·· 86 ·· 90 ·· 92 ·· 98 ·· 98
가. 브렉시트와 세계 투입산출 ····································	·· 86 ·· 90 ·· 92 ·· 98 ·· 98 112
가. 브렉시트와 세계 투입산출	·· 86 ·· 90 ·· 92 ·· 98 ·· 98 112
가. 브렉시트와 세계 투입산출	·· 86 ·· 90 ·· 92 ·· 98 ·· 98 112 122
가. 브렉시트와 세계 투입산출	·· 86 ·· 90 ·· 92 ·· 98 ·· 98 112 122 128 130

제5장 브렉시트와 한·EU 통상관계(김흥종·고영노) ·····	157
1. 브렉시트와 한·EU FTA 5주년	158
2. 브렉시트에 따른 한·EU FTA 변화 ······	161
가. 혼합협정 문제	161
나. 영역적 적용 조항에 의한 협정의 자동 종료	164
다. 협정의 폐기	165
3. 한·EU FTA와 한·영 FTA ······	165
가.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력 유지 ······	166
나. 한·영 FTA 체결 ······	169
다. 통상 관련 국내법 적용	170
4. 소결 ·····	171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김흥종)	173
1. 요약	174
2.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178
참고문헌	183
부록	195



표 차례

丑 1-1.	브렉시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29
垂 2-1.	EU 탈퇴 이후 단일시장 형태 및 그 영향 ·····	58
垂 3-1.	브렉시트의 영향 시나리오	69
垂 3-2.	한국의 지출항목별 성장률 전망	72
丑 3-3.	EU와 영국의 서비스 산업별 교역장벽 ······	75
표 3-4.	시나리오 구분	76
丑 3-5.	브렉시트의 경제성장 효과(한 · EU FTA 유효) ······	80
 3-6.	브렉시트의 경제성장 효과(한 · EU FTA 변경) ······	82
표 3-7.	브렉시트의 소비자 후생효과(한 · EU FTA 유효) ······	83
丑 3-8.	브렉시트의 소비자 후생효과(한 · EU FTA 변경) ······	84
丑 4-1.	세계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 국가 분류	89
丑 4-2.	세계 투입산출표 구조(7개 지역, 1개 산업)	91
丑 4-3.	세계 투입산출표 구조(7개 지역, 1개 산업)	92
丑 4-4.	부가가치 비중행렬(7개 지역, 1개 산업)	94
丑 4-5.	산업별 영국 생산 변화	95
丑 4-6.	직접효과로 인한 한국의 대영국 수출 변화	95
丑 4-7.	미국의 대영국 수출 변화	96
丑 4-8.	간접효과로 인한 한국의 대미국 수출 변화	96
丑 4-9.	브렉시트로 인한 한국의 수출 변화	97
丑 4-10.	한국 수출 변화의 직접효과 대비 간접효과 비중	98
丑 4-11.	한국 \cdot EU 및 한국 \cdot 영국 간 주요 품목별 교역 구성비 추이 \cdots 1	04
丑 4-12.	한국 · EU 및 한국 · 영국 간 주요 품목별 수출 구성비 추이 … 1	.05
丑 4-13.	한 · EU FTA 발효 이후 주요 품목별 수출 활용률 추이	
	(MTI 1단위 기준) ···· 1	.08
丑 4-14.	한 · EU FTA 발효 이후 EU 회원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추이 · 1	.09

표 4-15. EU의 대한국 주요 품목별 수입 관세율 ······ 111	
표 4-16. ADF 단위근 검정 결과 ····· 114	
표 4-17. 공적분 검정 결과 116	
표 4-18. ARDL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 119	
표 4-19. 장기균형 계수분석 결과	
표 4-20. 시나리오별 수출전망의 전제조건 122	
표 4-21. 시나리오별 산업별 수출 전망 123	
표 4-22. 기준 시나리오 대비 각 시나리오별 대EU 수출의 증감률 변화분 ···· 126	
표 4-23. 기준 시나리오 대비 각 시나리오별 대영 수출의 증감률 변화분 126	
표 4-24. 브렉시트 모형별 회원국의 권한 비교 135	
표 4-25. 지역별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수 현황 144	
표 4-26. 업권별 국내 금융사의 영국 및 EU 해외점포 수 추이 ······ 145	
표 4-27. 영국 및 EU 진출 은행 현황 ······ 146	
표 4-28.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자산 규모 추이 147	
표 4-29.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당기순이익 추이 148	
표 4-30. 영국 및 EU 진출 국내 증권사 현황 ······ 149	
표 4-31. 국내 증권사의 해외점포 자산 및 자본 추이 150	
표 4-32. 국내 증권사의 해외점포 당기순이익 추이 151	
표 4-33. 영국 및 EU 진출 국내 자산 운용 사 현황 ······· 151	
표 5-1. 한 · EU FTA 발효 5년 후 한국의 상품 양허표 ······ 158	
표 5-2. 한·EU FTA 발효 5년 후 EU의 상품 양허표 ····· 159	
부록 표 1-1. 세계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 산업 분류 196	
부록 표 2-1. 투입계수행렬(7개 지역, 1개 산업) 198	
부록 표 2-2. 생산유발계수행렬(7개 지역, 1개 산업) 199	
부록 표 2-3. 부가가치비중행렬(7개 지역. 1개 산업) 201	



그림 차례

그림 2-1.	영국 이민자 현황(1970~2014년) 37
그림 2-2.	영국민들이 생각하는 영국이 직면한 주요 이슈들(2015년) … 37
그림 2-3.	영국 및 EU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38
그림 2-4.	영국 및 EU 주요국의 청년실업률 추이 38
그림 2-5.	EU 예산에 대한 국가별 기여금(2014년 기준) ······ 39
그림 2-6.	EU 조약 제50조에 따른 탈퇴절차 ······ 44
그림 3-1.	시나리오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69
그림 3-2.	시나리오별 전 세계 자산 가격 지수 및 VIX 전망 ······ 70
그림 3-3.	시나리오별 주요국의 실업률 전망 71
그림 4-1.	브렉시트의 직접 및 간접 파급경로 예시 88
그림 4-2.	한국 · EU 간 총교역액과 한국의 총수출입액 대비 비중 추이
그림 4-3.	한국 · 영국 간 총교역액과 한국의 총수출입액 대비 비중 추이
그림 4-4.	EU와 영국의 대한국 교역비중 추이 101
그림 4-5.	한국의 대EU 및 대영국 수출입 비중 추이 102
그림 4-6.	한국의 대EU 및 대영국 무역수지 추이 103
그림 4-7.	한국의 기 체결 FTA 협정별 수출 활용률(2015년 기준) 107
그림 4-8.	한국의 대영국 주요 품목별 FTA 수출 활용률(4년 차 기준) · 110
그림 4-9.	영국의 주요 품목별 기준관세율(2015년 기준) 112
그림 4-10.	브렉시트의 한국 산업별 생산효과(한 \cdot EU FTA 유효) \cdots 128
77 / 11	브렉시트의 한국 산업별 생산효과(한 · EU FTA 변경) ······· 130



서론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선행 연구
- 4. 보고서의 구성

1. 연구의 배경

2016년 6월 23일 영국 전역에서 실시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하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Brexit Referendum)에서 최종적으로 탈퇴(leave) 찬성파가 승리하였다. 탈퇴 찬성률이 51.9%로서 잔류(remain) 지지보다 1,269,501표 더 많이 나온 것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결과는 유럽과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우선 유럽통합의 측면에서 보자면, 1951년 이후진행되어 온 유럽통합의 방향을 되돌리면서 지역통합운동에 중대한 제동을 거는 큰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그동안 회원국 확대와 통합의제의 확장, 그리고 통합 정도의 심화로 숨가쁘게 진행되어 온 유럽통합은 브렉시트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기존 회원국의 탈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며,1) 지금까지의 유럽통합운동이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는 전 세계 거시 및 금융 경제의 단기적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교역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렉시트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뒤 영국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고, 전세계 주식시장은 급락장세를 보였으며2), 외환시장은 크게 동요하였다. 다행히이러한 동요는 단시간에 수습되었으나 향후 브렉시트 탈퇴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간헐적으로 나올 부정적인 뉴스는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 및 투자 관계에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탈퇴협상 후새롭게 형성될 영국과 EU 경제관계, 영국과 제3국간의 특혜무역 및 투자협정의 성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 1980}년대 그린란드의 EC(유럽공동체) 탈퇴가 있었으나, 그린란드의 경제 규모가 매우 작고 덴마크의 자치령이었다는 특수한 지위로 인하여 유럽통합운동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은 아니었다.

²⁾ 이틀 동안 독일 -9.6%. 영국 -5.6%, 프랑스 -10.8% 하락하였다.

특히 한 · EU FTA 발효 5년차를 맞이하여 대부분의 상품양허와 서비스 시장 개방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브렉시트는 한 · EU 경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7월 1일부로 우리나라는 EU에 대해 농업분야의 70.5%, 수산업 분야의 66.4%, 제조업의 99.6%를 무관세로 개방하여 총94.6%의 품목이 완전 개방되었고, EU의 경우 농업, 수산업, 제조업의 100%가완전 개방됨으로써 명실상부한 FTA 관계를 확립하였다. 발효 5년이 지나면서양국 관계는 상품양허 이외에도 공급자자기적합성선언(SDoC), 자동차 시장접근 분야에서 변화가 있으며, 영국의 핵심 이익이 걸려 있는 통신서비스, IT,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세무서비스 분야에서 시장개방의 최종단계가 완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렉시트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이 충격이 우리 경제 및 한 · EU, 한 · 영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있다.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EU의 의사결정 구조하에서 브렉시트의 배경과 경과과정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브렉시트 탈퇴협상의 방향을 전망, 브렉시트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리스본 조약 및 EU 기능조약상 탈퇴협상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정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관세동맹, FTA 등 다양한 형태로 EU와 연결되어 있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영국·EU 간 새로운 관계 설정에 관해 전망하고자 한다.

둘째, 브렉시트가 가져올 단기적, 중장기적 거시경제 효과와 영향을 각종 경제모형을 통해 예측한다.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을 파급정도 및 영국과 EU가 맺는 특혜관계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여 경제적 영향을 예상해 본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주로 외환 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장기적 경제적 영향은 탈퇴협상의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셋째,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한 · EU 통상관계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브렉시트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 산업, 제 조업, 금융/자본시장 등 각 개별 산업별로 파악하고, 기존의 한 · EU FTA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EU 측의 중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 · EU FTA의 변화 방향 및 한 · 영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브렉시트가 가져올 거시경제적 영향과 한 · EU 통상관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정책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탈퇴협상이 리스본협상 50조 발효 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3년 뒤 발생할 통상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상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인 시장안정화 정책 이외에도 중장기적인 외환, 주식시장, 해외투자 및 거시경제정책에관한 시사점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한 · EU 통상 분야에서 대EU 정책을 제안하고 한 · 영 경제관계의 재설정을 위한 정책시사점과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대외관계의 지형 변화가 가져올 통상환경의 변화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브렉시트의 법적인 쟁점을 미리점검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다양한 결과를 미리 예측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대EU 통상정책과 메가 FTA 대응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EU 등 주요선진국의 자국규제 수용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산업계의 준비여력 확충에 기여하는 등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한다. 아울러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연구서는 많지 않은바국내 통상 및 유럽 분야 관련 학술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선행 연구

지금까지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에서 다수 진행되어 왔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부터 영국정부, 여러 국제기구 및 학계에서는 브렉시트 시 영국과 EU 간의 관계 시나리오 및 파급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HM Government(2016a), HM Government(2016b), OECD(2016), IMF(2016), Open Europe(2015), Minford *et al.*(2015) 등이 있다. Minford *et al.*(2015), Minford(2016)와 Open Europe(2015)의 일부 가상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향후 영국과 EU의 관계, 즉 영국의 단일시장 접근 정도의 범위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지만 브렉시트가 영국과 EU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HM Government(2016a)은 공식적으로 EU 잔류를 지지하였던 영국 정부가 국민투표 두 달 전에 발표한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향후 15년 동안 EU와의 경제관계에 따라 GDP가 3.4~7.5%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발생할 장기적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HM Government(2016b)에서는 브렉시트의 단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초기 1990년대 경제후퇴 상황과 유사한수준에서의 '충격 시나리오' 및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절반 수준에서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3.6~6.0% 수준의 영국 GDP 감소가 발생하였다. IMF(201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2. 15)는 EU 잔류 시의 실질 GDP 전망치와 대비하여, 영국이 EU 탈퇴 시 2021년까지 1.4~4.5%의 GDP 감소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OECD(2016)는 브렉시트의 영향을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단기적으로 2020년까지 브렉시트로 인해영국경제는 기존 GDP 전망 대비 3% 정도 GDP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는 브렉시트가 경제적 불확실성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경제 신뢰도의 하락과 더불어 경제 주체들의 지출 계획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EU 단일시장뿐 아니라 제3국과의 무역장벽 등이 반영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영국과 EU의 새로운 관계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상당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바, 2030년까지 2.2~7.7%의 감소폭을 보일 것 으로 분석하였다. 국민투표 직후에 발표된 EU집행위원회(2016)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영국의 경제성장은 브렉시트 전 전망치 대비 0.2~0.5%의 감 소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17년에는 전망치 대비 1.0~2.7% 감소로 영국경 제에 부정적 여파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Open Europe(2015)은 GTAP 모델을 이용하여 브렉시트가 2030년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국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EU에 예산기여를 하지 않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와 달리 2030년 1.55%의 GDP 상승이 전망되었다. 반면 영국이 EU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규제완화도 시행하지 않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영국 GDP는 2.2%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Minford et al.(2015)과 Minford(2016)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은 총 GDP 4% 규모의 후생 증대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영국이 독자적으로 시장개방을 단행하여 수입관세를 철폐(혹은 거의 0%에 수렴)하는 경우를 상정하였으며, 이 가정하에 영국 내 소비자 및 생산자가 자유 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후생이 증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오히려 영국의 경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브렉시트의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영국 및 EU 국가에 대한 분석 위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표 1-1. 브렉시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구분	영국 GDP 영향	EU 및 전 세계 영향
HM Government(2016a)	장기(15년 후) -3.4~-9.5%	-
HM Government(2016b)	단기(2년 후) -3.6~-6.0%	-
OECD(2016)	단기(~2020년) -3.3% 장기(~2030년) -2.2~-7.7%	2020년까지 영국이 EU 탈퇴 시 EU 의 GDP는 1% 정도 감소 전망
IMF(2016)	2021년까지 -1.4~-4.5%	- 2018년 Baseline 기준 EU(영국 제외) output 0.2~0.5% 감소 / 전 세계 0~0.2% 감소 - 영국과 무역/금융연관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순으로 브렉시트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EU집행위원회(2016)	기존 전망치 대비 2016: -0.2~-0.5% 2017: -1.9~-2.7%	기존 전망치 대비 2016: -0.1~-0.3% 2017: -0.4~-1.0%
Open Europe(2016)	2030년 1.55~-2.2%	-
Minford <i>et al.</i> (2015), Minford(2016)	EU 탈퇴시 GDP의 4% 후생 증가	-

자료: 각 선행연구에서 경제적 효과 부분을 발췌하여 저자 정리.

4.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브렉시트의 배경과 경과과정, 그리고 향후 탈퇴절차 및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영국-EU관계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 있다. 2장을 통해 브렉시트의 발생 배경, 경과과정 및 브렉시트 이후 탈퇴절차상 불확실성의 문제, 양국간 관계 시핵심 쟁점들이 소개된다. 3장은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단기와 중장기

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단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영국, EU 및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영국과 EU 사이에 형성될 특혜관계를 상정하고 각각의 경우 영국, EU,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4장에서는 브렉시트가 한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1절에서는 한국의 대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 투입산출분석표를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고, 2절에서는 제조업 수출함수의 탄력성을 도출하여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영 및 대EU 수출에 미치는 단기적 부정적 효과를 추정한다. 3절은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우리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3장 2절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활용한다. 4절은 브렉시트가 금융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다. 5장에서는 한 · EU FTA로 대표되는 양국간 경제통상관계에서 브렉시트가 가져올 영향을 보고, 한국과 EU, 한국과 영국 간 특혜무역협정에 관해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한 · EU FTA 개정 시 법정 쟁점, 한 · 영 특혜무역관계의 연장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이다. 6장은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동향 분석, EU 규정과 제도, 조약의 조문 분석, 두 종류의 거시경제모형 분석, 세 종류의 산업모형 분석, FTA 협정문 검토 및 통상법적 해석, 현지 전문가 및 관련자 면담 등 가용한 모든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브렉시트의 전개과정과 그 영향, 향후 쟁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2장



브렉시트의 배경, 경과과정 및 향후 전망

- 1. 배경
- 2. 경과과정
- 3. 탈퇴절차
- 4.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
- 5. 소결

1. 배경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 결정이 나오자 전 세계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에 대해 당황하였다. 영국 내에서 여러 번 치러진 여론조사도 대체적으로 잔류가 탈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왔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잔류가 영국에 더 이익이라는 연구결과가 대부분이었다. 3)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4월 영국 방문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유럽대륙에서도 극우파 반EU정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사들이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설득하고 있었다. 아일랜드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영국 거주 아일랜드인들에게 잔류로 투표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한 바 있다. 4) 불과 투표 일주일 전에 발생한 브렉시트 반대파 의원 Jo Cox 피살사건도 사람들의 큰 동정을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의 결과는 탈퇴였다. 왜 영국민이 탈퇴를 선택했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거론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30여년간 진행되어 온 세계화에 대한 선진국 일반 국민의 반발이라는 큰 흐름으로이해하기도 한다. 전 세계 모든 선후진국에 골고루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세계화가 실상은 선진국 중산층의 소득을 정체시키거나 오히려 줄어들게 했다는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2011년 미국의 월가 점령이나 최근 미국 대선결과도 상실감을 느낀 소위 주류 중산층의 분노라고 보는 해석이다. 이 절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서술되는 브렉시트의 배경 중에서도 영국 내부로 관점과 범위를 좁혀서 영국의 입장에서 본 브렉시트 찬성 배경을 상술해보기로 한다.

³⁾ Cardiff 대학의 Patrick Minford 교수 등 소수의 경제학자들이 브렉시트가 영국경제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Economists for Brexit라는 그룹을 이끌면서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하고 일방적 무역자유화(unilateral trade liberalization)를 하게 되면 영국이 더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Minford *et al.*(2015)이 있다.

⁴⁾ 영국 거주 아일랜드인은 투표권이 있다 - "Minister Flanagan on the UK referendum on its EU membership," https://www.dfa.ie/news-and-media/speeches/speeches-archive/2016/april/flanagan-speech-uk-referendum/(검색일: 2016. 9. 8).

가. 영국적 정체성(Britishness)5)과 유럽회의주의

영국은 17세기에 정치체제의 개혁을 완수하고 18~19세기를 거치면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럽의 대륙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우월적인 영국적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갔다. 영국은 유럽대륙의 다양한 정치 세력을 영국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보고 이 세력에서 한걸음 떨어져 이들을 조정하고자 하는 세력 균형의 추 역할을 자임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형성되고 강화된 영국적 정체성은 20세기 이후 영국의 힘이 점차 쇠퇴 하는 시기에도 이 나라의 행동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해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륙에서 통합의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주권의 부 분적 양도를 뜻하는 정치적 통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면, 유럽의 시장통합 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였다.

1957년 공동 시장 설립을 목적으로 한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출범 당시 영국은 정치적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관세 주권의 보호를 위해 관세동맹보다는 자유무역지대를 선호하였고 그 결과 EEC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1960년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7개국과 정부간 협의체 성격인 EFTA의 창설로 이어졌다. EEC가 E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하자, 곧 영국은 자신이 창설을 주도한 EFTA를 버리고 두 차례에 걸쳐 EEC가입을 시도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이런 분열적 행동이 대륙에서 순조롭게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다. 프랑스의 반대에 부딪혀 영국의 EEC가입은 번번이 실패하였으며, 드골 대통령 퇴임 이후인 1973년에야 비로소 가입할 수 있었다. 영국의 EEC가입 시도는 유럽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보다

⁵⁾ Britishness는 일반적으로 1707년 영국(Kingdom of Great Britain)이 성립된 이후 서서히 확립된 브 리튼적 정체성을 의미하는바, 영국적 정체성을 반드시 브렉시트와의 직접적 인과관계로만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럽대륙과 차별화된 영국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가운데 2차 대전 이후 유럽통 합에 대항하는 유럽회의주의가 광범위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고 이것이 브렉시트 찬성파의 정서적 토대가 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는 EEC 발전에 따른 관세동맹의 편익을 누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후 EEC가 EU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영국은 EU의 시장통합에 대해서는 지지하되, 프랑스와 독일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통합과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대처 총리 집권기간 중 있었던 'UK Rebate'6에 관한 논란은 EU 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영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영국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7) 체결 당시 선택적 탈퇴(Opting out)를 통해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영국은 통화 주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EU가 중부유럽 8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시킨 후 폴란드 등으로부터 영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하자 일반 영국 국민들의 EU 회의론은 더 커졌다. 또한 유로존 위기 이후 EU가 통합을 더 강화하는 방향(ever close union)으로 개혁하면서 영국 내에서는 EU 통합의 방향에 대한 반감이증가하였다. 게다가 2010~12년에 걸친 유로존 위기로 남유럽 국가에 대한 EU의 막대한 지원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영국 내에서는 유럽통합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였다. 영국은 유로존의 구제기금 설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영국이 분담하고 있는 EU 예산이 남유럽 국가에 활용되면서 영국 내 유럽회의주의여론을 자극하였다. 특히 독일 주도하에 재정협약(Fiscal Compact)이 추진되고, 준칙에 의한 EU 통합이 한층 강화되면서 EU의 개혁방향은 영국의 EU 통합에 회의적인 전통적 입장과 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 영국은 체코와 함께 재정협약에 서명을 하지 않은 회원국으로 남았다. 이처럼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유럽통합에 대한 영국의 소극적 입장은 브렉시트 찬성 결정의 기본적 배경이된다.

⁶⁾ UK Rebate란 EU 분담금 중 영국이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해 일부를 돌려받는 금액을 의미한다. 1985년 이래 영국은 EU에 대한 재정분담금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았다.

⁷⁾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연합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EU 조약)으로, 유럽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유럽연합은 경제 · 통화동맹으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적 통합의 완성과 함께, 공동 외교 안보 정책과 내무 · 사법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정치적 통합의 실현이라는 세 가지 핵심적 사항으로 정리된다. 강원택, 조홍식(2009), p. 96.

나. 국내정치적 요인

유럽통합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영국민이 EU 잔류 및 탈퇴를 놓고 국민투표를 하게 되기까지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보수당 관리문제와 정치적 승부수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캐머런 총리는 2005년 보수당 대표 경선 시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강경파 지지를 통해 당대표가 되는 데 성공하였다. 캐머런 총리는 EU의 권한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보수당 내에서도 EU 정책으로 인한 영국의 주권제한에 강하게 반대하는 강경파를 지지기반으로 삼으면서 EU 탈퇴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2010년 총선에서 단독집권에 실패한 보수당은 친EU 성향의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과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 집권하였다. 그러나 경제 및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장관직은 보수당이차지하면서, 보수당-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는 EU 정책에서 보수적 입장을 뚜렷이 나타내기 시작했다. 또한 유로존 붕괴 가능성, 유럽 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증가는 영국 내 EU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증폭시키고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당시부터 본격화되었던 유럽회의주의 세력에 큰 힘을 실어주면서 영국의 EU 탈퇴여론이 증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마침내 캐머런 총리는 2013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단독집권에 성공할 경우 2017년까지 영국의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후 2015년 5월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캐머런 총리는 당내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집권 시 2017년 말까지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결과적으로 650석 중 331석을 차지하여 보수당 단독 과반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캐머런 총리는 탈퇴 관련 국민투표 제안과 동시에 영국과 EU 간 관계 재설 정을 위한 협상을 제안, 최종적으로 EU의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협상을 마무리 했으며, 이 협상 결과를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 6월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주권 재확립, 국익 차원에서 유로존 회원국과의 공정성 확립, 유럽 내 회원국간 이민 제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즉각적 조치 등을 협상과제로 제시하였다. 11월에 EU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영국이 EU에 잔류하기 위해서는 EU가 개혁되어야 함을 촉구하였다. 2016년 2월 EU 정상회의에서 캐머런 총리는 제시된 안건에 대해 EU와 협상을 타결한 직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일을 2016년 6월 23일로 지정하여 발표하였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보수당 내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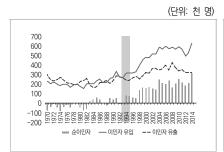
다. 이민 문제의 대두

EU 탈퇴 여론은 EU의 중부유럽 확대 이후 역내 노동이민이 크게 증가하면서 확산되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관대한 이민정책을 유지했으며, 2004년 중동부 유럽의 EU 가입 당시 영국은 유예기간을 둔 대부분의 회원국과 달리 자국의 노동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바 있다. 이후 역내 이민이 급증하자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EU 가입 당시에는 7년간 노동시장 개방을 유예하였다. 2000년 영국 거주 중동부 유럽(NMS-8)8) 국적인의 수는 9.5만 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에는 60.9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7년 이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하고 7년 뒤 양국으로부터의 노동 이동이 자유화되면서 최근 노동이민이 급증하였다. 영국 내 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반감도 높아만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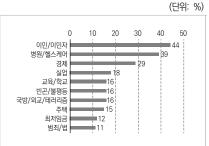
⁸⁾ 본고에서 지칭하는 중동부 유럽은 2004년 EU 신규 가입국을 의미하며 NMS-8(New Member States-8)로 표기함.

그림 2-1. 영국 이민자 현황 (1970~2014년)

그림 2-2. 영국민들이 생각하는 영국이 직면한 주요 이슈들(2015년)



자료: 강유덕, 임유진(2015), p.13.



자료: Ipsos MORI, https://www.ipsos-mori.com/rese archpublications/researcharchive/3684/Issues -Index-aggregates-2015.aspx?view=wide(검색 일: 2016, 12, 24).

여론조사에서도 영국민들은 이민자를 영국이 직면한 주요 이슈로 제시하였다. 특히 2008년의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를 거치면서, 영국 내에서는 EU 조약상 통제가 불가능한 역내 노동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점차 확산되었다. 중동부 유럽으로부터의 유입된 이민자들이 영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영국의 복지제도에 무임승차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2016년 12월 현재 실업률이 4.8%로 2007년 이후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의 노동시장 현실에 비춰볼 때 근거가 희박하다. UCL(201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2. 15)의 연구에서는, 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영국의 공공재정에 순기여(200억 파운드, 2000~11년 기준)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위 연구에서는 영국이 고등교육을 받고 고급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적이었으며, 유럽 이민자들의 고용률이 영국 출신보다 낮고, 복지혜택도 적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역내 노동이동에 관한 문제는 2015년 중 불거진 난민문제와 파리, 브뤼셀에서 발생한 테러와 함께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선거 전략에 중요한 토양을 제공하였다. 쉔겐협정(Schengen Agreement)의에 따른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

EU 집행위가 제시한 난민할당제는 정책주권 및 이민문제에 민감해진 영국 내 언론을 자극하였다. 역내이민문제는 난민문제와 결합되었고, 영국의 주권문제 와도 결부되면서 브렉시트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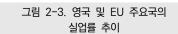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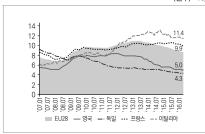


그림 2-4. 영국 및 EU 주요국의 청년실업률 추이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 abase(검색일: 2016. 9. 12).

(日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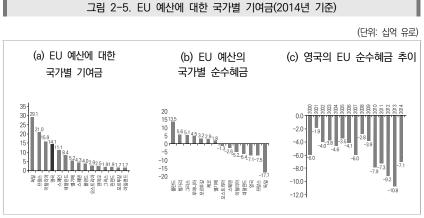
주: 청년은 만 25세 미만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 abase(검색일: 2016, 9, 12).

라. EU 분담금 문제

1973년에 영국이 EU에 가입한 이래 197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EU 예산으로 내는 영국의 기여금이 영국이 받는 수혜금보다 더 많은 상황이 계속되자, 영국 내 불만이 고조되었다. 영국은 지난 2014년 기준 141억 유로를 EU 예산으로 부담하여 총 EU 예산 분담금의 14.1%를 차지한 반면, 공동농업정책, 구조기금을 통한 수혜는 71억 유로로 전 회원국의 수혜금액의 5.4%에 불과하다. 영국은 1984년 이후 'UK Rebate'를 통해 매년 38억 유로(2012년 기준) 정도의 EU 분담금을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지출하고 있으나, 농업의비중이 낮고, EU의 중동구 확대 이후 상대적으로 고소득 지역이 많아 독일에

⁹⁾ 영국은 아일랜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키프러스, 크로아티아와 함께 쉔겐조약 회원국이 아닌 EU 회원 국이었다.

이어 순수혜금(수혜금-분담금)의 마이너스 폭이 가장 큰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었다. 더불어 영국정부가 지난 수년간 복지예산 지출을 줄이는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추진해 온 반면, 늘어나는 EU 예산으로 EU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었다. 게다가 지역적으로 볼 때에도 순수혜금이 양이거나 거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와는 달리 잉글랜드에서는 EU 예산의 순기여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 인구구성상 영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잉글랜드의 불만이 크게 높아졌다.



자료: 김흥종, 임유진(2016), p. 7.

2. 경과과정

지난 2016년 6월 23일 진행된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 EU 탈퇴(브렉시트)가 51.9%로 EU 잔류(48.1%)보다 우세하여 영국은 사실상 EU 탈퇴를 결정하였다. 앞 절에서 논의했듯이,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 외에도 동유럽 이민자 및 난민유입, 영국의 주권간섭에 대한 불만, EU 분담금에 대한 재정부담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내 지역별로 살펴보면 런던을 제외한 잉글랜드, 웨일즈에서는 브렉시트 찬성이 우세하고, 런던 지역 및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브렉시트 반대가 우세하였다. 연령별, 소득별로 살펴보면 노년층과 저소득 지역에서는 찬성이 우세, 청년층 및 고소득 지역에서는 반대가 우세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투표 결과 직후 캐머런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발생 하였으나. 테레사 메이 총리를 주축으로 한 신내각 출범 이후 영국정계는 초기 의 혼란을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요 EU 회원국 및 EU 집행부는 영국정 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EU 탈퇴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당시 영 국정부는 협상을 위한 준비를 마치기 전까지 협상 시작을 미룬다는 입장을 피 력하였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내각 구성에서 브렉시트 관련 부서의 장관 3석을 EU 찬성론자에게 배정하였다. 10) 메이 총리는 국민투표 이후 4개월이 지난 10월 2일 열린 보수당 컨퍼런스에서 EU 탈퇴 통보를 적어도 2017년 3월 말 이전에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11) 영국정부는 총리 권한으로 EU 탈퇴 통 보를 EU 이사회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으나 11월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정 부가 영국 의회의 동의 없이 EU 이사회에 독자적으로 영국의 EU 탈퇴를 통보 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다.12) 당초 영국정부는 의회 승인으로 진행된 영국 의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의회의 동의과정 없이, 정부가 EU 이 사회에 영국의 EU 탈퇴를 통보하고 리스본 50조의 탈퇴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영국정부는 EU 탈퇴 통보에 대한 영국 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영국정부는 이에 대 해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항소하였으며,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의회 동의여부가

¹⁰⁾ 테레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을 위해 '브렉시트부'를 창설하였으며, EU 탈퇴론자인 데이비드 데이비스(前 외무부 장관)를 임명했다. 이외 브렉시트 관련 부서인 외무장관에는 보리스 존슨(전 런던시장), 국제통상부에는 리암 폭스를 임명하면서, 브렉시트 관련 부서 수장에 모두 EU 탈퇴 적극 찬성론자를 배정하였다.

¹¹⁾ BBC(2016a).

¹²⁾ BBC(2016b).

결정날 것이다. 대법원의 심리는 2016년 12월 6일에 시작되었다. 현재로서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데 이 경우, 메이 정부가 계획한 브렉시트 추진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탈퇴협상이 시작되더라도, 특혜무역협정보다 훨씬 더 많은 의제를 다루어야 하는 탈퇴협상의 성격상 2년의 시간은 달성 불가능한 시간제약일 수 있다. 탈퇴협상은 FTA 협상 외에도, 자본, 노동, 서비스 등 단일시장 전체 의제와 관련한 협상, EU 규범, 모든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을 포함하고 있다. 비교적 준비가 잘 되었고 협상과정이 상당히 순탄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한 EU FTA 협상도 2년 반이 걸렸다는 전례에서 볼 때, 영국과 EU 간 탈퇴협상은 2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3. 탈퇴절차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탈퇴를 위한 영국과 EU 간의 탈퇴협상 이전에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탈퇴협상을 시작하려면 먼저 영국정부가 EU 이사회에 탈퇴 통보를 해야 한다. 그런데 탈퇴 통보 이전에도 영국정부가 협상준비를 해야 하며, 탈퇴에 관해 영국 의회의 동의를 받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만약 받아야 한다면 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이 단계별로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이슈가 있고 각 단계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EU와 탈퇴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 EU 조약 제50조에 따른 탈퇴절차

EC 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및 과거 EU 조약과는 달리 리스본 조약(The Treaty of Lisbon)에 따라 개정된 새로운 EU 조약(TEU: Treaty on European Union) 제50조는 회원국의 EU 탈퇴와 그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글상자 2-2. EU 조약 제50조

- 1. Any Member State may decide to withdraw from the Un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constitutional requirements.
- 2. A Member State which decides to withdraw shall notify the European Council of its intention. In the light of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European Council, the Union shall negotiate and conclude an agreement with that State, setting out the arrangements for its withdrawal, taking account of the framework for it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Union. That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8(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t shall be concluded on behalf of the Union by the Council,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 3. The Treaties shall cease to apply to the State in question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ithdrawal agreement or, failing that,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unless the European Council, in agreement with the Member State concerned, unanimously decides to extend this period.
-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3, the member of the European Council or of the Council representing the withdrawing Member State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of the European Council or Council or in decisions concerning it. A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8(3)(b)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5. If a State which has withdrawn from the Union asks to rejoin, its request shall be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49.

자료: EU 조약 제50조 발췌.

보다 구체적인 EU 조약 제50조에 따른 EU 탈퇴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13)에 탈퇴 의사를 고지하고 ② 유럽이사회는 만장일치(unanimity)로 탈퇴 협정(withdrawal agreement)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4) ③ EU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218조 제3항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협상 개시를 EU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¹⁵⁾에 권고하고 동 이사회는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에 따라 EU 집행위원회 권고의 승인 및 협상단, 협상 대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침 (directive) 형태로 협상 훈령을 의결한다. 16) ④ 협상이 종료되면 탈퇴 협정문 에 대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동의를 얻어17) ⑤ 이사회가 협정 을 체결한다. 18) 탈퇴 협정이 발효되거나. 탈퇴 협정 체결에 실패하는 경우 회 원국이 탈퇴 의사를 고지한 지 2년이 경과하고 유럽이사회가 동 기간을 만장일 치 결정으로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EU 조약과 EU 기능조약은 해당 회원국 에 대해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탈퇴절차가 진행되는 기가 동안 탈퇴하는 회원국은 EU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나 유럽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자국의 탈 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¹³⁾ EU 회원국 정상과 유럽이사회 의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및 EU 집행위원회 의장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으로 구성되는 기관으로 정치 문제에서 EU의 방향성,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럽이사회에 대해서는 EU 조약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다.

¹⁴⁾ EU 조약 제15조(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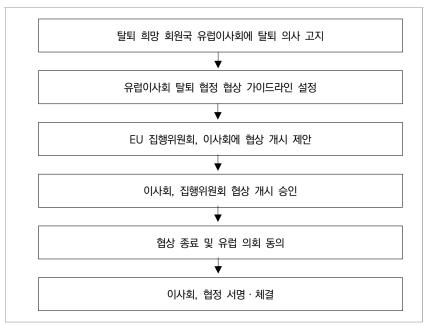
¹⁵⁾ EU 회원국의 각료로 구성되며 EU의 입법기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기구의 성격을 갖는 유럽이사회와 구분된다. 이사회에 대해서는 EU 조약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사회라 지칭.

¹⁶⁾ EU 기능조약 제218조(8).

¹⁷⁾ EU 기능조약 제218조(6)(a).

¹⁸⁾ EU 기능조약 제218조(8).

그림 2-6. EU 조약 제50조에 따른 탈퇴절차



자료: 저자 작성.

EU 조약 제50조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회원국의 탈퇴절차를 최초로 EU 조약에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 그러나 너무 단순하고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어 탈퇴협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들, 특히 협상 기간과 협상 타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¹⁹⁾ 리스본 조약(The Treaty of Lisbon) 발효 이전 EU 설립 조약(EU founding treaties)에는 회원국의 탈퇴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특히 EC 설립 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제312조는 동 조약이 기한 없이 유효하다고 규정하여 회원국의 EU 탈퇴가 허용되는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리스본 조약 이전 회원국의 EU 탈퇴 권리 보유 여부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Wyrozumska(2013), pp. 1385-1418 참고.

나. 탈퇴절차와 관련한 주요 법적 문제

1) 탈퇴 협정의 범위 및 형태

EU 조약 제50조는 회원국과 EU가 탈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협정의 범위 및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탈퇴 협정이 EU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통상 협정이 될 경우 EU기능조약 제218조(8)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의 협상 개시 권고에 대한 승인 및 탈퇴 협정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정에 가중다수결이 적용된다. 이 경우 이사회는 EU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이사회 회원국의 72% 이상(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의 찬성을 얻어 협상 개시를 승인하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은 회원국의 비준 없이 발효한다. 그러나 EU가 체결하는 협정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요구하는 분야를 포함하거나 연대협정(association agreement) 등의형태를 갖는 경우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탈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20이사회 결정에 가중다수결 원칙이 적용될 경우 하나의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만장일치가 적용될 경우 어느 회원국이든 인구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정을 저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만약 탈퇴 협정이 혼합협정으로 체결되는 경우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게 되어 협정 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협정이 발효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 이에 대해 EU 조약 및 기능조약은 협정의 발효를 위해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EU 조약 제50조가 탈퇴 협정의 회원국 비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탈퇴 협정 발효를 위해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1) 그러나 EU 조약 제50조가 탈퇴 협정에 대해서도 EU 기능조약 제218(3)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탈퇴 협정이 EU 권한 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통상적인 혼합협정 체결 절차

²⁰⁾ EU 기능조약 제218조(8).

²¹⁾ Hillion(2016), p. 6.

2) 유럽의회의 동의절차에서 유럽의회 영국 의원의 역할

EU 기능조약 제218조(6)(iv)은 EU에 중요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유럽의회의 동의절차는 이사회의 만장일치나 가중다수결 절차보다는 다소 쉬운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의회가 사실상탈퇴 협정에 대한 거부권(veto power)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협상 과정에서 그 영향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의회 의원들은 탈퇴협상에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탈퇴 협정안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EU 시민의 권익을보장하기에 미흡한 경우 탈퇴 협정이 유럽의회의 동의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3)

이 과정에서 전체 의원 751명의 9.7%에 달하는 73명의 영국 출신 유럽의회 의원들의 동의절차 참여 가능여부는 동의절차와 탈퇴협상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 조약 제50조는 탈퇴 회원국 출신 유럽의회 의원의 탈퇴 협정 동의절차 참여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으나 참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영국 출신 유럽의회 의원들이 탈퇴 협정 동의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 만약 영국 출신 의원의 동의절차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 영국 내에서의 EU 시민 권익 보장 여부뿐 아니라 탈퇴 협정이 EU에서 영국 시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여부도 유럽의회의 동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이사회는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다. 다만 EU 집행위원회의 입법 제안 단계에서부터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보통입

²²⁾ HM Government(2016c), p. 11.

²³⁾ House of Lords(2016), p. 8.

²⁴⁾ 같은 견해로, Hillion(2016), p. 6.

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와 달리 협정 체결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협정 체결 시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유럽의회 의원 과반의 찬성확보가 어려울 경우 동의절차 이전에 협정문의 수정을 제안하고 협정문 수정시까지 절차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25)

3) 협상 연장 시 기간 및 재연장 허용 여부

EU 조약 제50조는 회원국의 탈퇴 의사 고지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유럽이 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협상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퇴 협정 협상이 장기화할수록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 국과 EU 모두 협상을 되도록 조속히 마무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협 상 연장을 위해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 는 영국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연장 없이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가장 선호할 것이다.26)

그러나 현실적으로 1973년 EEC 가입 이후 통상 협상에 관여한 바 없는 영국이 2년의 협상기간 안에 통상 협상과 자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과 EU에 거주하는 자국 시민의 지위 등에 대한 협상 등을 완료하고 EU 법을 적용받던 분야에서의 대체 입법까지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협상기간의 연장이 사실상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추가 연장도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EU 조약 제50조가 협상 연장 시 기간과 재연장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상기간과 재연장에 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상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²⁵⁾ House of Lords(2016), 각주 10, Q8. Sir, David Edward 답변. 반면 국제협정 체결의 경우 협정문서명이 끝난 후 유럽의회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동의/거부만이 가능하며 일정한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Miller(2016) 참고). 그러나 EU 기능조약제218조(6)(a)는 이사회가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조약의 체결(conclusion)이란 서명 전 조약의 기속적 효력에 대한 동의 또는 조약의 서명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조약 체결의 의미에 관한 논의로는, Hollis(2012, pp. 11-45)의 "Defining Treaties" 참고.

²⁶⁾ House of Lords(2016), p. 12.

감안하면 영국과 EU가 협상 연장 시 그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경과 시 영국이 EU를 자동 탈퇴하는 것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이후 양자 관계를 구상할 때 이미 존재하는 EU와 제3국 관계는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에 대한 분석은 EU 단일시장(internal market)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유럽경제지역 (EEA: European Economic Area) 모형, 다수의 분야별 양자 협정을 기초로 한스위스 모형, 관세동맹을 기초로 한터키 모형, FTA 모형 등 기존의 EU와 제3국간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27) 영국과 EU 간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영-EU 관계가 갖는 고유성,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 모형을 그대로 차용하기보다는 이를 참고로 고유한 양자관계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영국과 EU는 양자의 필요에 따라 영국이 EEA에 가입하지 않고 단일시장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스위스와는 다른 분야별 양자협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수도 있으며,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EU-Canad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와 유사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 절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관계를 EU 단일시장 접근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단일시장 접근 여부는 제3국과 EU와의 통합 정도 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브렉시트의 영향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우선 EU 단일시장의 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를 분석해 보도 록 하겠다.

²⁷⁾ Hofmeister(2015), p. 257; Piris(201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참고.

가. EU 단일시장

1) 상품의 자유 이동

EU 역내에서의 상품의 자유 이동은 ① 역내 관세 철폐 및 역외 공동관세를 기초로 한 관세동맹(Customs Union) ② 역내 수입·수출에 대한 수량적 제한 금지 ③ 상업적 성격의 국가 독점 사업과 관련한 상품 조달 및 마케팅 조건에 대한 차별 금지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28) 아래에서는 관세동맹과 역내 수입·수출에 대한 수량적 제한 금지의 법적 의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관세동맹

(1) 역내 관세 철폐

EU의 관세동맹은 모든 상품의 역내 수출입에 대한 관세, 재정적 성격을 갖는 관세(customs duties on imports and exports) 및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부과금(CEE: charges having equivalent effect)의 부과 금지와 역외 공동관세율 채택으로 구성된다. 29) 상품의 국경간 이동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부과금이라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그 효과가 무역 차별 적이거나 보호적인 것이거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관세가 아니라도 EU 기능조약 제30조상 CEE에 속한다. 30)

한편 상품의 자유 이동의 보장을 위해 EU 법은 수입 상품에 대한 차별적 내 국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31) 이에 따라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상품에 대해 국내 유사 상품에 비해 높은 내국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국내 상품에 대해 직간접 적인 조세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32)

²⁸⁾ EU 기능조약 제28조 내지 제37조.

²⁹⁾ EU 기능조약 제28조, 제30조.

³⁰⁾ Case 24/68 Commission v Italy [1969] ECR 193, para 9.

³¹⁾ EU 기능조약 제110조.

(2) 역외 공동관세율 채택

역외 공동관세율 채택에 따라 EU는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공동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33)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품목분류, 물품가치산정 및 원산지 결정 등과 관련한 공동의 기준을 사용한다.

나) 역내 수입 · 수출에 대한 수량적 제한 금지

(1) 역내 수입에 대한 수량적 제한 금지

EU 기능조약은 상품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관세동맹과 함께 타 회원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에 대한 수량적 제한 및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의 금지등 비재정적 장벽(non-fiscal barrier)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34)

수입에 대한 수량적 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은 수입 쿼터,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들을 의미한다.35) 반면에 수입에 대한 수량적 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 (MEQR: measures equivalent to quantitative restrictions)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실질적으로든 잠재적으로든 역내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회원 국의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36) MEQR은 국내 상품과 수입 상품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뿐만 아니라.37) 비차별적 조치도 포함한다.38) 아울러 다른 회원

³²⁾ 유사 상품 여부는 소비자가 사용함에 있어 등가성(equivalence)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하여 유럽 법원(CJEU)은 과일주와 와인을 유사상품으로 판단한 바 있다. Case 106/84 *Commission v Denmark* [1986] ECR 833, para 22.

³³⁾ EU 기능조약 제28조.

³⁴⁾ EU 기능조약 제34조.

³⁵⁾ Case 2/73 Geddo v Ente Nazionale Risi [1973] ECR 865.

³⁶⁾ Case 8/74 Dassonville [1974] ECR.

³⁷⁾ CJEU는 국산품 판매 촉진 캠페인(Case 249/81 *Buy Irish Campaign* [1981] ECR 4005), 수입 면 혀 요건을 규정한 조치(Case 324/93 *Evans Medical & Macfarlan Smith* [1995] ECR I-563), 수 입 상품에 대한 위생 검역을 요구하는 조치(Case 4/75 *Rewe-Zentralfinanz* [1975] ECR 843) 등 차별적 조치가 MEOR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³⁸⁾ CJEU는 비차별적인 원산지 표시 요건(Case 207/83 Commission v UK [1985] ECR 1201), 특정한 상품 포장 방식을 요구하는 조치(Case C-470/93 Mars [1995] ECR I-1923), 특정 상품에 대해 일정 한 성분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Case 120/78 Cassis de Dijon [1979] ECR 649), 일정한 성격을 지닌 상품에 대해 특정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Case C-12/00 Commission v Spain

국에서 적법하게 생산, 판매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도 MEQR에 해당하여 금지된다.39)

다만 공공 도덕, 공공 정책, 공공 안보, 사람 및 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⁴⁰⁾ 유럽법원(CJEU: Court of Just of the European Union)이 특정한 법익 보호를 위해 인정한 필수 요건(mandatory requirements)⁴¹⁾에 해당하는 조치, 비차별적인 상품의 판매 방법(selling arrangements)에 관한 조치⁴²⁾는 MEQR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2) 역내 수출에 대한 수량적 제한 금지

EU 회원국은 역내 수출에 대해서도 수량적 제한 조치 및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를 채택할 수 없다. ⁴³⁾ 다만, 수입의 경우와는 달리 수출의 경우 차별적인 수량적 제한 조치만이 금지된다. ⁴⁴⁾

^[2003] ECR I-459) 등을 MEQR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MEQR은 한정적이지 않으며 추가로 인정될 수 있다.

³⁹⁾ Case 120/78 Cassis de Dijon [1979] ECR 649.

⁴⁰⁾ EU 기능조약 제36조.

⁴¹⁾ CJEU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는 회원국의 거래의 공정성(Case 286/81 *Oosthoek's* [1982] ECR 4575) 소비자 보호(Case 220/81 *Robertson and Others* [1983] ECR 2349), 근로조건 개선(Case 155/80 *Oebel* [1981] ECR 1993), 환경보호(Case 240/83 *ADBHU* [1985] ECR 531), 회원국의 고유한 문화 보전(Cases 60 and 61/84 *Cinéthèque* [1985] ECR 2065), 사회보장제도 유지 (Case C-120/95 *Decker* [1998] ECR I-1831), 아동 보호(Case C-244-06 *Dynamic Medien v Avides Media* [2008] ECR I-505) 등이 있다. 필수 요건은 MEQR과 마찬가지로 한정적이지 않으며 추가로 인정될 수 있다.

⁴²⁾ MEQR의 예외로 인정된 상품의 판매 방법에 관한 조치로는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를 위한 조치(Case C-267/91 Keck and Mithouard [1993] ECR I-6097), 일요일 거래 규제 조치(Case C-69 and 258/93 Punto Casa and PPV [1994] ECR I-2355), 특정 업종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Cases C-401 and 402/92 Tankstation t'Heuske and J B E Boermans [1994] ECR I-2199) 등이 있다.

⁴³⁾ EU 기능조약 제35조.

⁴⁴⁾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의 수출 금지 조치(Case 7/78 Regina v Ernest George Thompson [1978] ECR 02247), 수출 면허 제도(Case C-388/95 Rioja wine exports [2000] ECR I-3123)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서비스 공급 및 설립의 자유

WTO 체계에서의 서비스 무역은 국경간 서비스 공급 및 소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설립 및 자연인의 이동을 모두 포함한다. 45) 그러나 EU 법체계 내 사람의 자유 이동은 단순히 서비스 공급을 위한 내용뿐 아니라, EU 회원국 시민의 거주 · 이전의 자유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서비스와 관련한 주제로 다루기보다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 및 소비와 설립의 자유만을 다루고, 사람의 이동의 자유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서비스 공급의 자유

EU 법은 역내에서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46) 공급에 대한 제한이 금지되는 '서비스'는 금전적 보상(remuneration)을 수반하는 산업적(industrial), 상업적(commercial) 성격의 모든 행위와 기능공(craftmen), 전문직(professions) 종사자의 활동을 포함하다. 47)

상품의 자유 이동과 관련하여 확립된 원칙의 대부분은 단일시장을 뒷받침하는 4대 자유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48) 따라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 또는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조치는 물론 국내 서비스 공급자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사실상 다른 회원국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을 어렵게 하거나, 49) 서비스 공급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조치 등 간접적인 차별 조치의 경우에도 EU 기능조약 제56조의 서비스 공급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50) 아울러 서비스 공급의

⁴⁵⁾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은 국경간 서비스 공급(Mode 1), 서비스의 해외 소비(Mode 2), 상업적 주재(Mode 3), 자연인의 주재(Mode 4)를 모두 서비스 공급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⁴⁶⁾ EU 기능조약 제56조.

⁴⁷⁾ EU 기능조약 제57조.

⁴⁸⁾ Case C-55/94 Gebhard v Milan Bar Council [1995] ECR I-4165, para 34.

⁴⁹⁾ 원자격국에 상관 없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공급에 거주요건을 부과한 법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Case 33/74 Van Binsbergen [1974] ECR 1299 참고.

자유는 서비스를 공급받을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회원국 시민이 타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도 EU 기능조약 제56조에 위반할 수있다.51)

다만 공무상 권한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와 공공정책, 공공안전 또는 공중보건 목적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아울러 비차별적 조치로 중대한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그 목적 달성에 적절한 정도의 조치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52)

나) 설립의 자유

EU 기능조약 제49조 내지 제54조에 따라 회원국은 타 회원국 시민(또는 회사)의 설립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EU 기능조약 제49조의 '설립'은 자영업자로서 규칙적이고(regularity), 주기적이며(periodicity) 계속적으로 (continuity) 타 회원국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수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EU 기능조약 제56조의 적용을 받는 일시적인 서비스 공급과 구별된다.53)

자국민 서비스 공급자에게 조세 등에서 구체적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직접 적으로 차별적인 조치5⁴)는 물론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수당 지급에 거주

⁵⁰⁾ 무작위 전화 권유를 통한 상품판매 등 특정 마케팅 방법의 금지가 사실상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Case C-384/93 Alpine Investments v Minister van Financiën [1995] ECR I-1141. 서비스 공급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 에 관한 CJEU 판례의 상당 부분이 Service Directive 2006/123(Directive 2006/1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2006] OJ L 376/36)에 반영되었다.

⁵¹⁾ CJEU는 외화 반출 한도액을 정한 조치도 회원국 시민이 타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경우 EU 기능조약 제56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Cases 286/82 and 26/83 *Luisi and Cambone* [1984] ECR 377.

⁵²⁾ 소비자 보호(Case C-384/93 Alpine Investments v Minister van Financiën [1995] ECR I-1141), 양질의 대학교육 보장(Case C-153/02 Neri v European School of Economics [2003] ECR I-13555), 근로자 보호(Case C-438/05 Viking Line [2007] ECR I-10779), 환경보호 (Case C-169/08 Regione Sardegna [2009] ECR I-10821) 등의 목적을 위한 조치들이 이에 해당한다.

⁵³⁾ Case C-215/01 Schnitzer [2003] ECR I-14847, para 28.

⁵⁴⁾ Case 197/84 Steinhauser v City of Biarritz [1985] ECR 1819.

요건을 부과하는 등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설립 또는 설립과 관련한 행위를 간접적으로 차별하는 조치도 EU 기능조약 제49조에 의해 금지된다.55) 상품의 자유 이동, 서비스 공급의 자유와 같이 내외국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차별 조치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설립행위를 방해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경우 EU 기능조약 제49조가 금지하는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회원국 시민이 자영업 설립을 위해 입국,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다른 회원국의 회사가 다른 회원국에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 하는 것도 금지된다.56)

한편 설립과 서비스 공급의 자유에 관한 법리는 일부 분야에서 상품의 자유이동에 있어서와 같은 상호인정 제도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EU 자격요건 지침57)은 회원국에서 전문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적법하게 설립한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공급을 위해 타 회원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자격 요건을 이유로 서비스 공급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즉, 한 회원국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전문직 서비스 자격을 타 회원국이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한 회원국의 공모 펀드의 판매허가(UCITS)나 금융상품투자(MiFID) 회사의 설립 허가가 다른모든 EU 회원국에서도 유효하도록 한 패스포팅 권한(Passporting Rights)도이러한 상호인정에 기초하고 있다.

3) 사람의 자유 이동

가) 근로자의 자유 이동

EU 회원국은 회원국 시민이 EU 역내에서 고용을 위해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할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이동한 근로자를 국적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58) 자유 이동이 보장되는 '근로자'는 금전적 보상의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

⁵⁵⁾ Case C-4 and 5/95 Stöber and Pereira [1997] ECR I-511.

⁵⁶⁾ Directive 2004/38/EC, OJ L 158/77.

⁵⁷⁾ Directive 2005/36/EC, OJ L 255/22; Directive 2013/55/EU, OJ L 354/132.

⁵⁸⁾ EU 기능조약 제45조.

하고 근로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59)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더라도 효과적이고 진정한 파트타임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a person in effective and genuine part-time employment),60) 직업훈련생61)은 물론 구직자62)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향후 근로가 가능한 사람도 EU 기능조약 제45조의근로자에 해당하며63) 근로자와 함께 이동하는 근로자의 가족도 이동의 자유를향유한다.64)

근로자의 자유 이동은 거주 · 이전의 자유와 더불어 고용, 임금 그리고 고용과 근로 조건에 관하여 국적을 이유로 하는 모든 근로 조건의 차별 금지도 포함하며,65) 따라서 회원국은 고용과 관련한 사회 보장 및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데 있어서도 국적을 이유로 EU 시민을 차별할 수 없다.66) 근로자의 회원국이다른 회원국 시민을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목상으로는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다른 회원국 근로자가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조건을 부과하는 등 간접적으로 다른 회원국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도 금지된다.67) 다만 국경간 이동이 없는 순수하게 국내적인 문제68)나 EU 기능조약 제45조(4)의 공공 서비스 관련 고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자유 이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⁵⁹⁾ Case 66/85 Lawrie-Blum [1986] ECR 2121.

⁶⁰⁾ Case 139/85 Kempf [1982] ECR 1035, para 5.

⁶¹⁾ Case C-3/90, Bernini [1992] ECR I-1071.

⁶²⁾ Case C-292/89 *Antonissen* [1991] ECR I-745, para 13.

⁶³⁾ Case C-43/99 Leclere and Deaconescu [2001] ECR I-4265, para 55.

⁶⁴⁾ 이동의 자유를 향유하는 가족으로는 배우자(spouse), 근로자에 생활을 의존하는 21세 이하의 친족, 존속 및 기타 친족, 국적국의 민법상 파트너 등이 있다. Directive 2004/38/EC 참고.

⁶⁵⁾ Regulation (EEC) No 1612/68.

⁶⁶⁾ Regulation (EEC) No 1612/68; Case 32/75 Fiorini v SNCF [1975] ECR 1085.

⁶⁷⁾ Case C-237/94 O'Flynn v Adjudication Officer [1996] ECR I-2617, para 18.

⁶⁸⁾ 회원국 내에서 무임승차에 대한 벌금 부과와 같이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생하고 국경을 넘어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EU 기능조약 제4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Case 298/84 *Iorio* [1986] ECR 247 참고).

나) EU 시민권과 자유 이동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의 사람의 자유 이동은 경제적 활동을 위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69) 그러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EU 시민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EU 역내 사람의 자유 이동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하지 않는 실업자, 70) 학생, 71) 아동72) 및 퇴직자73)도 거주 · 이전의 자유와 사회보장 및 세금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74) 이에 따라 회원국 시민은 여권과 그밖의 유효한 신분증을 통해 회원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으며 조건 없이 최대 3개월의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75) 또한 ①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② 자신 및가족 부양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체류하는 회원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포괄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한 회원국 시민과 학생은 3개월 이상도 체류가 가능하다. 76)

아울러 이동의 자유의 내용도 거주 · 이동의 자유 및 유럽의회 선거권, 거주하는 회원국의 지방 선거권, 거주하는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는 자와 동일하게 당해 회원국의 외교 및 영사 기관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유럽의회 청원권, 유럽 음부즈맨 요청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4) 자본의 자유 이동

상품, 서비스/설립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EU 기능조약 제63 조 내지 66조는 자본 이동의 자유 및 지불에 관한 모든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시민에 의한 자국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77)

⁶⁹⁾ Case 316/85 Leben [1987] ECR 2811.

⁷⁰⁾ Case C-85/96 Martinez Sala [1998] ECR I-2691, paras 62-63.

⁷¹⁾ Case C-184/99 Grzelczyk [2001] ECR I-6229, paras 31-32.

⁷²⁾ Case C-200/02 Zhu and Chen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04] ECR I-9925, para 20.

⁷³⁾ Case C-224/02, Pusa [2004] ECR I-5763.

⁷⁴⁾ EU 시민권 관련 판례들은 이후 시민권 지침에 반영되었다. Directive 2004/58/EC, OJ L 229/35.

⁷⁵⁾ Ibid., 제6조.

⁷⁶⁾ Ibid., 제7조.

대출에 대한 과세,78) 다른 회원국 시민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허가 제도 운영,79) 상속을 위한 국경간 지불에 대한 제한80) 등을 할 수 없다. EU는 이러한 자본의 자유 이동을 기초로 단일 통화를 채택하였다.

나.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

상술한 바와 같이,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의 모습은 영국의 EU 단일시장 접근 여부 및 접근 범위, 탈퇴 협정의 법적 형태 등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국과 EU가 ① 4대 자유와 그 적용 범위② EU 법상 변화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동일성(homogeneity) 원칙의 요소 중에 무엇을 선택하여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브렉시트 이후영국 · EU 간 관계의 구체적 모습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가능성있는 선택지를 모형별로 제시하고 그 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단일시장 모형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관계로 우선 영국과 EU가 역내 4대 자유⁸¹⁾를 모두 적용하는 단일시장 모형을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탈퇴 협정을 통해 상품, 서비스, 사람, 자본 이동의 자유 및 4대 자유 보장을 위한 EU 법 규정을 영국에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일시장 모형은 탈퇴 협정 발효 당시 EU 법이 인정하는 4대 자유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일부만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동일성 원칙의 채택 여부에 따라 그 구체적인 모습이 달라진다.

4대 자유의 적용과 관련하여 탈퇴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독자적

⁷⁷⁾ Case C-367/98 Commission v Portugal [2002] ECR I-4731.

⁷⁸⁾ Case C-439/97 Sandoz [1999] ECR I-7041.

⁷⁹⁾ Case C-302/97 Konle [1999] ECR I-3099 참고.

⁸⁰⁾ Case C-11/07 Eckelkamp & Others [2008] ECR I-6845 참고.

⁸¹⁾ EU 기능조약 제2부(Title II)의 상품 이동의 자유는 역내적 측면과 역외 공동관세 채택을 포함하는 개 념이나 여기서는 상품 이동의 자유 중 역내적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인 통상협상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관세동맹 채택 여부와 이민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자유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의 자유 이동 중 완전한 관세동맹을 채택하게 되면 영국의 제3국과 독자적 상품 무역협상이 불가능해지는 반면, 역외 공동관세율 채택만을 제외한다면 독자적인 상품 무역협상이 가능하다. 사람의 자유 이동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EU가 인정하는 시민권(citizenship)에 근거한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고용 여부에 상관없이 EU 시민 및 영국 시민의 상호 거주 · 이전의 자유와 체류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권을 모두 보장하게 된다. 반면에 이민문제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만을 보장한다면 고용관계에 있는 시민에 한해서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게 된다.

단일시장 모형에 동일성 원칙을 적용할 경우 탈퇴 협정이 정한 단일시장의 내용은 협정 발효 이후 EU 법의 입법, 개정 및 CJEU 판례 반영으로 인한 EU 단일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게 되는 반면 동일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영국과 EU는 협정에서 정한 고정된 단일시장을 갖게 된다.

상술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EU 탈퇴 이후 영국과 EU 간에 적용될 단일시장 형태와 브렉시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이민 통제 가능 여부, 독자적 통상 협상 가능 여부, EU 법의 적용 배제 가능성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EU 탈퇴 이후 단일시장 형태 및 그 영향

구분	단일시장 형태	이민 통제	독자적 통상 협상	EU 법 적용 배제	
1	4대 자유+동일성 원칙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2	(4대 자유-CCT)+동일성 원칙	불가능	가능	불가능	
3	(4대 자유-시민권)+동일성 원칙	제한적	불가능	불가능	
4	(4대 자유-시민권-CCT)+동일성 원칙	제한적	가능	불가능	
5	4대 자유	불가능	불가능	제한적으로 가능	
6	4대 자유-CCT	불가능	가능	제한적으로 가능	
7	4대 자유-시민권	제한적	불가능	제한적으로 가능	
8	4대 자유-시민권-CCT	제한적	가능	제한적으로 가능	

자료: 저자 작성.

[표 2-1]에 제시된 단일시장 형태 중 이민 통제와 독자적 통상 협상 중 하나라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영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과 EU가 단일시장 모형을 택한다면 4,8번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4번 형태는 현재 EEA와 유사한 형태로, EU 회원국 지위보다는 적은 재정 기여를 통해서도 EU 단일시장에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하고, 독자적인 통상 협상과 EU 회원국보다는 자유롭게 이민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82) 반면 동일성 원칙으로 인해 EU 입법 절차에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면서도 협정 발효 이후 EU 법규정과 CJEU의 판결의 변화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83)

8번 형태는 4번 형태에 비해 EU 법 및 CJEU 판례에 의한 영향을 비교적 덜 받으면서도 EU 단일시장에는 크게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일성 원칙을 제외하는 경우 탈퇴 협정 발효 이후 EU 단일시장의 변화를 협정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EU 단일시장과 영·EU 간 단일시장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동일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4대 자유만 허용할 경우영·EU 간 단일시장은 탈퇴 협정 발효 당시의 EU 법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협정 개정에 의하지 않는 한 그대로 고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EQR이나 그 예외로 인정되는 필수적 요건 등 단일시장에 관한 EU 법의 상당 부분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CJEU의 판결과 입법에 의해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이러한 EU 법상 단일시장의 변화를 영·EU 간 단일시장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EU 역내 단일시장과 영·EU 간 단일시장이 다른 모습을 갖게 되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사람의 자유 이동을 시민권을 제외한 근로자의

⁸²⁾ 그러나 EU 단일시장 접근을 전제로 할 때 실질적으로 재정적 기여의 축소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있다. 일례로, EEA 모형을 택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2011년 EU 재정 기여는 1인당 106 파운드로 영국의 EU에 대한 1인당 재정적 기여분인 128파운드의 82.8%에 이른다. House of Commons(2013), p.22 참고. EEA 모형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Baundenbachered(2016) 참고.

⁸³⁾ 관련하여, EEA의 경우 2012년 현재 총 6,816개의 EU 법령이 EEA 협정에 반영된 것을 볼 때 이러한 우려는 기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Fernekeß, Palevičienė and Thadikkaran(2013), p. 37.

이동의 자유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EU와 영 · EU 간 단일시장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할 기구 등을 별도로 두고 사안별 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상설 재판소 등을 두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단일시장 모형은 브렉시트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EU가 영국의 이익을 위해 4대 자유 중 서비스 공급/설립의 자유 등 일부만을 영국에 적용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EU 측 인사들의 발언을 감안한다면 영국 금융업의 패스포팅 권한을 지키기 위해 단일시장 모형도 영국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84)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국이 독자적인 이민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고, 단일시장 관련 EU법 규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통상 협상도 어렵다는 점에서 단일시장 모형은 정치적으로 영국이 선택하기 쉽지 않은 모형이다.

2) 부분적 단일시장 모형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영국이 단일시장 모형을 택하는 것이 어렵다면 4 대 자유 중 일부만을 허용하는 부분적 단일시장 모형도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람의 자유 이동이다. 즉, 탈퇴 협정이 EU 단일시장 접근을 전제로 진행된다면, 사람의 자유 이동을 제한하고 나머지 자유만을 취하려는 영국과, 4대 자유 중 일부만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EU 측 입장 대립이 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85)

영국과 EU 양측이 현재의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 부분적인 단일시장 접근을

⁸⁴⁾ 관련 발언으로는 Johns, Claire(2016. 9. 27) 참고.

⁸⁵⁾ 이미 형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사람의 자유 이동이 배제된 탈퇴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 Henley, Jon(2016. 9. 17) 참고.

허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부분적 단일시장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EU의 양보, 특히 사람의 자유 이동과 관련한 영국과 EU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86)

EU 법상 EU 시민권, 근로자의 자유 이동을 배제한 사람의 자유 이동에 관한 타협안으로는 WTO나 전통적인 FTA에서 허용하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연인의 이동을 상호 양허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기업 내 전근자(ICT: Intra-Corporate Transferees), 상용 방문자(BV: Business Visitors), 계약서비스 공급자(CSS: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 독립 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s)의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모두양허할 경우 FTA 체결국에 설립된 법인이나 지점, 사무소 등으로 전근하는 자연인(ICT), 서비스의 직접적인 공급자는 아니나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한 투자 정보를 습득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자연인(BV), 외국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서비스 공급 계약 이행을 위해 방문하는 자연인(CSS), 피고용인이 아닌 독립된 전문가로서 서비스 공급을 위해 방문하는 자연인(IP)의 입국 및 일정 기간 동안 체류를 허용하게 된다.

분야에 따라 다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ICT, BV는 양허하고 CSS, IP는 일부 양허하거나 양허하지 않고 있다.⁸⁷⁾ 따라서 영국은 EU 법상 사람의 자유 이동을 갈음하여 전통적인 FTA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인 ICT, BV, CSS. IP의 제한 없는 양허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경우, 패스포팅 제도를 포함한 서비스 공급/설립의 자유에 필요한 사람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높은 수준의 이민 통제가 가능해지므로 영국에는 최상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하고, 이동이 허용되는 대상과 체류기간이 크게 제한되는 전통적인 FTA 수준의 양허를 수용하고

⁸⁶⁾ 독일 총리 Angela Merkel도 이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영국과 EU의 타협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Reuters(2016. 11. 16) 참고.

⁸⁷⁾ 예를 들어, 한 · 중, 한 · 베트남 FTA에서 우리나라는 ICT, BV, CSS(일부)를 양허하고 IP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상품, 서비스/설립, 자본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허용하는 것을 EU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3) 비단일시장 모형

영국과 EU가 단일시장 모형을 포기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전통적인 FTA를 기반으로 한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FTA 모형은 관세율 인하 또는 관세 철폐, 서비스 공급 및 인적 이동과 관련한 제한 완화, 정부 조달 접근 제한 완화 또는 철폐, 지적재산권 보호, 식품 위생, 소비자 보호등 무역 관련 규범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통상 전통적인 FTA 모형은 자유무역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WTO 양허를 기준으로 관세율의 추가 인하와 일부 무역 규범을 추가한 WTO+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며,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국내 입법의 조화(harmonization)는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EU가 타결한 통상 협정 중 가장 포괄적인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평가받는 EU· 캐나다 CETA는 모든 산업 상품의 관세 철폐, 육류 및 달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 수산물 수입 쿼터 철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EU 법상 4대 자유와 같은 표준,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국내 규정의 상호 인정이나 조화는 다루고 있지 않다. 88) 예를 들어 자동차나 화학 물질의 경우 캐나다 표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EU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판매가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 서비스 통합도 상정하지 않아 캐나다의 금융기관이 EU에서 금융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EU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여야하며 정부 조달에 대한 자유화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89)

영국과 EU가 전통적인 FTA 모형을 택한다면 영국은 EU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할 필요가 없고, 독자적인 이민 정책, 대외 통상 정책을 보유할 수 있으며

⁸⁸⁾ Piris(2016,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6. 10. 21), p. 9.

⁸⁹⁾ Ibid., p.10.

EU 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브렉시트 찬성파의 동의를 얻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탈퇴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관련 표준 및 규정의 상호인정과 정부조달 계약 참여 허용 등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영국의 대EU 무역은 상당 부분제한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패스포팅 권한의 상실로 인해 발생하게 될 경제적손실과 금융 허브로서 런던 시티(City)의 지위 상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더하여 기존에 EU 단일시장에 기반하여 영국과 EU 시민이 취득한 권리 처분 등의 법적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영국정부가 단시간 내에 제시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된다.

5. 소결

영국 국민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당초에 크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제부진을 세계화와 개방화의 결과로 보는 국민 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국 국내적 요인으로 보자면, 영국은 과거부터 유럽 대륙과의 통합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는 영국적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캐머런 전 총리의 보수당 내역학관계, EU 예산 기여금에 대한 거부감, 역내이민자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당초 2017년 3월 초에 시작하려고 했던 브렉시트 탈퇴협상은 법원에서 상하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판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더해졌으나,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내년에 탈퇴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탈퇴협상 과정이나 영-EU 관계의 형태에 대한 여러 예측들이 있으나 긴 탈퇴 협정 협상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여러 정치적 변수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EU 조약 제50조는 회원국의 EU 탈퇴 가능 여부, 탈퇴절차를 규정하였으나 타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법적 문제들에 대해 규정하

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적잖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탈퇴 협정의 형태, 협정 체결 시 이사회 의사 결정 방식, 탈퇴 회원국 출신 유럽의회 의원의 협정 동의절차 참여 여부, 협상 연장 시 그 기간 및 재연장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이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부른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단일시장 접근을 위해 이민 통제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발언을 기초로 영국이 단일시장 접근을 포기하는 소위 하드브렉시트를 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였다. 90) EU 조약 제50조 발동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영국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견해도 상당한 힘을 얻고 있다. 91) 다만 메이 정부가 의회의 입맛에맞는 단일시장 모형을 제안하기보다는 의회와의 대결을 통해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바탕으로 하드브렉시트적 접근을 의회에 압박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추정된다.

탈퇴 협정 협상이 개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사실 브렉시트 이후 영-EU 관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장에서도 이러한 목적에 활용 가능하도록 탈퇴협상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을 제시하는 한편 탈퇴 협정의최대 쟁점인 단일시장 접근 허용 여부를 중심으로 영-EU 관계의 여러 형태를예측하고 법적 결과를 형태별로 분석하였다.

⁹⁰⁾ Watts, Joe(2016. 10. 3).

⁹¹⁾ Boffey and Glaister(2016. 11. 6).

제3장 **K**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효과



이 장에서는 브렉시트가 영국 및 유럽 경제, 나아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충격을 단기적, 중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해 보기로 한다. 브렉시트의 단기적 거시경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브렉시트의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가정해야 한다. 1절에서는 단기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충격의 정도를 시나리오별로 구분하여 모형에 충격을 가하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2절에서는 브렉시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 효과인데 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렉시트로 인해 최종적으로 영국과 EU 간의 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될 것인지에 관한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몇 가지 종류의 양국간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하드브렉시트와 소프트브렉시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브렉시트의 형태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1. 단기적 효과92)

가. 분석모형과 방법

이 절에서는 Oxford Economics Global Model Workstation을 이용해서 브렉시트의 세계경제에 대한 충격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동태적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추정한다. 이 모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45개국별로 500여 개의 다양한 거시경제변수들에 대한 가상적인 충격의 분기별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정책 실험의 단기적, 동태적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각국의 통계청 혹은 중앙은행에서 공개되는 가장 최근

⁹²⁾ 이 절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의 산업통상자원부 수탁과제 『브렉시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의 제4장 1절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업데이트되어 있으므로 시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구조방정식의 형태가 아니라 경제변수들의 연립방정식 체계(system of simultaneous equations)로 이루어진 축약형식(reduced form) 모형이어서 모형의 계산 결과를 직접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93)

브렉시트가 모형의 해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를 정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브렉시트의 가상적인 영향을 추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브렉시트가 모형에 미치는 영향력과 기간을 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의 프로세스(shock process)가 바뀐 것으로 간주한다. 모형에 충격을 주는 방식은 모형의 연립방정식 중 일부를 가정에 따라서 다른 제약식(constraint)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다. 브렉시트를 가정하지 않은 연립방정식의 해와 브렉시트를 가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제약식이 도입된 연립방정식의 해를 도출한 후 이 두 연립방정식의 해의 차이를 우리는 브렉시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값으로 본다.

따라서 충격을 주는 국가와 경제변수의 숫자가 커질수록 모형의 연립방정식체계에 부가적으로 더해야 하는 제약식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계산 소요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모형이 새로운 균형에서의 해를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충격을 주는 대상국가와 경제변수의 숫자를제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충격을 주는 대상 국가를 유럽 국가(20개의 유럽연합 국가와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와 미국, 일본, 인도,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으로 한정하고 충격을 주는 변수는 이들 국가의 총고정자본투자(real total fixed investment), 금융시장의 신뢰도에 대한 충격(confidence shock), 그리고 VIX지수에 한정한다.

⁹³⁾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는 「세계경제전망」에서 동 모형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2016년 8월 1일에 업데이트된 모형을 활용하여 브렉시트의 정량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나. 브렉시트 파급 시나리오 및 가정

브렉시트의 단기적 거시경제 충격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IMF 등 여러 국제기구들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브렉시트 효과 추정에 대해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거시경제 충격의 크기를 선험적으로 가정하고 그가정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즉 과거의 글로벌 경기침체(global recession) 중 규모 면에서 가장 컸던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받았던 만큼의 충격을 영국이 받고, 여타 다른 국가들은 그것보다는 작은 규모의 충격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IMF 2009). 또한 브렉시트에 의한 이런 가상적인 충격이 영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국가들 중 어느 국가까지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브렉시트의 파급 영향력이 달라지므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한다.

상황에 따라 브렉시트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i) 영국이 2008~09년 받았던 만큼의 충격을 받는 경우(시나리오 1) (ii) 시나리오 1에 추가적으로 EU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충격을 받는 경우(시나리오 2) (iii) 시나리오 2에 추가적으로 기타 주요국들이 충격을 받는 경우(시나리오 3)로 나누어서 분석한다(표 3-1 참고). 단, 시나리오별로 해당 국가들이 2008~09년의 글로벌 위기만큼, 또는 이에 준하는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지, 기타 지역의 국가들이 아무런 파급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다 자세한 충격의 정도에 관한 가정은 [표 3-1]과 같다.

표 3-1. 브렉시트의 영향 시나리오

시나리오	내용
시나리오 1	- 영국의 총고정자본투자에 직접적인 충격 - 영국의 금융시장의 신뢰도에 대한 충격(confidence shock) - VIX index +0.5p 충격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1에 추가적으로 EU 국가 및 터키, 노르웨이, 스위스의 총고정자본투자에 충격을 주되 글로벌 경기침체 기간 동안 받았던 충격의 1/4만큼의 충격 - 이들 국가의 금융시장 신뢰도에 대한 충격 - VIX index +1.0p 충격
시나리오 3	 시나리오 2에 추가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의 총고정자본투자에 EU가 평균적으로 받았던 충격의 절반만큼의 충격 이들 국가의 금융시장 신뢰도에 대한 충격 VIX index +2.0p 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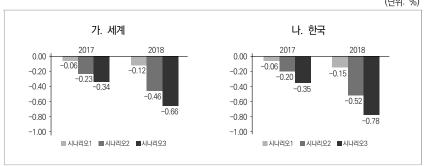
자료: 저자 정리.

다. 분석결과

[그림 3-1]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브렉시트에 의해서 단기적 으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준다. 시나리오별로 브렉시트는 세계의 GDP를 기준 전망 대비 2017년 0.06~0.34%, 2018년에는 0.12~0.66% 감소 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1. 시나리오별 주요국의 기준 전망 대비 GDP 감소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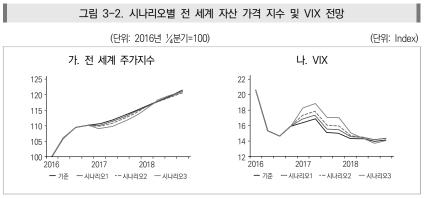


주: 기준(baseline) 전망 대비 감소폭.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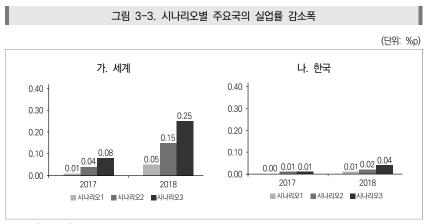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2017년 0.06~0.35%, 2018년 0.15~0.78% 만큼 GDP를 기준 전망 대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브렉시트의 충격이 단기적으로 세계경제 성장을 하락시키는 경로를 추정해 보면, 금융시장의 충격이 글로벌 수요를 감소시키고, 글로벌 수요 감소가 주요국의 수출과 수입 증가를 모두 감소시킴으로써 더욱 더 글로벌 수요를 감소시켜 서 각국의 GDP가 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2]는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를 보여준다. 시나리오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브렉시트가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기업의 자산가격을 하락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브렉시트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전 세계주가지수는 2017년에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8년 중반 회복에 이르기까지 최대2p만큼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동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VIX index는 최대2p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불확실성의 증대가기업 자산가치를 감소시키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첫째, 기업의 자산과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부진을 유발하며 기업 자산에 대한 수요 감소에 따라서 자산가격의 감소가 일어난다. 둘째,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기업의 자산가격에 반영된다.



주: VIX(Volatility Index)는 S&P 500지수 옵션과 관련해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기대지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3]은 브렉시트에 의해서 실업률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2017년에는 0.01~0.08%p, 2018년에는 0.05~0.25%p의 실업률 증가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7년에는 0~0.01%p, 2018년에는 0.01~0.04%p의 실업률 증가가 예상된다.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해서 노동과 자본의 두 생산요소는 상호 보완적이다. 즉 불확실성의 증대에 의해서 기업에 의한 자본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은 고용 역시 가능한 한 감소시키려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 감소에 따른 기업의 고용 감소로실업률이 상승한다.



주: 기준(baseline) 전망 대비 감소폭

자료: 저자 작성.

브렉시트의 충격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와 투자증가율의 감소를 유발한다. 기업의 투자는 비가역적 투자(irreversible investment)여서 고정비용을 수반 하므로 다시 되돌리는데 따른 비용을 수반한다. 실업률 상승과 더불어 자산가치 하락은 음(-)의 소득과 부의 효과(income and wealth effect)를 통해서 가계의 민간소비 감소를 초래한다. 이것은 다시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므로 기업의 투자 역시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표 3-2]는 우리 경제의 지출항목별 성장률 전망을 보여준다. 글로벌 수요의 감소는 우리 경제의 수출을 감소시켜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등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 모두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은 브렉시트가 세계경제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과 다르지는 않으며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뿐만 아니라 투자와 수출의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소비는 최대 0.38% 감소하는데 반해, 투자와 수출은 각각 0.05~0.74%, 0.08~1.18%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가계 소비의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때문에 충격에 대한 민간소비의 진폭은 투자와 수출에 비해서 작다. 둘째, 투자와 수출 모두 고정비용과 매몰비용을 요구하므로 경기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업이 보다 조심스럽게 결정하므로 그 진폭은 더 크게 될 것이다.94)

표 3-2. 한국의 기준 전망 대비 지출항목별 감소폭

(단위: %)

							(LIII /0)
	171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국가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국내총생산(GDP)		-0.06	-0.15	-0.20	-0.52	-0.35	-0.78
민 간 소 비		-0.01	-0.09	-0.04	-0.26	-0.07	-0.38
투	자	-0.05	-0.17	-0.17	-0.56	-0.32	-0.74
수	출	-0.08	-0.19	-0.31	-0.74	-0.57	-1.18
수	입	-0.03	-0.15	-0.15	-0.55	-0.30	-0.82

주: 기준(baseline) 전망 대비 감소폭

자료: 저자 작성.

⁹⁴⁾ 이와 관련해서 정규철(2016)은 글로벌 투자 부진이 소비 부진에 비해서 우리 경제성장률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2. 중장기적 효과95)

가. 분석모형 및 자료

이 절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하여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성장 및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CGE 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내부의 상호 의존적인 개별 부문과 수출입 등 대외 부문을 통합한 모형으로 FTA나 DDA에 따른 개방, FDI 유입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분석 시나리오를 관세감축 또는 수요 증가, 자본스톡 증가, 생산성 증가 등의 외생적 변화로 개념화할 수 있어, 다양한 정책 실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브렉시트는 직접적으로는한국의 대EU, 대영국 교역관계를 통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EU와 영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을 거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CGE 모형은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CGE 모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모형을 이용하였다. 자료는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GTAP Database Version 9(이하, GTAP DB V9)를 이용하여, 향후 브렉시트의 시나리오별 예상되는 거시경제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GTAP DB V9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 DB는 2004년 과 2007년, 2011년을 기준년도로 하는 세 개의 하위 DB를 담고 있으며, 140 개 국가 및 지역의 57개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먼저 분석대상 국가는 브렉시트가 유럽, 세계 주요국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⁹⁵⁾ 이 절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의 산업통상자원부 수탁과제 『브렉시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의 제4장 2절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⁹⁶⁾ 본 연구에서 사용된 GTAP DB V9은 2015년에 출시된 가장 최신 버전임. 다만 기준년도가 2011년으로 다소 과거자료이나, 정책의 효과를 금액이 아닌 변화율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기준년도 시점에 따른한계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을 본다는 분석목적에 맞게 한국, 중국,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아세안, 인도, EU, 영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터키, 기타 세계의 14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GTAP DB V9에는 총 140개의 국가 및 지역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역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중국, 아세안, 일본을 별도로 분류하였고, EU의 주요 상대국인 스위스,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터키, 인도 등도 세분화하였다. 분석의 편의와 계산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나머지 국가 및 지역을 기타 세계(ROW: Rest of the World)로 분류하였다.

산업분류를 보면 전체 57개 산업을 크게 26개로 재분류하였으며 이미 발효된 FTA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선행결과와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업은 ① 쌀② 곡물, 과일 및 채소③ 육류 및 낙농④ 가공식품⑤ 기타농업⑥ 수산업으로, 제조업은① 채취업② 섬유ㆍ직물③ 의복④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⑤ 철강⑥ 비철금속⑦ 자동차⑧ 기타수송기기⑨ 전자⑩ 기계⑪ 기타제조업(가죽, 목제품, 종이ㆍ인쇄, 광물제품)으로 하였으며, 서비스업은 통상적인 FTA 분석에서하나의 서비스업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브렉시트의 특성상 영국 서비스업의 변화를 추적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세분화하여① 건설서비스② 통신서비스③ 금융서비스④ 보험서비스⑤ 사업서비스⑥ 교역서비스⑦ 운송서비스(육상, 항공)⑧ 해운서비스⑨ 기타서비스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영국과 EU 간 서비스 교역장벽의 상승 또는 완전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하려면 서비스 교역비용 감소를 모형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CGE 모형을 통한 서비스 교역장벽의 완화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급 측면(supply side) 접근법에 초점을 맞춰,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 서비스 장벽 변화로 기대할 수 있는 생산자의 비용 변화를 추정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ontagne *et al.*(2011)의 추정치를 토대로 EU와 영국의 서비스 산업별 교역장벽을 계산하였다. Fontagne *et al.*(2011)에서는 각국의 산업별 서비스 교역장벽이 제시되고 있는바, 이를 토대로 GTAP 자료상 영국과 EU의 산업별 서비스 교역액을 가중치로 하여 산업을 재분류하였다.

표 3-3. EU와 영국의 서비스 산업별 교역장벽

(단위: %)

		(=11 /0)
산업	EU 서비스 장벽	영국 서비스 장벽
건설 서비스	25.33	23.00
통신 서비스	35.18	84.90
금융 서비스	25.80	19.60
보험 서비스	29.84	36.00
사업 서비스	21.52	30.90
교역 서비스	27.75	34.60
운송 서비스	19.78	6.10
해운 서비스	37.67	38.00

자료: Fontagne *et al.*(2011) 추정치를 토대로 저자 정리.

나. 분석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2단계에 걸쳐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기초 자료인 GTAP DB V9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한국의 기발효 FTA를 반영하고, 제2단계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정책과 EU와의 관계를 가정한 5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2011년 이후 관세철폐 기간이남아 있는 주요 FTA의 양혀 스케줄을 반영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1단계에서 한・인도, 한・터키, 한・중, 한・아세안, 한・미, 한・EU FTA를 반영하였다.

2단계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 논의 가능성을 토대로 현실성 높은 10개의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다. 먼저 첫 여섯 개의 시나리오(시나리오 1~6)에서는 한국과 EU, 영국 간에 한 · EU FTA로 인한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한 · EU FTA 유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즉, 브렉시트 이후에 한 · 영 FTA가 발효되어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국과 영국 사이에 특혜적 시장접근이 허용되는 경우이다.

표 3-4. 시나리오 구분

제1단계		제2단		
기발효 FTA 반영		브렉시트 시나	리오 분석	
	1		전 세계→영국: 무관세 + 영국→EU: 무관세	
한·인도 CEPA	2 PIF CEPA	전 세계→영국: 무관세 + 영국→EU: MFN		
한 · 터키 FTA 한 · 중 FTA	3	한국↔EU: FTA 한국↔영국: FTA	영국↔EU: MFN 영국↔EU: 서비스 장벽 2배↑	
한·아세안 FTA	4	(한·EU FTA 유효)	영국↔EU: MFN	
한·미 FTA	5		영국↔EU: 무관세 영국↔EU: 서비스 장벽 2배↑	
	6		영국↔EU: 무관세 영국↔EU: 서비스 장벽 철폐	
	3-1		영국↔EU: MFN 영국↔EU: 서비스 장벽 2배↑	
	4-1	한국↔EU: FTA	영국↔EU: MFN	
	5-1	한국↔영국: MFN (한·EU FTA 변경)	영국↔EU: 무관세 영국↔EU: 서비스 장벽 2배↑	
	6-1		영국↔EU: 무관세 영국↔EU: 서비스 장벽 철폐	

주: →는 수출방향을 의미함. 즉 영국→EU: MFN은 영국에서 EU로의 수출에 대해 EU가 MFN 부과를 의미. 자료: 저자 정리.

[표 3-4]의 시나리오를 설명하자면, 일단 시나리오 1은 영국이 전 세계에 대 하여 일방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EU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 이 무관세 시장접근이 허용되는 경우다. 이것은 현재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소 수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브렉시트 이후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다. 편의상 EU와의 서비스 장벽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였다. 시나리오 2는 시나 리오 1과 유사하지만 영국과 EU 사이에서만 관세장벽이 MFN 수준으로 복원 되는 경우인데 가능성이 희박하다. 시나리오 3은 영국과 EU 간 탈퇴협상이 파 국으로 치닫는 경우로 하드브렉시트의 상황을 상정한다. 즉, 영국과 EU 사이 에 MFN 관계로 복원되어 관세장벽이 생기고 서비스 교역장벽도 MFN 수준으 로 높아지는 경우를 상정한다. 시나리오 4는 시나리오 3과 유사하지만 서비스 시장접근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5는 소프트브렉시트와 근접한 상황이다. 즉, 영국이 여전히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지만 서비스 시 장접근은 현재보다 떨어져 서비스 교역장벽이 MFN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우 이다. 시나리오 6은 영국과 EU 간 상품은 무관세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서비스 교역장벽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로 이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지 않고 계속 적으로 서비스 교역자유화를 추진했을 경우를 가정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며, 유 럽통합이 지향하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단일시장을 완성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 럽통합의 지향점을 나타낸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네 개의 시나리오 3-1~6-1 은 한국과 EU 간에는 한 · EU FTA로 인한 협정세율이. 영국의 EU 탈퇴로 한 국과 영국 간에는 MFN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데, 한 · 영 FTA가 없어서 양국간 의 관계가 WTO MFN 관계로 돌아가는 경우를 상정하는 유사상황이다. '한· EU FTA 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시나리오 3-1은 영국과 EU 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상호 MFN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3을 토대로 한국과 영 국 간에도 MFN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4-1은 영국과 EU 간 상 호 MFN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4를 토대로 한국과 영국 간에도 MFN 관세 를 부과하는 경우이며, 시나리오 5-1은 영국과 EU 간 서비스 교역장벽이

MFN 수준(현재보다 2배)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 5를 기반으로 한국과 영국 간 MFN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6-1은 영국과 EU 간 서비스 교역장벽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나리오 6을 토대로 한국과 영국 간 MFN 관세가 적용되는 시나리오이다.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4개 정도로 추정된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경우가 시나리오 3-1과 5-1인데, 이는 브렉시트로 인해 한 · EU FTA 협정문이 더 이상 한국과 영국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 과거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으로 한 · EU FTA 협정문을 개정한전례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EU 탈퇴 역시 한국과 나머지 EU 회원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한 · EU FTA 협정문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한국과 영국은 상호 특혜관세 적용을 철폐하고, 이런 속에서 영국과 EU 간 협상이 난항을 겪어 상품과 서비스 장벽이 모두 MFN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인시나리오 3-1은 하드브렉시트로, 원만한 협상으로 상품관세는 그대로 무관세를 적용하되 인력이동을 포함한 서비스 교역장벽만 높이는 경우인시나리오 5-1은 소프트브렉시트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미 한국과 EU 간 체결한 FTA는 발효된 지 5년을 경과하여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철폐가 완료되었다. 게다가 현재의 협정문을 토대로 EU, 영국에 각각 적용되는 별도의 FTA를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경우에는 한 · EU FTA가 여전히 한국과 영국이 빠진 EU 및 영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5이다. 이 두 시나리오 역시 시나리오 3-1과 시나리오 5-1처럼 영국과 EU간 협상에 대한 예상이 각각 하드브렉시트인지 소프트브렉시트인지를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시나리오 3(하드브렉시트)과 시나리오 5(소 프트브렉시트)이며, 한 · 영 FTA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각각의 경우를 유사상 황인 시나리오 3-1, 시나리오 5-1과 비교한다.

다. 분석 결과

1) 거시경제 효과

브렉시트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0.048~0.088% 변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3(하드브렉시트)과 시나리오 5(소프트브렉시트)만을 보면 각각의 경우 0.088%와 0.043%의경제성장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가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

각각의 경우 영국과 EU 경제에 큰 악영향이 예상되는데,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영국과 EU는 각각 -1.56%, -0.18%,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각각 -0.949%, -0.133%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영국과 EU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보다 자세하게 경제성장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 EU도 영국에 무관세를 적용하면 0.015%, EU가 MFN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0.0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국과 EU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상품과 서비스 장벽이 모두 MFN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시나리오 3)에는 반사이익으로 0.088% 실질 GDP가 증가하고, 상호 관세만 MFN 수준으로 높이는 경우에는 0.045%, 영국과 EU가 상품은 무관세로 두고 서비스 교역장벽만 2배 높이는 경우에는 0.043%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기대되는 반면, 영국과 EU가 서비스 교역장벽을 모두 철폐하는 경우에는 0.048%의 경제성장률 감소가 우려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가 상호 장벽을 높이는 경우에는 현재의 교역구조에서 EU와 영국 간 경제규모 축소로 인한 수출감소보다는 무역전환으로 인한수출증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무역전환 효과는 영국과 EU 간 서비스 교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는 경우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0.048% 감소하는 시나리오 6에서도 발견된다. 다만 시나리오 1~6이 한국과 영국이 포함된 EU 간 체결한 FTA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분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이미 한 · EU FTA가 발효된 지 5년을 경과하여 대부분 품목에서의 관세철폐가 완료되었고, 현재의 협정문을 토대로 EU, 영국과 개별 FTA를 체결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영국과 EU는 시나리오 3~6에서는 동일한 방향으로 성장효과가 나타났으나, 영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시나리오(시나리오 1)에서는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0.176% 높아지는 반면, EU는 -0.011%의 경제성장 효과를 갖게 되며, 영국은 일방적인 무관세를, EU는 영국에 대해 MFN 관세를 적용하는 시나리오(시나리오 2)에서는 영국은 -0.187%, EU는 0.002%의 성장효과가 기대된다.

표 3-5. 브렉시트의 경제성장 효과(한·EU FTA 유효)

(단위: %)

						(LTI: 70)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한국 · 영국, EU 관세		한국	? ↔EU: FTA,	한국↔영국:	-TA	
영국·EU 관세	영국: 일방철폐 영국→EU: 무관세	영국: 일방철폐 영국→EU: MFN	MFN	MFN	무관세	무관세
영국·EU 서비스 장벽	현재 수준	현재 수준	2배 상승	현재 수준	2배 상승	완전 철폐
한국	0.015	0.058	0.088	0.045	0.043	-0.048
중국	0.047	0.073	0.056	0.031	0.024	-0.028
일본	0.021	0.042	0.046	0.024	0.022	-0.025
EU	-0.011	0.002	-0.180	-0.048	-0.133	0.150
영국	0.176	-0.187	-1.560	-0.600	-0.949	1.083
미국	0.010	0.019	0.026	0.011	0.015	-0.017

주: →는 수출방향, 즉 영국→EU: MFN은 영국에서 EU로의 수출에 대해 EU가 MFN 부과를 의미. 자료: 저자 추정.

한국과 EU 간 체결한 FTA가 영국의 탈퇴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의 실질 GDP는 -0.085~0.05% 변화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3-6 참고).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3-1(하드브렉시트)과 시나리오 5-1(소프트브렉시트)만을 보면 각각의 경우 0.050%와 0.006%의 경제성장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가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각각의 경우 영국과 EU 경제에는 큰 악영향이 예상되는데,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영국과 EU는 각각 -1.578%, -0.178%,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각각 -0.966%, -0.131%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영국과 EU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한 · 영 FTA가 있는 [표 3-5]와 비교해 보면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0.038%p,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0.037%p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 · 영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영국과 EU 간 탈퇴협상의 최종형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각각의 경우 영국과 EU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영국은 이 상황에서도 한국과 FTA를 맺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0.018%p,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0.017%p 정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EU는 반대로 어느 경우에서든지 한 · 영 FTA가 없는 경우가 0.002%p 정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한 · 영 FTA 체결은 브렉시트로 인한 이득을 약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나리오 3~6에서의 한국의 실질 GDP 변화(-0.048~0.088%)에 비해, 한국과 영국이 상호 MFN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3-1~6-1에서 한국의 실질 GDP 변화는 -0.085~0.05%로 낮아지게 되며, 영국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실질 GDP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

국과 영국이 상호 관세율을 높이면서 양국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과 영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경우에는 미미하지만 추가적인 성장혜택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과 영국 간 관세장벽 상승으로 인한 무역전환이 여타 국가들에는 추가적인 수출확대로 이 어짐을 알 수 있다.

표 3-6. 브렉시트의 경제성장 효과(한·EU FTA 변경)

(단위: %)

				(=11-70)					
구분	시나리오 3-1	시나리오 4-1	시나리오 5-1	시나리오 6-1					
한국·영국, EU 관세		한국↔EU: FTA, 한국↔영국: MFN							
영국·EU 관세	MFN	MFN	무관세	무관세					
영국·EU 서비스 장벽	2배 상승	현재 수준	2배 상승	완전 철폐					
한국	0.050	0.006	0.006	-0.085					
중국	0.058	0.033	0.026	-0.026					
일본	0.048	0.025	0.024	-0.024					
EU	-0.178	-0.046	-0.131	0.152					
영국	-1.578	-0.617	-0.966	1.066					
미국	0.027	0.011	0.016	-0.016					

주: →는 수출방향을 의미, 즉 영국→EU: MFN은 영국에서 EU로의 수출에 대해 EU가 MFN 부과를 의미. 자료: 저자 추정.

소비자 후생의 변화도 전체적인 방향은 경제성장 효과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3-7과 표 3-8 참고).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소비자 후생 변화는 -4.9 억~9.0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표 3-7 참고). 영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EU도 영국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0.73억 달러, 영국의 일방적 관세철폐에도 EU가 MFN을 영국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5.16억 달러 후생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영국과 EU 간 상품 및 서비스 장벽을 MFN 수준으로 높이는 하드브렉시트의 경우에는 한국의 소비자 후생이 9.03억 달러

까지 증가하며, 상품에 대해서만 MFN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4.53억 달리, 영국과 EU가 단일시장에 준하는 시장접근을 유지한 채 서비스 교역장벽을 2배 높이는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에는 4.37억 달러의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되는 반면, 영국과 EU가 서비스 교역장벽을 모두 철폐하는 경우에는 4.9억 달러 소비자 후생 감소가 우려된다.

경제성장 효과와 마찬가지로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 교역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무역전환으로 인해 영국, EU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그 결과 국내소비자 후생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역전환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효과는 영국과 EU가 상호 서비스 교역장벽을 완전히 없애는 시나리오 6에서는 4.9억 달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표 3-7. 브렉시트의 소비자 후생효과(한·EU FTA 유효)

(단위: 억 달러)

	(근치・커 라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시나리오 6
한국 · 영국, EU 관세		한국	ł↔EU: FTA,	한국↔영국:	-TA	
영국 · EU 관세	영국: 일방철폐 영국→EU: 무관세	영국: 일방철폐 영국→EU: MFN	MFN	MFN	무관세	무관세
영국·EU 서비스 장벽	현재 수준	현재 수준	2배 상승	현재 수준	2배 상승	완전 철폐
한국	0.73	5.16	9.03	4.53	4.37	-4.90
중국	41.44	58.84	32.64	18.97	13.16	-15.07
일본	10.49	18.91	19.78	11.15	8.41	-9.53
EU	-36.12	19.55	-234.55	-69.35	-168.15	188.08
영국	2.80	-130.74	-367.73	-125.49	-238.20	271.74
미국	14.70	26.04	40.40	14.73	25.37	-27.07

주: →는 수출방향을 의미함. 즉 영국→EU: MFN은 영국에서 EU로의 수출에 대해 EU가 MFN 부과를 의미함. 자료: 저자 추정.

한 · EU FTA 변경으로 한국과 영국 간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시나리오 3-1~6-1의 경우, 한국의 소비자 후생은 -8.46억~5.18억 달러 변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성장효과와 유사하게 시나리오 3~6에서의 소비자 후생효과가 -4.9억~9.03억 달러인 데 비해, 시나리오 3-1~6-1에서는 -8.46억~5.18억 달러로 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과 영국간 적용되는 세율이 FTA 협정세율에서 MFN 세율로 높아지면서 수입재의 소비재 가격이 높아지게 되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3-1과 시나리오 5-1을 살펴보면,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한·영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소비자 후생이 3.8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에도 3.5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보인다. 영국은 한·영 FTA를 체결할 경우 소비자 후생 감소를 5.17억, 5.18억 달러 만회할 수 있고 이 경우 EU는 2.84억 달러, 2.74억 달러만큼 추가로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표 3-8. 브렉시트의 소비자 후생효과(한·EU FTA 변경)

(단위: 억 달러)

				(단위: 약 달리)						
구분	시나리오 3-1	시나리오 4-1	시나리오 5-1	시나리오 6-1						
한국 · 영국, EU 관세		한국↔EU: FTA, 한국↔영국: MFN								
영국·EU 관세	MFN	MFN	무관세	무관세						
영국·EU 서비스 장벽	2배 상승	현재 수준	2배 상승	완전 철폐						
한국	5.18	0.69	0.79	-8.46						
중국	33.81	20.11	14.30	-13.99						
일본	20.59	11.94	9.21	-8.79						
EU	-231.71	-66.52	-165.41	190.80						
영국	-372.90	-130.51	-243.38	266.83						
미국	41.40	15.70	26.35	-26.15						

주: →는 수출방향을 의미함. 즉 영국→EU: MFN은 영국에서 EU로의 수출에 대해 EU가 MFN 부과를 의미함. 자료: 저자 추정.

제4장



브렉시트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

- 1. 브렉시트의 파급경로 분석: GVC를 중심으로
- 2.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 분석
- 3.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CGE 분석
- 4. 금융 ·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장은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여러 산업의 수출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먼저 1절에서는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전 산업의 대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 투입산출분석표를 이용하여분석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파급경로를 산업간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점이다. 따라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파악한다. 2절과3절은 범위를 좁혀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다. 2절은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함수의 탄력성을 이용하여분석하고 있다. 3장 1절의 단기적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상정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브렉시트에 따른 제조업 산업별 수출 영향력을 추정한다. 3절은 3장 2절의 CGE 모형 분석에서 상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4절은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의 금융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 브렉시트의 파급경로 분석: GVC를 중심으로⁹⁷⁾

가. 브렉시트와 세계 투입산출

이 절에서는 세계 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world input-output database)를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s)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브렉시트의 파급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투입산출 모형의가장 큰 장점은 국가간 그리고 산업간 연결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현지 생산이나 부품조달 등 중간재 교역이 크게 발달한상황에서 국가간의 무역관계를 직접교역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브렉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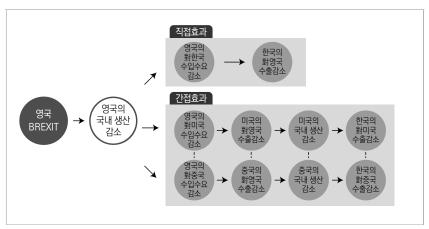
⁹⁷⁾ 이 절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의 기획재정부 수탁연구과제 『브렉시트에 따른 중장기적 경제 환경 변화 및 대응방향』의 일부를 발췌 요약한 것이다.

와 같은 경제적 위기는 금융 경로나 직접적인 무역관계를 통해 다른 국가로 파급되기도 하지만, EU, 미국, 또는 중국과 같은 여타 경제권을 통해 파급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국가간의 상호 연결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세계 투입산출표 분석은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절에서 하고 있는 브렉시트가 우리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은 [그림 4-11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4-1]은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국내 생산 감소가 우리 무역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 투표 이전에도 이미 수많은 연구자와 연구기관들이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해 왔다. 만약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경제가 위축(GDP 하락)될 경우 영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수입수요의 감소는 한국의 수출에 직접적으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직접적인 영향은 [그림 4-1]의 직접효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영국의 수입수요 감소로 인해 한국으 로부터의 최종재 및 중간재 수입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간접적인 영 향은 [그림 4-1]의 간접효과에 보이는 바와 같이. 영국의 수입수요 감소로 인해 여타 EU 회원국, 미국,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모두 감소하게 된다. 이들 국가에서 영국으로의 수출감소는 다시 해당 국가의 수입수요 감소를 의미 하여 한국의 이들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다. 특히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가 발달함에 따라 중간재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간접효 과는 더 이상 무시할 정도로 작은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분 석을 통해 한국과 영국의 무역관계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통상 측면에 있어 브 렉시트가 한국에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투입산출표는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의 국가간, 산업간 거래관계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행렬(matrix) 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광범위하게 작성되어 경제구조 분석, 경제예측 및 계획수립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작성되지만, 산업분류 기준 등이나 거래관계에 대한 원칙을 통일하여 국가간 표를 작성하기도 한다.

그림 4-1. 브렉시트의 직접 및 간접 파급경로 예시



자료: 저자 작성.

최근 OECD 등에서 제시한 세계 투입산출표(world input-output table) 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무역 패턴을 비롯하여 국가 상호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현재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생산활동을 위해 상호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연결관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세계 투입산출표는 각국의 투입산출표와 국가간 수출입 데이터를 결합하여 전 세계의 국가 및 산업간 투입산출 구조를 하나의 투입산출표로 작성하는 방대한 작업으로, 그동안 주요 연구기관들은 세계 투입산출표를 구축하기 위해 각국의 국내 투입산출표 및 거시통계의 분류체계를 연계해 왔다.

이 연구에서 기초 데이터로 이용한 세계 투입산출표는 EU 집행위원회의 자금지원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40개 국가와 나머지로 지역분류를 하고 있으며, 35개 산업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 투입산출표에 포함되는 국가로는 EU 27개국,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대만,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터키 등 40개 국가와 기타 국가(RoW: Rest of World)가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세계 투입 산출표는 35개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와 유사한 EU 의 경제활동 분류체계인 NACE를 토대로 하고 있다.

표 4-1. 세계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 국가 분류

	WIOD	본 연구		WIOD	본 연구
번호	국가 분류	국가 분류	번호	국가 분류	국가 분류
1	오스트레일리아	기타 국가	22	이탈리아	EU(-1)
2	오스트리아	EU(-1)	23	일본	일본
3	벨기에	EU(-1)	24	한국	한국
4	불가리아	EU(-1)	25	리투아니아	EU(-1)
5	브라질	기타 국가	26	룩셈부르크	EU(-1)
6	캐나다	기타 국가	27	라트비아	EU(-1)
7	중국	중국	28	멕시코	기타 국가
8	사이프러스	EU(-1)	29	몰타	EU(-1)
9	체코	EU(-1)	30	네덜란드	EU(-1)
10	독일	EU(-1)	31	폴란드	EU(-1)
11	덴마크	EU(-1)	32	포르투갈	EU(-1)
12	스페인	EU(-1)	33	루마니아	EU(-1)
13	에스토니아	EU(-1)	34	러시아	기타 국가
14	핀란드	EU(-1)	35	슬로바키아	EU(-1)
15	프랑스	EU(-1)	36	슬로베니아	EU(-1)
16	영국	영국	37	스웨덴	EU(-1)
17	그리스	EU(-1)	38	터키	기타 국가
18	헝가리	EU(-1)	39	대만	기타 국가
19	인도네시아	기타 국가	40	미국	미국
20	인도	기타 국가	41	기타 국가	기타 국가
21	아일랜드	EU(-1)			

주: EU(-1)은 영국 이외의 EU 국가를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영국과 한국의 직간접적 교역관계를 분석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석 목적에 맞게 7개 지역(혹은 국가 그룹)과 1개의 산업으로 국가와 산업을 재분류하였다. 국가 분류의 경우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을 제외한 EU가입국, 기타 국가이며, 세계 투입산출표와 본 연구의 국가 분류 비교는 [표 4-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투입산출표에 제시된 35개 산업 분류를 거시수준의 하나의 산업으로 단순화하였다. 98)

나. 세계 투입산출표 구조99)

세계 투입산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 투입산출표를 국가간의 교역관계를 통해 상호 연계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기타 국가인 RoW를 포함 하여 총 41개국 상호간의 중간재와 최종재의 수출입을 국가별, 산업별로 연결 하여야 한다. 세계 투입산출표의 특징은 국내 투입산출표와 다르게 외국과의 중간재 거래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성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1000 데이터는 전 세계 교역관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므로, 다른 여타 교역 데이터에 비해 시의성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본 분석에서 사용된 데이터도 2011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본 절에서는 설명 편의상 7개국 1개 산업으로 국가와 산업을 재분류한 세계 투입산출표를 중심으로 세계 투입산출표의 구조 및 분석 방법론을 설명한다. 101) 전술한 바와 같이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40개 국가와 나머지로 지

⁹⁸⁾ 구체적인 세계 투입산출표와 본 연구의 산업 분류 비교는 부록 참고.

⁹⁹⁾ 분석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부록 참고.

¹⁰⁰⁾ 자료 출처는 http://www.wiod.org/home(검색일: 2016. 10. 1)이다.

¹⁰¹⁾ 최종재 역시 중간재와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구분되어 공급되지만, 지면의 한계상 [표 4-3]에서는 최 종재 수요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 절에서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세계 투입산출표 구 조를 설명하였다.

역 분류를 하고 있으며, 35개 산업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나, 세계무역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브렉시트와 관련이 깊은 국가 위주의 거시경제 차원의 교역관계를 보기 위하여 한국, 영국, EU(영국 제외), 미국, 중국, 일본, 나머지 국가 등 7개로 분류하고 산업은 35개의 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표 4-2]에 제시되어 있다.

[표 4-2]는 각국의 총산출이 국내와 외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간재 및 최종재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표 4-2]를 보다 일반적인 행렬형태로 표시하면 [표 4-3]과 같이 쓸 수 있다. [표 4-2]와 [표 4-3]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셀은 각각 국내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내 중간재 공급을 나타내며, 그 밖의 행렬은 타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중간재 공급을 나타내다.102)

표 4-2. 세계 투입산출표 구조(7개 지역, 1개 산업)

(단위: 백만 달러)

								(11)	1· 팩근 크니)
구분			최종재	총산출 (=중간재+ 최종재)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1)	RoW	전 세계	전 세계
한국	1,349,528	4,848	31,769	131,802	41,526	54,059	161,565	1,102,254	2,877,351
영국	4,583	1,666,626	57,075	16,714	5,803	246,934	142,621	2,278,752	4,419,108
미국	41,752	61,943	10,306,379	138,071	49,346	286,342	700,134	15,334,153	26,918,120
중국	80,251	26,119	195,324	13,407,504	86,789	222,672	527,362	7,725,003	22,271,025
일본	44,766	7,736	56,260	135,814	4,840,986	46,670	302,923	5,898,258	11,333,413
EU (-1)	34,589	192,470	247,839	197,191	31,545	12,716,559	1,211,359	14,587,249	29,218,801
RoW	237,124	123,769	862,293	856,981	381,202	1,071,206	18,850,582	22,346,908	44,730,065

자료: WIOD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¹⁰²⁾ 예를 들어, [표 4-3]에서 $X_{\dot{v}\bar{\tau},\dot{v}\bar{\tau}\dot{\tau}}$ 는 한국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한국에서 소비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표 4-2]에서 살펴보면 그 금액이 1조 3,495억 달러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표 4-3]에서 $X_{\dot{v}\bar{\tau},g\bar{\tau}}$ 은 한국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영국에서 소비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표 4-2]에서 살펴보면, 그 금액이 48억 달러임을 알 수 있다.

표 4-3. 세계 투입산출표 구조(7개 지역, 1개 산업)

구분			최종재	총산출 (=중간재+ 최종재)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1)	RoW	전 세계	전 세계
한국	X _{한국,한국}	X _{한국,영국}	X _{한국,미국}	X _{한국,중국}	X _{한국,일본}	X한국,EU(-1)	X한국,RoW	Y한국,전세계	X한국
영국	X _{영국,한국}	$X_{gq,gq}$	X _{영국,미국}	$X_{GT,ST}$	X _{영국,일본}	X _{영국,EU(-1)}	X _{영국,RoW}	Y _{g국, 전세계}	X _{영국}
미국	X _{미국,한국}	$X_{nlq, glq}$	X _{OFT,OFT}	$X_{nlq, gq}$	X _{IIT} , <u>9</u> Ł	X _{0 号,EU(-1)}	X _{0居,RoW}	Y _{U국, 전세계}	Xora
중국	X _{중국,한국}	X _{중국,영국}	X _{중국,미국}	$X_{\overline{S}\overline{A},\overline{S}\overline{A}}$	X _{중국,일본}	X _{중국,EU(-1)}	X _{중국,RoW}	Y _{중국,전세계}	X _{중국}
일본	X _{일본,한국}	X _{일본,영국}	X _{일본,미국}	X _{일본,중국}	X _{일본, 일본}	X일본,EU(-1)	X _{일본,RoW}	Y _{일본,전세계}	X _{일본}
EU (-1)	X _{EU(-1),한국}	X _{EU(-1),} 영국	X _{EU(-1),미국}	X _{EU(-1),중국}	X _{EU(-1),일본}	X _{EU(-1),EU(-1)}	X _{EU(-1),RoW}	Y _{EU(-1),} 전세계	X _{EU(-1)}
RoW	X _{RoW,한국}	X _{RoW,영국}	X _{RoW,□ 국}	X _{RoW,중국}	X _{RoW,일본}	X _{RoW,EU(-1)}	X _{RoW,RoW}	Y _{RoW,전세계}	X_{RoW}

자료: WIOD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최종재의 경우 [표 4-3]에서 Y로 표시하였다. 중간재와 달리 최종재는 최종 수요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 또는 소비가 다른 재화의 생산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Y한국, 전 세계는 한국에서 생산된 최종재가 영국, EU(영국 제외),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수요된 것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이다. 총산출의 경우 [표 4-3]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열로 X로 표시되며, 중간재 수요와 최종재 수요의 합인 것을 알 수 있다. 103)

다. 브렉시트 파급경로 분석 결과

1) 국가별 국내 부가가치 비중의 특징

앞의 '나'절에서는 세계 투입산출표의 구조를 설명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투 입산출표를 이용하여 국가별 국내 부가가치 비중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절의

¹⁰³⁾ 예를 들어, $[\pm 4-3]$ 에 나타난 $X_{한국}$ 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간재와 최종재 수요의 합을 알 수 있는 총산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은 7개 지역, 1개 산업 분류하에서의 부가가치 비중행렬 [표 4-4]와 같이 분석되었다.104)

부가가치 비중행렬로 살펴본 전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국가 에서 자국의 생산에서 자국의 부가가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자국 경제 생산의 대부분이 자국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전체 부가가치 생산의 약 85%가 영국 국내에 서 창출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91.5%와 90.9%의 높은 국내 부가 가치 기여율을 보이고 있다. 영국을 제외한 EU의 경우 약 88.8% 정도의 국내 부가가치 기여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국내 부가가치 기여율은 약 83.7% 정 도이다. 한국의 경우 국내 부가가치 기여율이 약 71.2% 정도로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낮은 국내 부가 가치 기여도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한 가지 원인으로는 한 국의 적극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을 들고 있다. 한국의 다른 국가들과의 교 역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보인다. 우선, 세 분야 모두에 있어 한국은 중 국과의 교역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대부분의 지역 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 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중국의 부가가치 기여율이 약 4.8% 로 미국, 일본, EU(영국 제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 면에 영국의 경우 한국의 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이 약 0.4%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 국내 부가가치 비중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표 4-4]에 제시된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약 85% 정도로 기타 EU 국가나, 미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른 국가와의 교역관계 측면에서 보면 영국은 EU와의 경제적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경제에 있어 나머지 EU 국가들이 차지하는 기여비중은 약 6.5%로 나

¹⁰⁴⁾ 자세한 부가가치 행렬의 도출과정은 보고서 마지막의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타났다. 특히 EU의 기여는 기타 세계(RoW)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EU는 영국에 중요한 교역상대임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영국의 교역관계에 대하여 [표 4-4]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양국은 직접적인 교역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이 영국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것과 반대로 영국이 한국 부가가 치 창출에 기여한 부분이 각각 0.4%와 0.2%로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중요성이 낮다. 다만, 본 장의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간접적인 영향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이어지는 소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4-4. 부가가치 비중행렬(7개 지역, 1개 산업)

VAS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1)	RoW
한국	0.712	0.002	0.002	0.011	0.005	0.003	0.005
영국	0.004	0.850	0.003	0.003	0.001	0.013	0.005
미국	0.031	0.023	0.915	0.018	0.009	0.018	0.026
중국	0.048	0.010	0.011	0.837	0.013	0.013	0.018
일본	0.029	0.004	0.004	0.016	0.909	0.004	0.011
EU (-1)	0.029	0.065	0.016	0.025	0.008	0.888	0.043
RoW	0.147	0.047	0.049	0.091	0.055	0.061	0.890

자료: WIOD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 국내 부가가치 비중으로 살펴본 한-영 교역관계

본 절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전 국내 생산을 Q_A 라고 표기하였다. 영국 이 브렉시트로 인해 전 산업 생산이 $\alpha\%$ 감소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브렉시트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누어 도출하고

자 한다.105) 이 절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직접효과는 영국의 생산 감소로 인해 한국에서 영국으로의 직접적인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를의미하며, 간접효과는 타국에서 영국으로의 수출감소로 인하여 유발된 한국에서 타국으로의 수출감소를 의미하다.

가) 직접효과

[표 4-4]에 제시된 한국이 영국의 생산에 기여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약 0.2%로 주지한 바와 같이 매우 작은 편이며, 영국의 각 산업별 생산이 $\alpha\%$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영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표 4-5]와 [표 4-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직접효과로 인한 한국의 대영국 수출 은 $Q_4 \times \alpha\% \times 0.2\%$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4-5. 산업별 영국	생산 변화	
	브렉시트 전	→	브렉시트 후
영국의 생산	QA		QA×(100%-3%)

주: $Q_{\!\scriptscriptstyle A}$ 은 브렉시트 이전 국내 생산임.

자료: 저자 작성.

丑 4-6.	직접효과로	인한	한국의	대영국	수출	변화
--------	-------	----	-----	-----	----	----

	브렉시트 전	브렉시트 후	대영국 수출 변화
	(a)	→ (b)	(b) - (a)
한국의 대영국 수출	QA×0.2%	QA×(100%-α%) ×0.2%	QA×(-α%)×0.2%

주: $Q_{\!\scriptscriptstyle A}$ 브렉시트 이전 국내 생산임.

¹⁰⁵⁾ 생산이 α % 감소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실제로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생산 감소는 별도의 분석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연구자의 가정과 모형에 따라 다양한 경제적 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 HM Government(2016a)는 장기에 약 3.4~9.5% GDP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OECD(2016)의 경우 장기에 약 2.7~7.7% GDP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나) 간접효과

브렉시트의 간접효과로 인한 한국의 수출감소는 미국을 예로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mathbf{H} 4-4]$ 의 부가가치 기여율 표에 따르면 미국이 영국의 생산에 기여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3%이다. 따라서 직접효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각 산업별 생산이 $\alpha\%$ 감소할 경우 미국의 대영국 수출은 $[\mathbf{H} 4-7]$ 에서와 같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미국의 대영국 수출감소는 미국의 국내 생산감소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한국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06)

한국은 미국의 생산에 기여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0.2%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영국 수출감소는 한국의 대미국 수출감소에 $[\mathbf{H} \mathbf{4} - \mathbf{8}]$ 에서와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브렉시트 이전의 생산을 기준으로 $((Q_4 \times a\% \times 2.3\%)/91.5\%) \times 0.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7. 미국의 대영국 수출 변화								
	브렉시트 전 (a)	→ 브렉시트 후 (b)	미국의 대영국 수출 변화 (b) - (a)					
미국의 대영국 수출	QA×2.3%	QA×(100%-α%) ×2.3%	QA×(-α%)×2.3%					

주: Q_A 은 브렉시트 이전 국내 생산임.

자료: 저자 작성.

표 4-8. 간접효과로 인한 한국의 대미국 수	수출 변화
---------------------------	-------

	브렉시트로 인한	브렉시트로 인한
	미국의 생산 변화	한국의 대미국 수출 변화
간접효과	(QA×(-α%)×2.3%)/91.5%	((QA×(-\alpha\%)×2.3\%)/91.5\%)×0.2\%

주: Q_4 은 브렉시트 이전 국내 생산임.

¹⁰⁶⁾ 본 장에서의 수출은 부가가치 기준 수출이므로 수출감소로 인한 국내 생산감소를 추정하기 위해 부가 가치 기준 수출감소분을 미국 자신의 부가가치 비중인 91.5%로 나누어준다.

다) 브렉시트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107)

앞에서 제시한 브렉시트로 인한 직간접적인 한국의 수출감소 효과를 종합하면 [표 4-9]와 [표 4-10]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간접효과가 직접효과의 약 34.4%로 추정되었다. 다시 말해, 영국에서 브렉시트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고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100 감소한다고 했을 때, 간접효과를 통해 약 34.4만큼의 추가적인 수출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제조업의 경우 간접효과가 직접효과의 약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 제조업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낮고, 미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와 생산 연계관계가높은 국가들과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과 EU의 교역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영국은 EU에 대한 제조업 의존도가 높으므로 이러한 가접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브렉시트로 인한 한국의 수출 변화

	직접효과	간접효과							
	대영국	대미국	대중국	대일본	대일본 대EU(-1)				
수출변화	QA×(-α%) ×0.2%	((QA×(-\alpha\%)× 2.3%) /91.5%) ×0.2%	((QA×(-α%) ×1.0%) /83.7%) ×1.1%	((QA×(-α%) ×0.4%) /90.9%) ×0.5%	((QA×(-\alpha\%) ×6.5%) /88.8%) ×0.3%	((QA×(-α%) ×4.7%) /89.0%) ×0.5%			

주: Q_4 은 브렉시트 이전 국내 생산임.

¹⁰⁷⁾ 한 국가(A국)의 국내 생산감소는 교역 상대국(B국)의 대A국 수출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B국의 생산을 감소시켜 A국의 대B국 수출 및 추가적인 A국 국내 생산 감소라는 연쇄 순환 파급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연쇄효과는 한 번의 생산 순환구조 이상을 넘어가면 영향이 매우 미미해지는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표 4-10. 한국 수출 변화의 직접효과 대비 간접효과 비중

직접효과					간접효과		
대영국 수출 변화 (1단위 변화시) (a)	대미국 수출 변화 (b)	대중국 수출 변화 (c)	대일본 수출 변화 (d)	대EU (-1) 수출 변화 (e)	대기타 국가 수출 변화 (f)	직접효과 대비 간접효과 비중(%) $ \left(= \frac{(b) + (c) + (d) + (e) + (f)}{(a)} \times 100 \right) $	
⊿1	⊿0.005	⊿0.013	⊿0.002	⊿0.022	⊿0.026	34.4%	

주: 1) 직접효과 대비 간접효과 비중의 의미는 직접효과로 한국의 수출이 1 변화했을 때 간접효과로서 여타 국가를 통한 한국 수출 변화는 0.344(즉, 34.4%)임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2.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 분석

가. 한국과 EU 및 영국의 교역 현황

1) EU 및 영국과의 무역 현황

가) 총교역 추이

한국과 EU의 총교역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완연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추가적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의 EU 지역에 대한 수출입액은 지난 2011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4년에는 1,100억 달러도 넘어선 이후 2015년 현재 1,000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보면, EU 지역이 차지하는 교역비중은 2000년대 초반 약 13% 수준에서 2012년 9.3%까지 하락 추세를 보인 이후 다시 높아지면서 2015년 현재는 약 11%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EU가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²⁾ Q_4 은 브렉시트 이전 국내 생산임.

(2015년 기준 23.6%)이나 미국(11.8%)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10%대의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EU가 우리나라 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여전히 작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우리나라와 EU의 총교역량이 2000~15년 중 약 6.5%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 증가율(7.3%)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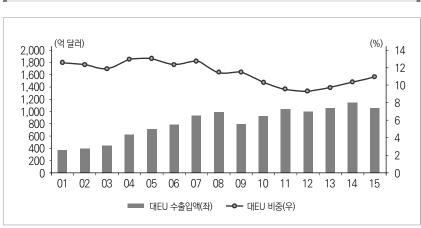


그림 4-2. 한국·EU 간 총교역액과 한국의 총수출입액 대비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10. 19).

현재 EU 회원국인 영국에 대한 수출입액은 2007년에 1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2015년 현재 135억 달러 수준까지 늘어난 모습이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2%대에서 꾸준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1년에는 0.8%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하면서 2015년 현재는 1%대 초반의 미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EU 교역에서 영국이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EU 교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 회원국들 가운데 우리나라와 가장 많이 교역하고 있는 국가들

로는 2015년도 기준 독일(25.8%), 영국(12.8%), 그리고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 순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영국의 교역량은 2000~15년에 연평균 약 3.6%의 증가율로서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 증가율(7.3%)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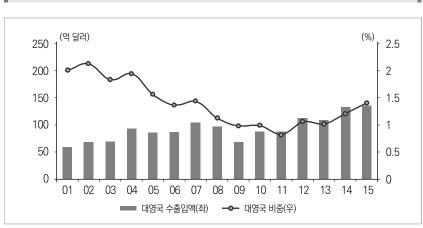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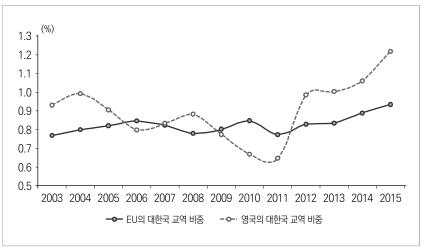


그림 4-3. 한국 · 영국 간 총교역액과 한국의 총수출입액 대비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10. 19).

EU와 영국 입장에서 보면, 대한국 교역 비중은 1% 내외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나, 2011년 이후에 완연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말할 수있다. 우선 EU의 전체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치는 0%대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EU가 차지하는 위상(2015년 10.9%)과는 극히 대조적인 모습이나, 2012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높아져 2015년 현재 0.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의 교역비중이 2003년 이후로 계속 낮아져 2010년에는 0.6%대까지 떨어졌지만, 2013년에 다시 1%선을 회복하면서 2015년 현재 1.2% 수준까지 높아진 모습을 보이며, 앞서 우리나라 총교역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한 수준 (2015년 1.4%)까지 빠르게 높아진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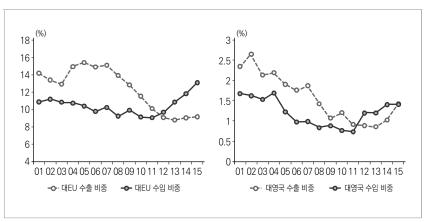
그림 4-4. EU와 영국의 대한국 교역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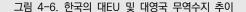
나) 수출입 비중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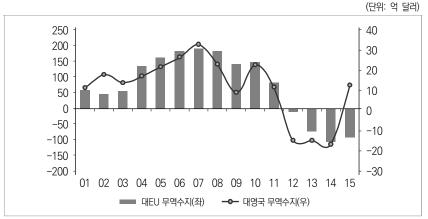
EU와 영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의 상대적 크기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대EU 및 대영국 수출비중이, 2012년부터는 수입비중이 각각상대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EU 수출비중은 2011년까지 10%를 웃돌면서 수입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던 데 반해, 2012년부터는 10%이하로 떨어지면서 수입비중과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영국 수출도 2011년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부터는 역전되어 수입비중이 수출비중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2015년에는 수출입 비중이 서로 같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5. 한국의 대EU 및 대영국 수출입 비중 추이



이와 같은 수출입 비중의 상대적 크기 변화는 무역수지 흐름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하는바, 수출입 비중의 크기가 역전된 시점에서 무역적자로의 전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EU 및 대영국 무역수지는 2000년대 들어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오다, 2011년 이후에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수출 우위 구조에서 수입 우위 구조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특히 2011년 유럽 지역의 재정위기 여파가 내수침체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EU 및 대영국 수출의 급감을 초래하고, 이는 곧 무역적자의 단초가 된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5년에는 대EU 무역수지가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대영국 무역수지는 흑자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흑자 전환은 선박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급증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무역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해 보인다.





다) 주요 품목별 교역 구성비

대EU 및 대영국 교역의 주요 품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최근년도(2013~15년) 기준으로 화학제품과 기계장비, 운송장비, 특히 자동차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에 대EU 교역에서는 약 10%대 비중에서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영국 교역에서는 2000년대 초반 한 자릿수에서 최근년도 기준 10%대 중반까지 현저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2000년대 초반 비교적 많은 교역이 이루어진 전기ㆍ전 자기기는 그 비중이 점차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한 자릿수(8.8%)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계ㆍ장비 산업도 2000년대 초반약 20%대 비중에서 최근년도에는 10%대로 현저한 하락세를 보이고, 섬유류도 교역비중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지만, 꾸준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1차금속제품은 교역비중이 한 자릿수에서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정 밀기기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체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학제품의 경우에도 10%대 교역비중을 유지하면서 교역활동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4-11. 한국·EU 및 한국·영국 간 주요 품목별 교역 구성비 추이

(단위: %, %p)

		하국	. EI I		한국 · 영국				
		인국							
구분	2001~ 03년 (A)	2007~ 09년	2013~ 15년 (B)	변화분 (B-A)	2001~ 03년 (C)	2007~ 09년	2013~ 15년 (D)	변화분 (D-C)	
농림어업	0.8	0.9	1.5	0.7	0.2	0.1	0.3	0.0	
광 업	0.1	0.1	0.1	0.0	0.1	0.2	0.0	-0.1	
음식료 · 담배	1.8	1.1	1.4	-0.4	5.1	3.2	2.3	-2.7	
섬유 · 가죽제품	6.9	2.9	3.8	-3.1	6.0	2.2	2.2	-3.8	
목재 · 종이 · 인쇄	1.2	0.8	0.8	-0.4	1.4	1.3	0.8	-0.6	
석탄 · 석유제품	0.4	3.1	7.0	6.7	0.5	0.9	18.8	18.3	
화학제품	12.2	11.1	14.3	2.1	10.1	12.3	10.7	0.6	
비금속광물	1.1	0.7	0.6	-0.5	0.7	0.6	0.7	0.0	
1차금속제품	3.8	6.5	6.2	2.5	3.4	8.8	5.4	2.0	
금속제품	0.9	0.8	0.9	0.0	0.6	0.4	0.5	-0.2	
기계 · 장비	22.6	18.3	18.4	-4.1	24.2	16.5	15.9	-8.2	
전기 · 전자기기	21.0	19.8	12.7	-8.3	21.5	23.2	8.8	-12.7	
컴 퓨 터	6.1	1.1	0.7	-5.3	7.1	0.7	0.9	-6.2	
반 도 체	5.9	3.0	2.0	-3.9	4.6	1.5	0.5	-4.1	
디스플레이	0.5	0.0	0.0	-0.4	1.0	0.1	0.0	-0.9	
정밀기기	4.7	8.5	6.7	2.0	4.0	4.5	3.8	-0.3	
운송장비	19.4	23.6	23.2	3.8	13.3	20.6	26.5	13.2	
자 동 차	10.8	11.3	14.9	4.1	8.5	8.6	16.2	7.6	
자동차 본체	9.2	8.1	10.9	1.7	7.4	7.1	14.8	7.3	
자동차 부품	1.6	3.2	4.0	2.4	1.1	1.5	1.4	0.3	
기타제조	3.2	1.8	2.3	-0.9	8.9	5.2	3.3	-5.6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10. 19).

EU와 영국에 대한 주요 품목별 수출 구성을 살펴보면, 교역비 구성에서 나타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전기 · 전자기기와 운송장비 수출이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전기 · 전자기기는 대EU 수출 비중이 최근년도 기준 약 16%

대로 총교역 기준(12.7%)보다 높은 수준이고, 대영국 수출도 약 12%대 비중을 차지하면서 총교역 기준(8.8%)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운송 장비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대EU 수출에서는 약 30%대 비중 (총교역 기준 23.2%)을 차지하고, 대영국 수출에서는 약 44.4% 비중(총교역 기준 26.5%)을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산업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총교역 기준으로 10%대 비중을 차지한 화학제품은 대EU 수출에서 10%대 비중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영국 수출에서는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화학제품이 대영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함을 알수 있다.

표 4-12. 한국·EU 및 한국·영국 간 주요 품목별 수출 구성비 추이

(단위: %, %p)

			한국	· EU		한국 · 영국				
	구분	2001~ 03년 (A)	2007~ 09년	2013~ 15년 (B)	변화분 (B-A)	2001~ 03년 (C)	2007~ 09년	2013~ 15년 (D)	변화분 (D-C)	
	농림어업	0.2	0.2	0.2	0.0	0.0	0.1	0.1	0.1	
	광 업	0.0	0.1	0.0	0.0	0.0	0.1	0.0	0.0	
9	음식료 · 담배	0.3	0.1	0.3	0.0	0.2	0.2	0.4	0.3	
섣	l유 · 가죽제품	7.0	2.2	3.2	-3.8	7.4	2.3	3.2	-4.2	
목	재 · 종이 · 인쇄	0.2	0.2	0.3	0.1	0.4	0.5	0.7	0.2	
스	l탄·석유제품	0.3	4.4	5.4	5.2	0.3	1.4	3.1	2.7	
	화학제품	6.6	6.4	12.3	5.7	5.5	6.5	8.5	3.0	
	비금속광물	0.5	0.2	0.3	-0.1	0.4	0.3	0.4	-0.1	
	1차금속제품	2.3	4.8	6.3	4.0	2.0	4.1	4.1	2.1	
	금속제품	0.9	0.8	1.1	0.3	0.7	0.5	0.6	-0.1	
	기계·장비	23.1	11.7	13.2	-9.9	31.1	14.6	17.8	-13.3	
전	[기 · 전자기기	25.9	24.8	16.1	-9.8	28.7	31.3	12.3	-16.4	
	컴 퓨 터	9.5	1.1	0.9	-8.7	11.3	0.7	0.9	-10.3	
	반 도 체	6.1	2.7	1.9	-4.2	6.1	1.2	0.7	-5.4	
	디스플레이	0.7	0.0	0.0	-0.7	1.5	0.0	0.0	-1.5	

		한국 · EU				한국 · 영국			
구분	2001~ 03년 (A)	2007~ 09년	2013~ 15년 (B)	변화분 (B-A)	2001~ 03년 (C)	2007~ 09년	2013~ 15년 (D)	변화분 (D-C)	
정밀기기	1.8	9.7	7.3	5.4	1.6	3.0	1.5	-0.1	
운송 장비	29.3	33.4	32.3	2.9	19.3	30.1	44.4	25.1	
자 동 차	15.5	13.9	17.7	2.2	12.6	11.9	25.1	12.5	
자동차 본체	14.3	10.3	11.1	-3.2	12.0	10.0	22.5	10.5	
자동차 부품	1.2	3.7	6.6	5.5	0.6	1.9	2.6	2.0	
기타제조	1.6	1.0	1.6	0.0	2.3	5.0	3.0	0.6	

2) 한 · EU FTA 수출 활용 현황

본 절에서는 2011년 한 · EU FTA 체결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대EU 교역을 통해 어떠한 수혜를 받고 있으며, EU 내 어떤 회원국 또는 어떤 업종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한다. 특히 아직까지는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영국과의 교역에서 FTA 활용도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업종들을 중심으로 FTA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한 · EU FTA 수출 활용률은 2015년도 현재 약 85%대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이 한 · EU FTA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FTA 수출 활용률은 FTA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액대비 상대국에서 실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수출액 비율로 산출되며, 동 수치가 높다는 것은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받음을 의미한다. 한 · EU FTA의 경우에 수출 활용률이 한 · EU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된 2011년 중 65.7%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 81.4%로 80%선

을 처음 넘어선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여타 FTA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 체결 FTA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협정들로는 EU에 이어서 페루(83.6%). 칠레(80.7%). EFTA(80.4%) 등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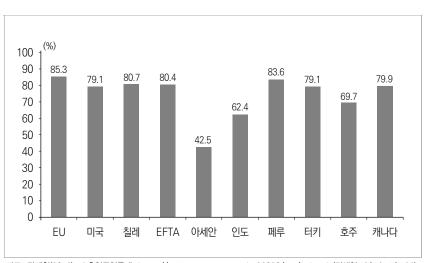


그림 4-7. 한국의 기 체결 FTA 협정별 수출 활용률(2015년 기준)

자료: 관세청(2016),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index.do(검색일: 2016. 10. 26).

한 · EU FTA의 경우에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계류와 플라스틱류 제품을 비롯해 섬유류와 전자전기제품 등에서 FTA 수출 활용률이 80%를 웃돌아 FTA 관세인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 · EU FTA 발효 1차년도만 해도 기계류와 플라스틱류 제품에서만 FTA 수출 활용률이 약 85% 수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이후 전 분야에 걸쳐 활용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FTA 활용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생활용품과 잡제품, 철강금속제품 등은 아직까지도 80%선을 밑돌면서 FTA 수출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한·EU FTA 발효 이후 주요 품목별 수출 활용률 추이(MTI 1단위 기준)

(단위: %, %p)

구분	발효 1년 차 ('11.7~ '12.6) [A]	발효 2년 차 ('12.7~ '13.6)	발효 3년 차 ('13.7~ '14.6)	발효 4년 차 ('14.7~ '15.6)	발효 5년 차 ('15.7~ '16.6) [B]	변 화 분 [B - A]
농림수산물	45.8	50.6	60.4	77.1	70.4	24.6
광 산 물	77.8	88.2	76.3	78.3	78.9	1.1
화학공업제품	77.7	77.4	75.6	79.8	80.3	2.6
플라스틱류 제품	85.0	89.1	92.2	91.9	88.6	3.6
섬 유 류	78.5	86.2	87.9	87.9	85.8	7.3
생활용품	59.0	75.9	79.6	72.0	76.2	17.2
철강금속제품	62.8	63.8	74.7	75.4	76.1	13.3
기 계 류	85.7	90.5	90.5	89.3	89.8	4.1
전자전기제품	70.0	76.1	79.4	80.9	82.8	12.8
잡 제 품	58.6	59.4	76.6	74.7	74.6	16.0

자료: 진병진(2016, p. 88)의 표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및 산출.

EU 내 주요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체코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순서로 FTA 수출 활용도가 많은 반면,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수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체코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한 · EU FTA 발효 1차년도부터 FTA 수출 활용도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는 수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앞서 영국이 EU 회원국들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가장 많이 교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낮은 FTA 수출 활용도는 우리나라가 대영국 수출에 있어서 FTA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 많아 수출 확대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며,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품목들이 FTA 혜택을 받고 있는지 세부 통계를 이용하여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14. 한·EU FTA 발효 이후 EU 회원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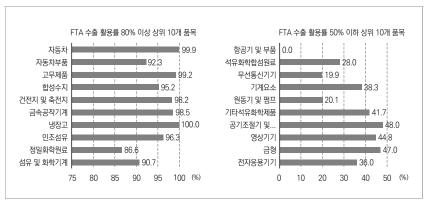
(단위: %, %p)

국가	발효 1년 차(A)	발효 2년 차	발효 3년 차	발효 4년 차(B)	변화분(B-A)
독 일	81	88	87	87	6
영 국	73	83	82	81	8
네덜란드	89	90	94	92	3
슬로바키아	85	85	87	89	4
폴란드	85	88	88	86	1
이탈리아	92	96	95	93	1
프랑스	76	76	79	81	5
벨기에	75	83	85	83	8
스페인	83	84	85	88	5
체코공화국	96	89	91	96	0
몰 타	84	86	82	82	-2
슬로베니아	87	87	88	88	1
헝가리	81	76	76	83	2
덴마크	73	77	79	85	12
그리스	77	85	88	88	11

자료: 권민경(2015, p. 56)의 표를 활용하여 저자 재구성 및 산출.

우리나라의 영국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들을 대상으로 FTA 수출 활용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냉장고에 이어 자동차와 고무제품 등 순서로 FTA 수출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부품을 비롯해서 고무제품, 합성수지, 건전지 및 축전지, 금속기계, 인조섬유 등도 90%를 웃도는 비교적 높은 수출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영국에 수출하기 위해 KITE 마크 (영국의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를 사전 획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품질경쟁력은 물론이고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영국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EU 시장 탈퇴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한 · 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도 없어질 것이므로 영국과의 FTA가 체결되지 않는 한, 대영국 수출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4-8. 한국의 대영국 주요 품목별 FTA 수출 활용률(4년 차 기준)



자료: 권민경(2015), p. 71.

3) EU의 대한국 수입 관세율

현재 영국을 비롯한 EU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은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로(0) 수준으로 한 · 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가 대다수 품목에서 확산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한 · EU FTA 발효 초기 시점인 2012년에도 음식료 · 담배와 자동차를 제외한 대다수 품목들이 0%대의 관세율이 부과되어 있었지만, 2015년에는 자동차도 0%대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음식료 · 담배만이 관세 부과 품목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음식료 · 담배 관세율도 매년 1%씩 낮아지고 있어 머지않아 0%대 관세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영국이 FTA 비체결국에 부과하고 있는 주요 품목별 관세율을 보면, 음식료 · 담배를 비롯해서 자동차, 섬유가죽제품, 화학제품 등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본체에 약 8%대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섬유가죽제품에는 약 6%대 관세율이, 그리고 비금속광물과 전기전자제품에약 3%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대영국 수출에서 자동차업종에서 FTA 활용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관세율은

브렉시트로 영국의 EU 시장 탈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관세인하 효과가 소멸 되면서 가격경쟁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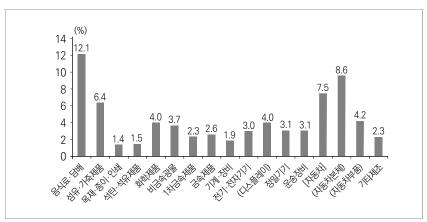
표 4-15. EU의 대한국 주요 품목별 수입 관세율

(단위: %)

					(=11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농림어업	0.7	0.5	0.3	0.2
	광 업	0.0	0.0	0.0	0.0
5	음식료·담배	4.6	3.5	2.5	1.5
섬	유·가 죽 제품	0.1	0.1	0.0	0.0
목자	ㅐ·종이 · 인쇄	0.2	0.1	0.1	0.0
석	탄 · 석유제품	0.1	0.0	0.0	0.0
	화학제품	0.1	0.1	0.0	0.0
	비금속광물	0.3	0.2	0.1	0.0
•	차금속제품	0.0	0.0	0.0	0.0
	금속제품	0.1	0.1	0.0	0.0
	기계·장비	0.1	0.1	0.0	0.0
전	기 · 전자기기	0.4	0.3	0.2	0.1
	정밀기기	0.0	0.0	0.0	0.0
	운송장비	0.7	0.5	0.3	0.1
	자 동 차	3.1	2.0	1.2	0.4
	자동차본체	3.8	2.4	1.5	0.5
	자동차부품	1.2	0.7	0.3	0.0
	기타제조	0.1	0.0	0.0	0.0

자료: WTO Tariff Download Facility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http://tariffdata.wto.org(검색일: 2016. 10. 28).

그림 4-9. 영국의 주요 품목별 기준관세율(2015년 기준)



자료: WTO Tariff Download Facility를 이용하여 저자 산출, http://tariffdata.wto.org(검색일: 2016. 10. 28).

나. 실증분석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우리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중에서 대EU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 중심으로 산업별 수출함수 추정을 통해 브렉시트가 한국경제, 특히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분석모형의 설정 및 자료

수출함수 추정에 대한 연구들은 현재까지도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수출함수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탄력성, 108)소득지출, 통화적 접근방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바, 가장 보편적인 접근방법은 탄력성 접근을 통한 수출함수 추정으로, 이는 Goldstein and Kahn(1978, 1985)109)의 불완전대체모형(Imperfect Substitute Model)에 기반하여 전

¹⁰⁸⁾ 탄력성(elasticity)은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설명변수의 변화율로 나눈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¹⁰⁹⁾ Goldstein and Khan(1978), pp. 275-286; Goldstein and Khan(1985), pp. 1041-1105.

통적인 상품의 수요공급 측면을 수출과 수입으로 확장 및 분석하고자 시도된 접근법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소득, 가격, 환율 등 다양한 변수들의 탄력성들을 구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소득 또는 가격,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수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탄력성의 크기가 주요 분석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접근방법을 사용한 국내 연구들로는 한영기 외(1996),110)이재열, 한희준(2001),111) 윤성훈(2005),112)이재랑, 이병창(2005),113) 김용복, 곽법준(2009)114)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탄력성 접근법을 이용하여 수출함수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브 렉시트가 한국의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설정한 모형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여러 변수들 중 설명력이 검증되고, EU 및 영국의 수출 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상대국의 경기 및 소득 요인과 가격 요인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들을 대상으로 구축하였다. 즉,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브렉시트가 수출에 미친 영향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설명변수들 위주로 선정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입수요 측면에서 교역상대국의 GDP, 가격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교역상대국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상대가격, 환율 요인으로 원/달러 명목한율, 그리고 정책 요인으로서 교역상대국과의 FTA 협정 체결 여부와 우리나라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FDI 금액을 최종 변수들로 선택하였다. 교역상대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영국 수출비중이 워낙 미미하여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영국 수출보다는 대EU 수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분기별 시계열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환율과 각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실질 GDP(달러화 기준) 등은 IMF의 IFS(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World Bank, OECD, Datastream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수출단가지수는 한국은행 ECOS 자료를 이용하고, 해외직접투자(FDI)

¹¹⁰⁾ 한영기 외(1996).

¹¹¹⁾ 이재열, 한희준(2001).

¹¹²⁾ 윤성훈(2005).

¹¹³⁾ 이재랑, 이병창(2005), pp. 110~153.

¹¹⁴⁾ 김용복, 곽법준(2009).

는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를, 마지막으로 수출은 관세청의 수출입무역 통계를 이용하였다. 실증 분석에 앞서 수출 자료는 산업 구분을 위하여 HS Code 2단위로 자료를 수집하여 산업 레벨로 집계하여 분석을 수행¹¹⁵⁾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앞서의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대EU 및 대영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인 자동차, 화학, 전기 및 전자제품, 1차금속, 섬유 및 가죽제품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에 앞서 자료의 안정성(stability)과 장기균형관계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먼저 ADF 단위근 검정법을 사용하여 단위근의 존재유무를 실시하였다. [표 4-16]을 보면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된 대부분 변수들이 단위근(unit root)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대영국 수출에서 1차금속만 수준변수가 유의수준 1% 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I(0)이며,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유의수준 10% 하에서 불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차 차분변수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므로 모든 시계열들이 I(2)를 포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16.	ADF	단위근	검정	결과

				(a) 수준변-	}				
		[내EU 수출	<u> </u>		대영국 수출				
구분	자동차	화학	전기 전자	1차 금속	섬유 가 죽	자동차	화학	전기 전자	1차 금속	섬유 가 죽
X	-2.459	-0.916	-1.425	-2.171	-1.712	-2.169 -1.833 -1.599 -3.713 _{***} -2.48				
GDP			-1.817			0.033				
REX			-0.852			-1.981				
OIL					-1.	.837				

¹¹⁵⁾ 품목(HS Code 2단위)에서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수출단가 데이터 이용문제, 변수의 증가로 인한 회 귀분석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산업 레벨로 집계하여 분석을 실시함(HS코드 2단위와 산업분류 연계표는 이 글의 [부록 표 3-3]을 참고).

				/I-	\ =1HH.						
				۵)) 차분변=	r					
		I	내EU 수출	<u> </u>		대영국 수출					
구분	TICTI	취공	전기	1차	섬유	TIEFI	취공	전기	1차	섬유	
	자동차	화학	전자	금속	가죽	자동차	화학	전자	금속	가죽	
- V	-9.077	-5.371	-6.488	-4.877	-5.676	-9.781	-6.909	-8.352	-9.832	-6.937	
X	***	***	***	***	***	*** *** *** ***					
GDP		_	11.550**	**		-5.132***					
REX			-4.921			-6.596***					
OIL					-4.32	27***					

주: 귀무가설의 기각은 MacKinnon(1996)¹¹⁶⁾ 임계치를 사용함(***는 1% 유의수준을 의미). 자료: 저자 계산.

다음으로, 우리나라 수출과 설명변수들 간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검정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단위근을 갖고 있는 비정상적 시계열로 구성된 선형결합이 정상성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공통의 확률적 추세를 가지면서 장기균형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상성을 만족하지 않는 선형결합에 대한 회귀분석은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로 인하여 추정량이 일치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잘못된 추론을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과 함께 주요 설명변수들인 GDP, 상대가격, 환율, 국제유가 등이 대부분 단위근을 갖기 때문에 이들 변수 사이에 공통의 확률적 추세가 존재하는지를 패널 공적분 검정을 통해 판단해 보아야 한다. 만약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최소한한 방향으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기존 문헌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공적분 검정방법은 요한센 피셔 (Johansen Fisher) 패널 공적분 검정이나 Engle-Granger, Phillips-Ouliaris 검정법으로, 이들 검정법은 기본적으로 공적분 검정의 p값(p-value)에 기초한 검정법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Pesaran, Shin and Smith(2001)117)가

¹¹⁶⁾ MacKinnon(1996), pp. 601-618.

제시한 임계치 검정(Bounds Test)을 이용하여 공적분 검정을 실시해 보고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임계치 검정 기법이 Engle and Granger(1987), 118) Johansen and Juselius(1990)119) 등 다른 공적분 검정방법에 우월한 점은 관측치가 적은 경우에 적합하여 다른 공적분 방법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며, 고려변수에 I(2) 차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않다면 변수들의 적분 차수가 I(0)와 I(1)가 혼합된 경우에도 OLS로 간단히 추정 가능한 점이다.

따라서 모든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 변수들 사이의 공적분 관계를 검정한 임계치 검정 결과, [표 4-17]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대EU 및 대영국 수출함수에 고려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10% 유의수준에서 공적분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4-17. 공적분 검정 결과

	형	F-value	공적분 존재	95%	임계치	90% 임계치		
工	8	r-value	중식군 근제	I(0)	I(1)	I(0)	I(1)	
	자동차	4.064	유					
	화학	3.256	유					
대EU 수 출	전기전자	2.520	유		4.01			
TZ	1차금속	2.866	유			2.45	3.52	
	섬유가죽	3.946	유	2.86				
	자동차	2.914	유	2.00				
FII 64 7	화학	0.644	무					
대영국 수 출	전기전자	1.685	무					
12	1차금속	2.559	유					
	섬유가죽	4.698	유					

주: F 검정을 위한 임계값의 한계는 비제약 상수와 추세가 없는 경우로 Pesaran, Shin and Smith(2001, p. 300)에 있는 Case Ⅲ을 참고함.

자료: 저자 계산.

¹¹⁷⁾ Pesaran, Shin and Smith(2001), pp. 289-326.

¹¹⁸⁾ Engle and Granger(1987), pp. 251-276.

¹¹⁹⁾ Johansen and Juselius(1990), pp. 162-210.

^{116 •}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이에 본 연구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적분 모형인 자 기회귀시차(ARDL: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모형을 이용해 수출과 설명변수들 간의 장기균형관계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ARDL 모형은 Pesaran et al.(2001)이 제시한 자기회귀 모형에 기초한 임계치 검정을 활용한 접근방 법이다. 즉, ARDL 모형은 모형에 포함된 각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고려하는 비 제약 오차수정모형(UECM: unrestricted error-correction model)을 추정 하여 공적분 관계에 있는 각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추정해 보는 방법이다. ARDL 방법의 장점으로는. 먼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구분하여 모형을 설정 할 수 있으며, 시계열 상관(serial correlation)과 내생성(endogeneity)으로 인한 문제를 피할 수 있어 불편성(unbiased)과 효율성(efficient)을 충족하는 계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Johansen의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과 달리 각 변수들의 시차가 같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RDL 모형을 이용하여 변수들 사이의 장기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진행된다. 첫 단계로 변수들 사이에 이론에 부합하는 장 기관계가 존재하는지를 UECM 모형으로 추정해 본다. 그 결과 장기관계가 존 재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를 통해 단기와 장기 계수가 추정된다.

앞서 논의한 이론과 더불어 ARDL 모형을 기반으로 장기균형관계의 존재 여부를 추정하기 위한 수출함수의 실증모형은 다음과 같은 로그 선형으로 표현할수 있다.

$$\begin{split} \Delta \left(X_{t} \right) &= \alpha_{1} + \sum_{i=1}^{P} \alpha_{2,i} \Delta \left(X_{t-i} \right) + \sum_{i=1}^{P} \alpha_{3,i} \Delta \left(\textit{GDP}_{t-i} \right) + \sum_{i=1}^{P} \alpha_{4,i} \Delta \left(\textit{REX}_{t-i} \right) \\ &+ \sum_{i=1}^{P} \alpha_{5,i} \Delta \left(\textit{OIL}_{t-i} \right) + \beta_{1} X_{t-1} + \beta_{2} \textit{GDP}_{t-1} + \beta_{3} \textit{REX}_{t-1} + \beta_{4} \textit{OIL}_{t-1} \\ &+ \beta_{5} \textit{Du}_{t} + \epsilon_{t} \end{split} \tag{1}$$

여기서 \triangle 는 일차차분을 나타내며, X는 한국의 대EU 수출, REX는 실질환율 $^{120)}$, GDP는 EU의 실질국내총생산, OIL은 국제유가를 나타내며, Du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구조변화, FTA 등을 고려한 더미 변수, t는 시간을 의미한다.

2) 실증분석 결과

식 (1)의 ARDL 모형을 이용하여 대EU와 대영국 업종별 수출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8]에 나타나 있다. 추정계수 α_2 , α_3 , α_4 , α_5 는 단기동태 항을 의미하며, 추정계수 β_1 , β_2 , β_3 , β_4 는 오차수정항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된 단기동태항과 오차수정항을 이용하여 오차수정항 계수 값을 도출할 수 있는데, 식 (1)을 변형하여 표현하게 되면 식 (2)와 같다.

$$\begin{split} \triangle \big(X_{t} \big) &= \alpha_{1} + \sum_{i=1}^{P} \alpha_{2,i} \triangle \left(X_{t-i} \right) + \sum_{i=1}^{P} \alpha_{3,i} \triangle \left(GDP_{t-i} \right) + \sum_{i=1}^{P} \alpha_{4,i} \triangle \left(REX_{t-i} \right) \\ &+ \sum_{i=1}^{P} \alpha_{5,i} \triangle \left(OIL_{t-i} \right) - \beta \left(X_{t-1} - \theta_{1}GDP_{t-1} - \theta_{4}REX_{t-1} - \theta_{3}OIL_{t-1} \right) \\ &+ \beta_{5}Du_{t} + \epsilon_{t} \end{split} \tag{2}$$

식 (2)의 β 는 오차수정항 계수를 의미하며 이는 \langle 표 4-18 \rangle 에서의 β_1 과 동일한 값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모든 산업별 대EU 및 대영국 수출함수 추정 결과에서 오차수정항의 계수 값이 음(-)의 부호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는 각 수출과 설명변수들이 동태적으로 장기균형으로 수렴함을 의미한다. 또한 대EU 수출함수를 살펴보면,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1차금속, 섬유가죽산업의 경우에 오차수정항의 계수 값이 각각 -0.60, -0.42, -0.25, -0.29, -0.30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령 자동차산업의 경우에 경제적 충격으로 발생한 불균형이 1분기 뒤에 약60%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동차산업의 경우 경제에 충격이 가해

$$REX = \frac{Nominal~EX \times CPI^{i}}{CPI}$$

¹²⁰⁾ 실질환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됨.

지면 다시 장기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지만, 전기전자산업의 경우에는 회복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대영국 수출함수를 살펴보면,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1차금속, 섬유가죽산업의 경우에 각 오차수정항의 계수 값이 -0.56, -0.34, -0.27, -0.48, -0.58로 나타났다. 대EU 수출함수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자동차산업에서 장기균형으로의 회복력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화학산업이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더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계수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났던 전기 및 전자산업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8. ARDL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대	EU 수출형	삵		대영국 수출함수					
구분	자동차	화학	전기 전자	1차금속	섬유 가죽	자동차	화학	전기 전자	1차금속	섬유 가죽	
	15.909***	-2.239	9.111*	0.976	3.246	1.289	1.525	11.938	2.946	5.131	
α_1	(5.134)	(1.412)	(4.880)	(2.402)	(1.994)	(5.597)	(2.093)	(11.845)	(5.777)	(3.217)	
	-0.005	0.253*	0.209	0.253	0.143	-0.217	-0.073	-0.144	-0.290	0.131	
α_2	(0.129)	(0.146)	(0.143)	(0.139)	(0.115)	(0.178)	(0.160)	(0.211)	(0.161)	(0.158)	
	2.780***	0.766	1.931***	0.506	1.114***	2.970	0.544	-1.507	1.577	2.076***	
α_3	(0.794)	(0.491)	(0.590)	(0.667)	(0.307)	(1.541)	(0.505)	(1.499)	(1.490)	(0.645)	
	-1.726**	-0.467	0.709	-0.977	-0.222	-1.886	-0.812	-0.420	0.551	0.492	
α_4	(0.710)	(0.405)	(0.561)	(0.721)	(0.335)	(1.662)	(0.554)	(1.359)	(1.861)	(0.787)	
	-0.087	0.283	0.397	0.336	0.424***	0.111	0.327	0.117	1.268*	0.704	
α_5	(0.288)	(0.171)	(0.228)	(0.294)	(0.137)	(0.694)	(0.230)	(0.576)	(0.717)	(0.323)	
В	-0.599***	-0.422***	-0.254**	-0.291***	-0.301**	-0.557**	-0.340**	-0.272	-0.484**	-0.580***	
β_1	(0.163)	(0.134)	(0.111)	(0.099)	(0.117)	(0.223)	(0.166)	(0.176)	(0.218)	(0.177)	
eta_2	1.032***	4.859***	-2.065	4.051**	1.697**	3.244***	1.616***	-0.810	2.287*	1.120**	
	(0.706)	(0.623)	(1.385)	(1.480)	(0.670)	(1.029)	(0.567)	(2.415)	(1.223)	(0.453)	
β_3	-2.356	0.297	-0.461	-1.030	-0.261	-0.345	0.621	-2.954	-0.751	0.178	
	(0.412)	(0.353)	(0.782)	(1.085)	(0.411)	(1.201)	(0.668)	(2.244)	(1.785)	(0.545)	
eta_4	0.194	0.346**	-0.469	0.521	0.405**	0.705	0.711***	-1.423**	0.909*	0.517***	
~4 	(0.179)	(0.157)	(0.383)	(0.373)	(0.172)	(0.417)	(0.248)	(0.668)	(0.475)	(0.169)	
Adj. R2	0.588	0.364	0.401	0.425	0.537	0.279	0.241	0.060	0.428	0.350	

주 1) *, **, ***는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2) ()}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식 (2)의 각 설명변수별 θ 값들은 장기균형 계수 값을 의미하고, 이를 산출한 값은 [표 4-20]에 나타나 있다. 선행연구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경우에 GDP와 환율은 수출과 서로 정(+)의 관계를 가지며, 유가는 부(-)의 관계를 가지나, 최근 자료를 이용하면 정(+)의 관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기존 이론 및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산업들은 대EU 및 대영국 수출함수 결과에서 선행연구 또는 이론적 부호와 다른 부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자 및 전자산업은 분석기간 동안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설명변수들과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환율의 계수 값은 주요 산업들 모두 및 대EU와 대영국 수출함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자료 분석시기나 산업별 특이성에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

[표 4-19]는 장기균형 계수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대EU 및 대영국 수출의 대다수 산업에서 GDP와 수출의 장기균형관계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특히 전기 및 전자산업의 경우에는 모든 설명변수와의 장기균형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분석기간 동안 환율이나 유가 등이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적으로 확신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산업들의 GDP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H	4-19	장기균형	계수부석	격과

		대	U 수출함	수		대영국 수출함수					
계수	자동차	화학	전기	1차	섬유	자동차	화학	전기	1차	섬유	
	시이시 되극	치러	전자	금속	가죽	시당시	지역	전자	금속	가죽	
θ_1	1.72***	11.05***	-8.12	13.94**	5.64**	5.82**	4.75***	-2.98	4.72*	1.93**	
θ_2	-3.93	0.70	-1.81	-3.55	-0.87	-0.62	1.83	-10.88	-1.55	0.31	
θ_3	0.32	0.82	-1.84	1.79	1.35	1.26	2.09	-5.24	1.88	0.89	

주: θ_1 , θ_2 , θ_3 는 각각 GDP, 환율, 유가의 장기균형 계수 값을 의미함. *, **, ***는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냄. 자료: 저자 계산.

자동차산업의 경우 [표 4-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EU 및 대영국 수출 모두에서 GDP에 대한 장기균형 계수 값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EU GDP 및 영국 GDP가 1% 변화하면 수출이 각각 1.7%와 5.8%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DP 변화가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EU 전체 수출보다는 대영국 수출에 더 크게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화학산업의 경우, 대EU 수출의 경우 GDP에 대한 장기균형 계수 값이 11.1%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영국 수출에 있어서는 영국 GDP가 1% 변하게 되면, 대영국 수출이 4.8%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차금속은 화학산업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EU와 영국의 GDP가 1% 변하는 경우에 대EU 및 대영국 수출이 각각 13.9%와 4.7%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 및 가죽산업에서는 대EU 수출의 GDP에 대한 장기균형 계수 값이 5.6%로 분석된 데 반해, 대영국수출은 영국 GDP가 1% 변하는 경우에 약 1.93%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시경제적 충격, 특히 GDP나 환율 변화로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의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EU 수출에 있어서는 1차금속과 화학산업이 GDP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산업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영국 수출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산업이 GDP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고, 섬유 및 가죽산업이 GDP 충격에 가장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브렉시트로 인하여 EU나 영국의 GDP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 일차적으로 1차금속과 화학산업, 그리고 자동차산업 등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다. 시나리오별 효과 분석

이제 앞 소절에서 추정한 산업별 수출함수에 따른 탄성치 추정 결과들을 활용하여 영국의 EU 탈퇴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의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보자. 이를 위하여 브렉시트의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는 3장 1절에서 상정한 대로 시나리오 1은 영국만의 경제충격, 시나리오 2는 EU 전체의 경제충격, 시나리오 3은 전 세계적인 경제충격(표 3-1 참고)을 상정하였고, 각 충격은 2017년 1월부터 효과가 발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각 시나리오에 따라 예측된 EU 및 영국의 GDP와 환율, 그리고 국제유가를 전망의 전제조건으로 이용하였는데, 분석에 사용한 전망의 전제조건은 Oxford Economics Global Model Workstation을 이용하여 산출한결과로 [표 4-20]에 나타나 있다.

[표 4-20]에 제시되어 있는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앞 절에서 분석한 결과 중에서 [표 4-18]의 각 변수별 장기균형 계수 값을 이용하여 2017년과 2018년의 산업별 대EU 및 대영 수출 전망치를 도출하였다.

	표	4-20.	시나	리오별	수출전망의	전제조건
--	---	-------	----	-----	-------	------

		시나리	박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구분	EU GDP	영국 GDP	환율 (원/ 달러)	유가	EU GDP	영국 GDP	환율 (원/ 달러)	유가	EU GDP	영국 GDP	환율 (원/ 달러)	유가	
2017 1Q	3,444.6	469.4	1,182.6	91.0	3,435.3	469.2	1,183.4	91.0	3,433.6	469.0	1,184.7	91.0	
2Q	3,457.9	470.6	1,190.1	90.9	3,445.0	470.1	1,191.9	90.9	3,441.9	469.7	1,195.1	90.9	
3Q	3,465.8	469.3	1,195.9	91.9	3,449.8	468.5	1,198.7	91.9	3,445.4	467.9	1,203.0	91.9	
4Q	3,471.7	465.3	1,197.5	93.7	3,448.3	464.1	1,200.5	93.7	3,443.2	463.3	1,204.6	93.7	
2018 1Q	3,480.7	463.6	1,193.7	94.5	3,437.2	461.9	1,195.3	94.5	3,431.4	461.0	1,196.6	94.5	
2Q	3,489.8	461.4	1,187.0	94.5	3,439.7	459.2	1,186.4	94.5	3,432.8	458.1	1,183.9	94.5	

표 4-20. 계속

		시나라	니오 1			시나리	I오 2			시나	비오 3	
구분	EU GDP	영국 GDP	환율 (원/ 달러)	유가	EU GDP	영국 GDP	환율 (원/ 달러)	유가	EU GDP	영국 GDP	환율 (원/ 달러)	유가
3Q	3,503.9	463.3	1,180.4	95.4	3,451.3	460.8	1,178.8	95.4	3,443.7	459.6	1,174.1	95.4
4Q	3,512.4	460.6	1,174.7	97.2	3,457.6	457.7	1,173.3	97.2	3,449.8	456.5	1,168.8	97.2

주: 단위 - 1. EU GDP(Billions, 2010 기준, 유로화).

자료: Oxford Economics(2016)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6. 10. 16).

[표 4-20]의 전망의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산출한 2017년과 2018년의 산업 별 대EU 및 대영 수출 전망치는 [표 4-21]에 나타나 있다.

표 4-21. 시나리오별 산업별 수출 전망

						=====			
연도	대EU 수출함수				대영국 수출함수				
			1차	1차 섬유	-11		1차	섬유	
	자동차 화학		금속	가죽	가죽 자동차	화학	금속	가죽	
기준 시나리오									
2017	2.63	17.79	22.81	8.81	5.39	4.39	4.36	1.77	
2018	2.73	18.52	23.77	9.15	6.87	5.58	5.55	2.24	
	시나리오 1								
2017	2.39	16.06	20.54	7.99	2.72	2.23	2.21	0.91	
2018	1.83	12.19	15.56	6.09	-7.83	-6.41	-6.37	-2.62	
	시나리오 2								
2017	1.61	10.57	13.42	5.33	1.88	1.54	1.53	0.63	
2018	0.09	0.49	0.59	0.28	-9.83	-8.06	-8.01	-3.32	
시나리오 3									
2017	1.43	9.31	11.80	4.71	1.28	1.05	1.05	0.43	
2018	-0.08	-0.61	-0.80	-0.29	-10.57	-8.67	-8.62	-3.57	

주: 1) 전년대비, 단위(%).

^{2.} 영국 GDP(Billions, 2013 기준, 파운드화).

^{3.} 환율(원화 기준).

^{4.} 국제유가(index, 2005=100).

²⁾ 전기전자는 장기균형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에서 제외. 자료: 저자 계산.

[표 4-21]의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시나리오 3의 충격(전 세계적인 경제충격)을 상정했을 때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시나리오 2나 3에 비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영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상정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2018년 산업별 대영국 수출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충격이 대영국 수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거의 없다고 상정한 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대EU 및 대영국 수출은 2017년과 2018년을 고려한 모든 산업에서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EU 수출의 경우에는 1차금속과 화학산업에서 크게 증가가 예상되고, 대영국 수출의 경우에는 자동차산업의 수출증가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EU 수출의 경우 시나리오 1을 상정하였을 때 자동차산업의 경우 수출이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2.4% 증가하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산업의 수출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전년대비 16.1%와 12.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1차금속의 경우에는 2017년과 2018년의 대EU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20.5%와 1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가죽제품의 경우에도 수출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전년대비 8.0%와 6.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영국 수출의 경우 시나리오 1을 상정하였을 때 자동차산업의 경우 수출이 2017년에는 전년대비 2.7% 증가하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산업 수출의 경우에는 2017년에 전년대비 2.2% 증가하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6.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1차금속의 경우에는 2017년과 2018년의 대EU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2.2% 증가 및 6.4%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섬유가죽제품의 경우에는 수출이 2017년에는 전년대비 0.9%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2018년에는 전년대비 2.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를 상정하였을 때 대EU 수출을 살펴보면, 자동차산업의 경우 수

출이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1.6% 증가하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산업의 수출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전년대비 10.6%와 0.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1차금속의 경우에는 2017년과 2018년의 대EU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13.4%와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가죽제품의 경우에도 수출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전년대비 5.3%와 0.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영국 수출의 경우 시나리오 2를 상정하게 되면 자동차산업의 경우 수출이 2017년에는 전년대비 1.9% 증가하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산업 수출의 경우에는 2017년에 전년대비 1.5% 증가하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8.1%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1차금속의경우에도 2017년과 2018년의 대EU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1.5% 증가와 8.0%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섬유가죽제품의 경우에는 수출이 2017년에는 전년대비 0.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2018년에는 전년대비 3.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3을 가정하였을 경우 대EU 수출은 자동차산업에서 수출이 2017 년에는 2016년 대비 1.4% 증가하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산업의 수출은 2017년에 전년대비 9.3% 증가하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0.6%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1차금속의 경우에는 2017년과 2018년의 대EU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11.8% 증가 및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가죽제품의 경우에도 수출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전년대비 4.7% 증가와 0.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영국 수출의 경우 시나리오 3을 가정하게 되면 자동차산업의 경우 수출이 2017년에는 전년대비 1.3% 증가하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10.6% 정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산업 수출의 경우에는 2017년에 전년대비 1.1% 증가하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8.7%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1차금속의 경우에도 2017년과 2018년의 대EU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1.1% 증가와 8.6%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 섬유가죽제품의 경우에는 수출이 2017년에는 전년대비 0.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2018년에는 전년대비 3.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시나리오 대비 각 시나리오별 수출의 영향력 차이는 [표 4-22]와 [표 4-23]에 나타나 있다.

표 4-22. 기준 시나리오 대비 각 시나리오별 대EU 수출의 증감률 변화분

구분		2017		2018			
下正	$\Delta 1$	$\Delta 2$	$\Delta 3$	$\Delta 1$	$\Delta 2$	$\Delta 3$	
자동차	-0.24	-1.02	-1.20	-0.90	-2.63	-2.81	
화학	-1.73	-7.23	-8.48	-6.33	-18.02	-19.13	
1차금속	-2.27	-9.40	-11.02	-8.21	-23.18	-24.57	
섬유가죽	-0.82	-3.48	-4.10	-3.06	-8.87	-9.44	

주: 1) 단위(%p).

자료: 저자 계산.

표 4-23. 기준 시나리오 대비 각 시나리오별 대영 수출의 증감률 변화분

구분		2017		2018			
	$\Delta 1$	$\Delta 2$	$\Delta 3$	$\Delta 1$	$\Delta 2$	$\Delta 3$	
자동차	-2.67	-3.51	-4.11	-14.71	-16.71	-17.44	
화학	-2.16	-2.84	-3.34	-11.99	-13.64	-14.25	
1차금속	-2.15	-2.83	-3.32	-11.92	-13.56	-14.16	
섬유가죽	-0.86	-1.14	-1.33	-4.86	-5.55	-5.81	

주: 1) 단위(%p).

자료: 저자 계산.

^{2) △1}은 시나리오 1과 기준 시나리오의 수출증가율 차이(변화분)를 의미.
△2는 시나리오 2와 기준 시나리오의 수출증가율 차이(변화분)를 의미.
△3은 시나리오 3과 기준 시나리오의 수출증가율 차이(변화분)를 의미.

 ^{△1}은 시나리오 1과 기준 시나리오의 수출증가율 차이(변화분)를 의미.
 △2는 시나리오 2와 기준 시나리오의 수출증가율 차이(변화분)를 의미.
 △3은 시나리오 3과 기준 시나리오의 수출증가율 차이(변화분)를 의미.

먼저 브렉시트로 인하여 경제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영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뿐만 아니라 대EU에 대한 수출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수출감소 효과는 브렉시트로 발생한 경제적 충격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EU 수출에서는 1차금속산업, 대영국 수출에서는 자동차산업이 브렉시트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출감소 효과도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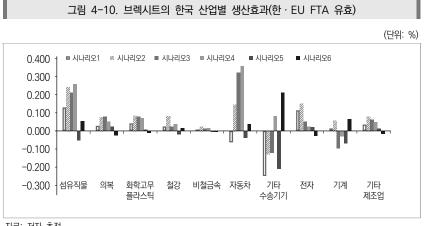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EU 수출의 경우에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이 거의 없는 기준 시나리오를 상정했을 때보다,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감안한 시나리오 1, 2, 3의 수출증가율이 전 산업에서 모두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차금속의 수출증가율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2.3~-11.0%p, 2018년 -8.2~-24.6%p). 또한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 효과가 차년도(2018년)에도 지속되며, 경제충격으로 발생한 수출감소 효과는 차년도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영국 수출의 경우도 대EU 수출과 비슷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경제충격이 발생한 것을 상정한 시나리오 1, 2, 3에서 경제 충격이 거의 없다고 상정한 기준 시나리오보다 수출감소 효과가 자동차, 화학, 1차금속, 섬유가죽 등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게 더 크게 나타났다. 대영 수출의 경우에 자동차산업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보다 수출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2017년 -2.7~-4.1%p, 2018년 -14.7~-17.4%p), 이러한 효과는 충격발생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차년도에는 더욱 크게 수출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해 (2017년)보다도 차년도에 수출감소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부석되었다.

3.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CGE 분석

이 절에서는 3장 2절 거시경제적 효과 중에서 CGE 모형 분석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브렉시트의 효과를 살펴본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각산업에 브렉시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브렉시트에 따른 한국의 산업별 생산변화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변화율 크기 자체는 미미한 편이나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하드브렉시트(시나리오 3)의 경우와 소프트브렉시트(시나리오 5)의 경우를 살펴보면, 하드브렉시트(시나리오 3)의 경우 기타수송기기 (-0.119%)와 기계류(-0.095%)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생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직물의 경우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소프트브렉시트(시나리오 5)의 경우 의복(0.023%)과 전자(0.023%)에서 생산이증가하나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고, 화학(0.007%), 기타제조업(0.013%)에서도 생산이 미미하게 증가한다. 반면 기타수송기기(-0.208%)에서는 비교적 큰폭의 생산 감소가 일어나며, 그 밖에도 기계(-0.068%), 자동차(-0.038%), 철강(-0.018), 섬유(-0.05%), 비철금속(-0.004%)에서 생산이 감소한다.



자료: 저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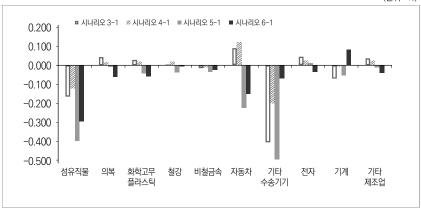
결국 제조업 생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121)

한국과 영국이 상호 MFN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즉 한 · 영 FTA가 없는 경우, 하드브렉시트(시나리오 3-1)와 소프트브렉시트(시나리오 5-1)의 경우를 비교해 보자. 먼저 시나리오 3-1의 경우 기타수송기기(-0.402%), 섬유직물(-0.165%) 등에서는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자동차(0.09%), 기타제조업(0.039%) 등에서는 다소간 생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영국과 EU, 한국 간에 부과되는 MFN 세율의 크기에 따라 무역전환효과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나리오 5-1의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부정적효과는 하드브렉시트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나서, 대부분의 산업에서생산이 감소하며 특히 기타수송기기, 섬유직물, 자동차에서의 생산 감소폭이크게 나타난다. 즉, 하드브렉시트의 경우에는 산업에 따른 증감이 혼재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산업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22)

¹²¹⁾ 보다 자세하게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시나리오 1의 경우 자동차(-0.63%)와 기타수송기기(-0.248%)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섬유직물의 경우 0.13%의 생산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영국은 일방적 무관세를, EU는 영국에 대해 MFN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2의 경우 기타수송기기(-0.130%)를 제외한모든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며 특히 섬유직물(0.238%)과 자동차(0.145%), 전자(0.149%)의 생산이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EU가 상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장벽을 MFN 수준으로 높이는 시나리오 3의 경우 기타수송기기(-0.119%)와 기계(-0.095%)를 제외한모든 산업의 생산이들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국과 EU가 상호 MFN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4의 경우 기계(-0.031%)를 제외한모든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며 특히 섬유직물(0.259%)과 자동차(0.356%)의 생산이크게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EU가 현재의 서비스 교역장벽을 MFN 수준으로 높이는 시나리오 5의 경우에는 의복(0.023%)과 화학(0.007%), 전자(0.023%), 기타제조업(0.013%)에서는 생산이증가하는 반면, 섬유(-0.05%), 철강(-0.018), 비철금속(-0.004%), 자동차(-0.038%), 기타수송기기(-0.208%), 기계(-0.068%)에서는 생산이감소하였다. 또한 영국과 EU 간 서비스 교역장벽이 완전철폐되는 시나리오 6에서는 산업별 생산효과가 시나리오 5와는 정반대로 발생하였다.

¹²²⁾ 그 밖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나리오 4-1의 경우(영국과 EU, 한국과 영국 간 MFN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타수송기기(-0.198%), 섬유직물(-0.12%) 등에서는 생산이 감소하는 반면, 자동차 (0.122%), 기타제조업(0.025%), 전자(0.024%) 등에서는 생산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단위: %)



자료: 저자 추정.

4. 금융 ·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절에서는 브렉시트가 영국과 유럽 및 한국 금융·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다. 따라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브렉시트가 어떤 방식 내지 모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먼저 금융규제의 관점에서 브렉시트 모형에 따른 금융규제 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영향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브렉시트가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절은 브렉시트가 금융·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영국과 EU에 진출해 있는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영향(outbound impact)과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영향(inbound impact)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다. 시나리오 6-1에서의 기계산업 생산효과(0.084%)는 특이하게 시나리오 6에서의 생산효과 (0.066%)보다 다소 높게 추정되었다.

가. 브렉시트 모형에 따른 금융규제 변화 예상과 영향123)

1) 브렉시트 모형

브렉시트는 EU 조약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124) 2016년 6월 23일 EU 탈퇴에 관한 영국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탈퇴에 관한 영국의 내부적인 의사가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브렉시트는 영국 자체의 의사결정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브렉시트의 본격적인 절차의 시작은 EU 조약 제50조 제2항에 따라, 영국이 유럽이사회에 탈퇴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시작되며, 이 시점부터 탈퇴의사를 받은 유럽이사회는 영국과 EU와의 향후 관계에 대한 협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집행위의 협상을통해 탈퇴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이 탈퇴약정에 대해서는 EU 의회의 동의와 각료이사회의 적격과반수(qualified majority)가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125) 또한 영국이 가진 EU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는 EU 탈퇴의사 통지 후 2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126) 이 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유럽이사회와 협의를통해 탈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EU 탈퇴의 절차적 측면에서는 유럽이사회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영국은 통지 후 2년이라는 기

¹²³⁾ 브렉시트 모형과 금융규제 변화 예상 및 영향에 대한 기술은 천창민(2016),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규제환경 영향과 시사점」에 기초하였음을 밝힌다.

¹²⁴⁾ EU 조약 제50조 제1항은 각 회원국은 자신의 헌법상 요건에 따라 EU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한다.

¹²⁵⁾ 제50조 제2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Member State which decides to withdraw shall notify the European Council of its intention. In the light of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European Council, the Union shall negotiate and conclude an agreement with that State, setting out the arrangements for its withdrawal, taking account of the framework for it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Union. That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8(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t shall be concluded on behalf of the Union by the Council,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¹²⁶⁾ 유럽이사회의 만장일치로 2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EU 조약 제50조 제3항). EU 조약 제50조 제3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Treaties shall cease to apply to the State in question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ithdrawal agreement or, failing that,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unless the European Council, in agreement with the Member State concerned, unanimously decides to extend this period."

간 내에 자신의 견해를 반영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나, EU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년이라는 기관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EU에서 '강제' 탈퇴되기 때문에, 영국은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이 EU 탈퇴를 어떠한 모습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브렉시트 모형은 영국과 EU의 금융규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 모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크게 ① EEA(European Economic Area) 및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에 가입하는 노르웨이 모형 ② EFTA 가입 및 개별 협정을 체결하는 스위스 모형 ③ EU와 FTA를 체결하는 캐나다 모형이 거론된다. 127) 그리고 이 세 가지 모형 외에, 영국에 특화된 신모형이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세 가지 모형들은 영국이 EU에 존속할 때 누릴 수 있는 장점을 뛰어넘지 못하므로, 정치적 타협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형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준비되지 않은 '정치적 이혼선언'으로서, 그에 따른 수습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 및 EU 모두 손실을 감수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국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모형이 협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하 논의는 금융규제적 관점에서 세 가지 기존 모형이 가지는 함의를 가략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가) 노르웨이 모형

브렉시트가 노르웨이 모형을 따를 경우, 128) 영국은 EEA 및 EFTA 가입에 따라 EU 회원국과 동일한 상품·서비스·자본·인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EU 회원국의 지위와 가장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농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사항은 EU의 영향을 받지 않고, 특히 외교·안보 및 비EU 국가와의 무역협상 등은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EU 탈퇴 투표의 결

¹²⁷⁾ 그 외 터키 모형인 관세동맹 모형도 거론되나, 금융서비스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논의를 생략하다.

¹²⁸⁾ 이것이 대표적인 'soft' 브렉시트 모형이다.

정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및 분담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모형으로 평가된다. Global Counsel (2015)에 따르면, 노르웨이 모형에 따를 경우 영국의 EEA 분담금은 EU 순분 담금과 비교 시 9% 정도 낮아져 분담금 감소 실익이 크지 않다. 또한 이주노동 자에 따른 일자리 문제가 여전하여, 영국 국민정서상 노르웨이 모형은 선택지 로서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더 큰 문제점은 영국의 EU 내 의사결정권 부재이다. 노르웨이 모형에서는 영국이 부담하는 분담금 수준은 브렉시트 이전과 유사하나 EU 법의 제정이나 개정과 관련하여 EU 내에서 영국의 결정권이 없다. 따라서 영국 입장에서는 EU 법의 일방적 수용만 가능하므로 EU 회원국 지위와 비교 시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EU의 금융규제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그간 영국이 EU 내에서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도출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노르웨이 모형은 영국 입장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스위스 모형

스위스 모형은 EFTA에 가입하나 EEA에는 가입하지 않고, EU와 개별 사안 별로 광범위한 양자간 협정을 맺는 방식이다. 스위스는 이 방식에 따라 EU와 약 100여 개의 협정을 맺고 상품 등에 대한 EU 단일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위스는 금융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제3국의 지위로 EU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스위스 모형은 원래 스위스가 EU에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된 것이라는 점과, 특히 스위스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0년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스위스의 경우와 달리 영국은 EU 탈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EU 참여를 전제로 시작된 스위스 모형은 서로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위스 모형은 영국의 체리피킹(cherry-picking) 가능성이 농후하여 EU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실제 2010년 이후 EU는 스위스와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모형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영국 측면에서도, 스위스 모형 채택시 현 EU 순분담금 대비 분담금이 55%로 축소되고 이민자 문제도 없으나, 스위스의 예에 따르면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영역이 포함되지 않아 영국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서비스는 영국의 가장큰 강점 중 하나여서, 자유로운 EU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영국에 스위스 모형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국은 주식시장의 자본규모가 GDP의 121%를 차지할 정도로 금융서비스가 전체 산업에서차지하는 규모가 크다. 따라서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모형은 영국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스위스 모형에서도 노르웨이 모형과 같이 EU 법의 제개정 참여가 봉쇄되어, EU에서 영국의 영향력이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영국 입장에서 스위스 모형은 큰 매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캐나다 모형

캐나다 모형은 영국이 EU를 완전 탈퇴하고 캐나다 및 우리나라의 사례와 같이 EU와 FTA를 체결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EU 자본시장 등에 접근하는 모형이며, EU 단일시장에는 제3국의 지위로 참여하게 된다. 캐나다 모형에서는 EU와의 기존 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제3국의 입장에서 새로운 FTA를 기초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FTA를 통한 EU 단일시장 접근은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EU 및 EU 회원국들의 반감과, 현행 EU 규제로 FTA의 내용이 영국에 우호적일 것이라 보장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만 7년이 소요되었고, 현재까지도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FTA 체결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캐나다 모형에서는 대부분의 금융서비스 분야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의 금융산업에 불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분야에서는 EU 단일시장을 완전히 탈퇴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모형 또한 영국에 결코 유리한 모형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노르웨이 모형과 스위스 모형에 비해 보다 현실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129) 영국 입장에서는 캐나다 모형을 기초로 EU와 새로운 관계설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술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모형의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일 개연성이 높아 실제 브렉시트 모형을 예상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현지의 논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브렉시트 모형에 따른 권한을 비교하면 [표 4-24]와 같다.

표 4-24. 브렉시트 모형별 회원국의 권한 비교

구분	EU 회원국	EEA 회원국	EFTA 회원국
EU 이사회 거부권	0	×	×
새로운 EU 입법에 대한 피조언권	0	0	×
EU 이사회 대표권	0	×	×
EU 의회 대표권 및투표권	0	×	×
EU 법의 우선권	0	×	×
EU 규정(Regulation)의 직접 효력	0	×	×
유럽사법재판소 참여(예: 판사/직원)	0	×	×
EU 법의 이행거부권 또는 이행연기권	×	0	0
EU 분담금(영국 기준)	○ (100%)	∘ (91%)	୦ (45%)
금융서비스 이동의 자유	0	0	×
(단일금융시장 참여)			^
외교·안보 독립성	×	0	0

자료: Shearman & Sterling(2016)을 참고로 변형.

¹²⁹⁾ 노르웨이 모형은 영국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스위스 모형은 EU가 논의를 꺼려하는 모형이라는 측면에서 캐나다 모형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2)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규제 영향

가) EU 단일시장과 금융규제

EU 금융규제는 EU 차원의 통합 규정(Regulation)과 지침(Directive)130) 및 개별 회원국의 금융규제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EU는 단일시장을 위한 자본 및 서비스 이동의 자유 차원에서 그 권한을 가진다. EU 금융규제는 EU가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EU가 권한을 가지고,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EU는 회원국의 별도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정(Regulation) 형식으로 금융규제를 도입하고, 점차 EU 차원으로 감독과 집행 권한을 이양하는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점진적으로 EU 차원의 금융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추세이다. 예컨대 유럽 금융감독시스템(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의 창설은 유럽 차원의 통일된 금융감독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들수 있다. 131) 또한 신용평가사(CRA: Credit Rating Agencies)나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ies)는 ESMA가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이며, 향후자본시장동맹(CMU: Capital Markets Union)132)의 추진에 따라 감독권의 범위가 점차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 차원의 금융감독권 강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EU의 은행동맹 (Banking Union)과 자본시장동맹이다. 은행동맹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은

¹³⁰⁾ 규정(Regulation)은 개별 회원국의 이행입법이 없어도 규정 그 자체로 회원국의 법률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행)지침(Directive)은 개별 회원국이 지침을 토대로 이행법안을 만들어야 해당 회원국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금융규제의 통합을 위해서는 규정의 형태를, 동화 내지 조화를 위해서는 지침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규정 형태의 입법이 많이 도입됨으로써 EU의 금융규제를 통합하려는 것이 추세이다.

¹³¹⁾ 자본시장 분야는 2011년 1월부터 유럽 증권 및 시장 감독기구(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가 EU 금융규제에서 위임받은 일부 사항에 대해 감독규정의 제정과 집행을 담당한다. 은행은 EBA, 보험은 EIOPA가 창설되었다.

^{132)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CMU는 실질적 EU 단일자본시장 형성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자본시 장을 통한 자본조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은행 중심의 자본조달 관행 에서 탈피하여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국가별 자본시장 규제차익을 제거하고자 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증권신고서지침(Prospectus Directive)의 개정, 범 유럽 사모사채발행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점진적 제도 개혁 추진을 목표로 한다.

행정책을 EU 차원으로 통합시킨 사례이다. 은행동맹은 유로존(Eurozone) 17 개국(영국은 제외)이 크게 단일은행감독과 단일은행정리라는 두 이슈에 대해 감독권을 EU로 이양하여 보다 통합된 EU 금융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규범적으로, 은행동맹은 크게 CRD IV, 예금자보호제도지침 (DGSD) 및 은행회복및정리지침(BRRD)에 근거한다. 자본시장동맹은 신생·중소기업 등의 자본조달 활성화를 통한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유럽 단일자본시장의 강화를 위해 규범적 통합과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패스포트 제도(Passporting System)

패스포트 제도는 유럽 단일(금융·자본)시장을 구축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금융기관 측면에서 복수의 자회사 설립과 인가 없이도 단일면허로 EU 내에서 자유로운 영업을 가능하도록 한다. 133) 개별 회원국별 복수의 자회사 설립은 추가적인 자본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회원국별로 개별적인 인가가 필요하고 추가규제가 가해진다. 따라서 패스포트 제도는 EU 단일시장 구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EU 단일시장에 접근한다는 의미는 패스포트 제도가 허용된다는 의미이며, 영국이 브렉시트에 따라 EU를 탈퇴할 경우 그간 누려왔던 EU 단일시장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는 패스포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냐의 문제라할 수 있다.

EU는 매우 다양한 금융규제에서 패스포트 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다음의 지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시장지침 (MiFID)(2004/39/EC), UCITS(85/611/EC), AIFMD(2011/61/EU), 자본 요건지침(CRD)(2013/36/EU), Solvency II 지침(2009/138/EC), 지급서비스지침(PSD)(2007/64/EC).

¹³³⁾ 금융기관 측면에서, 패스포트 제도는 타 EEA 회원국에 '지점'을 설립하는 '지점 패스포트' 또는 지점 의 설립 없이, 국경간 인가된 금융행위를 수행하는 '서비스 패스포트'를 의미한다.

한편 일부 EU 금융규제는 EU 회원국134)이 아닐 경우에도 EU 단일시장의 접근을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CRD IV, MiFID II 및 AIFMD 등은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해서도 규제의 '동등성(equivalence)'에 근거하여 EU 단일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동등성 인정은 개별 사안별로 EU 집행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하지만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와 시장과 관련한 규제인 MiFID II의 경우, 동등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당연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자본시장 접근이 허용되며, 일반투자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135) 동등성의 원칙은 패스포트 제도에 비해 제약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은행업무 중 예금수취, 대출, 신용보강 및 보증업무, 금융리스, 지급결제업무, 보관기관업무 및 외환업무는 동등성이 인정되더라도 EU 단일시장 접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패스포트 제도가 EU 단일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다) 브렉시트에 따른 향후 EU 금융규제 전망과 영향

(1) 단기 전망

우선, 영국은 1972년 유럽공동체법(European Communities Act) 이후 40년 이상 EU 법체제에 동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EU 법을 탈피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된 다양한 규제강화로 인해 '규정' 형태로 EU 법의 통일이 다수 진전되어, 향후 영국의 독자적 금융규제체계 수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CRD IV는 Basel III를 EU 내로 편입하는 규범이며, 영국이 Basel III와 CRD IV 제정에 적극 관여한 바 있어, 향후 영국에서 이에 반하는 이율배반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¹³⁴⁾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EU 회원국이 아니라 EEA 회원국이다.

¹³⁵⁾ 즉 이는 도매금융에 대해서만 EU 단일시장 접근이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단기적으로 영국의 EU 법 종속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또 다른 근거로는 브렉시트 모형 중 노르웨이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EU 법상 영국을 제3국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한, 제3국인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동등성 원칙의적용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며, 패스포트 제도를 대체할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동등성 원칙의 적용이다. 따라서 영국이 동등성 원칙의 적용을 받아 EU 단일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영국은 단기간 독자적인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 중장기 전망

중장기적으로, 영국은 보다 시장친화적인 금융규제를 지향하는 영국만의 규제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그간 EU 내에서 반대해왔던 쟁점들에 대해 점진적인 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1360 단기적 관점에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동등성 원칙 적용여부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관계설정이 안착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완화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EU 금융규제의 상당 부분이 영국주도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개별 반대 쟁점도 많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단기적으로 영국이나 EU 금융규제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37)

EU 차원에서도, 브렉시트 과정에서, 그간 영국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자본시장동맹(CMU: Capital Market Union)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대륙법적 색채가 강한 금융규제를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는 영국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웠던 CMU를 적극 추진하여. EU 차워의 자본시장 감독권

¹³⁶⁾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도드·프랭크법에 따른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영국과 EU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¹³⁷⁾ 참고로 영국이 반대해 왔던 대표적인 금융규제로는 CRD IV의 보너스상한제, MAR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ESMA의 감독권 강화, MCD상 규제, 금융거래세(FTT) 등을 들 수 있다.

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EU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영국을 제외하고 EU 회원국들 만의 CMU 추진이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세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3) 소 결

브렉시트에 관한 영국 국민투표의 찬성 결과는 영국과 EU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향후 전 세계 자본·금융시장 및 금융규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이 같은 '준비 없는 이혼' 결정에 따른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EU와 영국 상호간의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그 선택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양자 모두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규제 관점에서, 영국은 단기간 금융규제 완화 등의 변화를 시도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EU 법체제 내에서 동등한 금융규제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의 금융규제를 유지하여,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EU 및 영국 간 금융규제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츰 규제 차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EU 측면에서는 자본시장동맹 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 양 대륙 모두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정책적 규제완화를 택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금융규제 개혁을 보다 면밀히 추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실물 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브렉시트가 국내 금융·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영국 진출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가) 금융중심지로서 영국의 위상과 브렉시트의 영향

국내 금융회사의 관점에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패스포트 제도의 유지 여부이다. 세계 각국의 금융회사들이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이유는 런던을 통해 영국뿐만 아니라 EU의 전체 금융시장과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패스포트 제도로 인해 가능하다.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런던에 해외 지점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된다.

2016년 Z/Yen의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20에 따르면 런던은 3년 연속 1위의 금융 중심지로 선정되었으며 사업 환경, 인프라, 인력, 규제 등의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다. 시차적으로 런던은 뉴욕과 도쿄의 중간에 입지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을 연결하며 24시간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런던은 뉴욕과 더불어 세계 최대 금융 중심지로 부상했으며 글로벌 금융·자본시장의 교두보가 되었다. 세계 유수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헤지펀드 등 금융회사들이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금융 및 연관 산업은 영국 GDP의 15%가량을 차지하고, 해당 산업에 2백만 명가량의 인력들이 종사하고 있다.

당장 2017년 영국이 리스본 조약 제50조를 발효하고 브렉시트 절차가 시작되면 패스포트 제도의 작동이 불명확해진다. 이 때문에 런던에 진출해 있는 여러 금융회사들은 이미 EU 대륙으로 업무 및 인력의 이동을 고려하고 있다. 일부 EU 국가들은 브렉시트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하고 있으며, 더블린(아일랜드), 바르샤바(폴란드), 리스본(포르투갈) 등은 미들 및 백-오피스(middle and

back office) 기능을, 룩셈부르크(벨기에)는 자산운용 산업의 이전을 노리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프랑크푸르트(독일) 및 파리(프랑스)는 주요 프런트-오피스 (front-office) 기능의 이전과 더불어 런던을 대체할 신금융중심지로의 부상을 꾀하고 있다. 비EU 지역의 국가들도 런던의 위상 하락으로 이득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자산관리와 핀테크(fintech) 영역에서 홍콩, 싱가포르 및 상하이가 주요 수혜 지역으로 주목된다.

런던을 세계 금융회사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이유는 런던이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환경을 타 국가나 도시가 모방하기는 쉽지 않다. 런던은 2014년 말 기준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 파생상품 거래량의 49%, FX 거래량의 41%를 차지하는 통화와 파생상품 거래의 중심지138)이자 전 세계 채권 유통의 약 70%를 점유하고 EU 도매 금융서비스의 약 35%가 이루어지는 등 금융업을 영위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139) 또한 영국은 타 EU 회원국에 비해 안정적인 사업 관련 법체계를 구축하여 조세 및 노동법상의 규제가 유연하며 예측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영국의 법인세는 2010년까지 3단계 누진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140) 점진적 인하정책을 거쳐 2015년 4월 20%의 단일세율로 개편하는 등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정비하여 2015년 기준 프랑스(34.43%), 룩셈부르크(22.47%)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경직된 노동시장, 임금비용 등 노동법상의 유연성이 낮은 수준이며 부가적으로 사회보장비용이 높다는 점, 룩셈부르크나 더블린의 경우 절대적 인구수가 적으므로 충분한 금융 전문인력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한계

¹³⁸⁾ 프랑스는 금리 파생상품 거래량의 7.3%를 차지하고 FX 거래량의 2.8%를 차지, 독일의 경우 각각 3.7%, 2.8%를 차지한다.

¹³⁹⁾ TheCityUK(2016).

^{140) 2010}년 기준 과세소득에 세율은 기업 규모별로 150만 파운드 초과법인의 경우 28%, 30만 파운드 미만 기업의 경우 21%, 30만~150만 파운드의 과세소득을 가진 기업은 한계경감(marginal relief) 방식에 의해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2011년부터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펼쳐 최고세율은 2011년 26%, 2012년 24%, 2013년 23%, 2014년 21%로 낮아졌으며, 영국은 기업 이익에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점이 있다.

우수하고 편리한 의료시설, 양질의 교육시스템, 문화적 다양성 등의 환경도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런던에 주재원을 파견하기 용이한 이유이다. 나아가 영국은 영어의 본고지로서 해외 금융회사 및 기업의 인력이 영어를 통해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금융중심지로서 무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브렉시트 절차가 현실화되고 과거 수준의 패스포트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 중심지로서 런던을 대체할 만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나) 국내 금융회사의 EU 진출 현황

국내 금융회사는 1967년 첫 해외진출을 시작한 이후 2016년 6월 말 현재 73개의 금융회사¹⁴¹⁾가 43개국 대상 401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EU 지역에서는 22개의 금융회사¹⁴²⁾가 영국에 25개, 영국 외 EU 지역에 13개로 총 38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 전체 해외점포 수의 비중으로 EU는 9.5%, 영국은 6.2%를 차지하며, EU 내 해외점포 중에서 영국의 비중은 65.8%로 유럽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크다.

초기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뉴욕, 런던, 도쿄 등 국제 금융중심지에 진출하였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은행 중심으로 영국에도 해외점포를 설립했다. 이후 1980~90년대 무역급증과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졌고, 국내 금융회사들도 이에 동반하여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유럽 지역에서는 이 당시 영국과 더불어 프랑스 및 독일에 국내 은행들이 지점이나 현지법을 설립했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의 목적지는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하여 선진국보다 신흥국,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방향을 전

¹⁴¹⁾ 은행 10개, 증권사 18개, 자산운용사 17개, 보험사 13개 및 여신전문금융사 15개.

¹⁴²⁾ 은행 7개, 증권사 4개, 자산운용사 2개, 보험사 8개 및 여신전문금융사 1개.

환하였다. 타 지역의 해외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영국을 포함한 EU의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점유율은 2009년 10.2%에서 2016년 6월 말 9.5%로 소폭 감소했다.

표 4-25. 지역별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수 현황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영국	22	23	24	24	26	25	27	25
EU(영국 제외)	11	11	11	11	10	11	13	13
북미	52	51	53	54	58	56	55	57
아시아태평양	203	215	223	230	254	259	257	263
기타	34	33	33	36	34	40	41	43
계	322	333	344	355	382	391	393	401

자료: 금융감독원(2016); 금융중심지원센터(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금융업권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말 기준은행이 173개로 가장 많은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보험사 84개, 증권사 71개, 자산운용사 37개, 여신전문금융사 33개의 해외점포가 있다.이와 더불어 2012년부터는 국내 지주회사가 3개의 해외점포를 설립했다.

EU 지역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는 영국에 집중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 영국에 7개의 해외점포가 있으며, 영국을 제외한 EU 지역에는 8개의 해외점포가 있다. 보험사의 경우 영국에 10개, 영국을 제외한 EU 지역에 2개의 해외점포를 두고 있다.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각각 5개, 2개로 EU 지역의모든 해외점포가 영국에 위치하고 있다.

영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수는 2009년 22개에서 2016년 6월 25개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16년 6월 중 영국에 진출한 국내 보험사 해외점포 수는 3개 증가했으며, 자산운용사 및 여신전문금융사도 각각 1개씩 해외점포가 증가했다. 동 기간 영국 내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수는 7개로 변화가 없었다. 반면, 영국에 설립된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 수는 2009년

7개에서 2016년 6월 5개로 감소했으며, 이는 2012년 이후 국내 영업 부진과 수익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내 증권사가 해외점포를 전반적으로 축소 및 폐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26. 업권별 국내 금융사의 영국 및 EU 해외점포 수 추이

_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은행	132	132	134	142	152	162	167	173
	EU	9	8	8	8	8	8	8	8
	영국	7	7	7	7	7	7	7	7
	보험사	71	70	74	77	80	83	84	84
	EU						1	2	2
	영국	7	7	8	8	9	9	10	10
	증권사	80	93	96	89	89	83	78	71
	EU	1	1	1	1				
	영국	7	8	8	7	8	7	7	5
0	신전문금융사	18	16	16	19	23	26	26	33
	EU	1	2	2	2	2	2	3	3
	영국				1	1	1	1	1
	자산운용사	21	22	24	25	35	34	35	37
	영국	1	1	1	1	1	1	2	2
	지주회사				3	3	3	3	3
	총계	322	333	344	355	382	391	393	401

자료: 금융감독원(2016); 금융중심지원센터(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은행업

2016년 6월 말 현재 영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은행은 7개에 달하고 해외점 포는 지점 5개, 현지법인 2개가 있으며, 영국을 제외한 EU에는 사무소 2개, 지점 2개, 현지법인 4개가 있다. 영국에서 운영 중인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는 대부분 2000년 이전에 개소하여 현지 교민, 유학생, 주재원 등 개인고객에 대한리테일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수출입지원,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여신금융 및 주식투자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4-27. 영국 및 EU 진출 은행 현황

회사	진출 형태	국가	도시	설립 연월	주요 업무
<u> </u>				1968.01	
	지점	영국	런던		• 개인 및 기업금융
	지점	네덜란드	암스텔담	1979.09	• 개인 및 기업금융
KEB하나	현지법인	독일	프랑크 푸르트	1992.12	• 개인 및 기업금융
KEBejej	지점	프랑스	파리	1974.07	• 3,000개 이상의 개인고객(유학생, 교포 및 주재원 등) 대상 업무 • 국내외 기업 수출입거래, EU 회원국 송금거래 중개
국민은행	현지법인	영국	런던	1991.11	국내 시중은행을 대상 송금 중개 및 Trade Finance 업무 국내외 우량기업 대상 대출과 유가증권 투자
기업은행	지점	영국	런던	2006.11	 개인 및 기업 금융 한국 관련 영국기업 대상 수출입금융 지원 유럽 전역의 금융수요 담당
	사무소	독일	프랑크 푸르트	1979.01	• 조사 및 기업, 무역 지원 금융
	현지법인	아일랜드	더블린	1997.06	• 기업대출, 주식 투자, 구조화금융
산업은행	지점	영국	런던	1997.08	기업, 무역 금융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업무자금조달 업무
	현지법인	헝가리	부다 페스트	2002.09	• 현지인 대상 소매금융 • 기업여신 및 소매금융
수출입	현지법인	영국	런던	1992.07	• 한국 기업 대상 기업 금융, 수출입지원 관련 금융, 주식 투자
은행	사무소	프랑스	파리	2005.03	• 유럽 전역에 대한 조사 업무 • ECG 및 OECD DAC와 관련 업무 협력
신한은행	현지법인	독일	프랑크 푸르트	1994.01	• 수출입, 여신, 수신, 송금 업무
2228	지점	영국	런던	1991.12	• 기업금융, 송금업무, 수출입 지원 업무
우리은행	지점	영국	런던	1978.05	• 개인 관련 예금, 대출 업무, 외환/ 수출입 관련 기업지원 업무

자료: 금융감독원(2016); 금융중심지원센터(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U에 진출한 7개 국내 은행 중에서 3개 은행은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형가리 등 대륙에도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영위하고 있으며, 1개 은행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EU 대륙에 지점 또는 현지법인이 있는 3개 은행의 경우 브렉시트로 인한 패스포트 제도가 어려워질 경우에도 현재 영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영국에만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국내 은행의 경우에도 대부분 사업의 범위가영국 내로 국한되어 있어서 패스포팅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제한된 업무의 범위와 더불어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다. 2015년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자산은 1조 9,124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해외점포 총자산은 882억 달러로 은행 총자산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동기간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 해외점포의 자산 규모는 96.4억 달러로 국내 은행총자산의 0.5%, 해외점포 총자산의 10.9% 수준을 차지한다. 이처럼 규모적인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자산은 작은 수준이며, 영국의 해외점포도 예외가 아니다.

	4 00	7111	0=101	해외점포	TILL	\neg	テヘ
++	4-78	H	$\underline{\sim}$	애인스포	7~1		<u>~</u> ())

(단위: 억 달러)

					(61) 7 29)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해외점포 자산	639.7	690.2	778.4	873.3	881.9
(전체 대비 비중)	(4.0%)	(4.3%)	(4.6%)	(4.5%)	(4.6%)
영국점포 자산	70.8	67.7	77.4	93.0	96.4
(전체 대비 비중)	(0.4%)	(0.4%)	(0.5%)	(0.5%)	(0.5%)
은행 총자산	16,087.9	16,212.8	16,982.3	19,245.9	19,123.8

주: 은행 전체 자산은 각 연도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 평균을 사용하여 산출. 자료: 금융감독원(2016); 금융중심지원센터(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국내 은행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해외점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국내 은행 해외사업의 성장에 기인하기보다는 저금리 기조의 고착화로 인한 국내 예대마진의 감소와 이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국내 은행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722억 달러에서 2015년 572억 달러로 20.7% 감소했으며, 이 중 영국에 위치한 국내 은행 지점 · 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66억 달러에서 2015년 52억 달러로 21.7% 감소했다. 동 기간 국내 은행의 총당기순이익은 1조 605억 달러에서 2,966억 달러로 72.0%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이 국내 은행 총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6.8%에서 2015년 19.3%로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영국에 위치한 해외점포가 국내 은행의 총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서 1.7%로 증가했다. 그러나 절대적 규모 면에서 영국에 있는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가 창출하는 당기순이익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으로 봐야 할 것이다.

표 4-29.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억 달러)

					(511: 7 29)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해외점포 당기순이익	721.6	636.2	411.7	628.8	572.1
(전체 대비 비중)	(6.8%)	(8.3%)	(11.6%)	(11.0%)	(19.3%)
영국점포 당기순이익	65.9	48.2	33.1	60.6	51.6
(전체 대비 비중)	(0.6%)	(0.6%)	(0.9%)	(1.1%)	(1.7%)
은행 총당기순이익	10,605.7	7,704.6	3,545.4	5,720.6	2,965.7

주: 은행 전체 자산은 각 연도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 평균을 사용하여 산출. 자료: 금융감독원(2016): 금융중심지원센터(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증권업

2016년 6월 말 현재 4개 국내 증권사가 영국에 사무소 1개, 현지법인 4개를 운영 중이며, 그 외 EU 지역에는 해외점포가 없는 상황이다. 1990년대 대형사 를 중심으로 설립된 국내 증권사의 영국 현지법인은 주로 국내 주식과 채권, 일 명 한국물(Korean Paper)에 대한 기관투자자 대상 브로커리지(brokerage) 영업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 중개가 주요 업무이며, 최근 수익 다변화 측면에서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 업무로의 확장도 시도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해외영업 전반, 특히 영국에서의 사업은 위축되는 추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국내 주식 및 채권의 수익률이 저하됨에 따라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한국물에 대한 관심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2012년 이후 국내에서는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인 위탁매매 수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대응조치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해외사업의 축소 및 폐쇄도 불가피했다. 국내 증권사의 영국 내 해외점포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하기시작했으며, 유지된 해외점포의 경우에도 사업의 범위가 크게 위축되었다. 143)

표 4-30. 영국 및 EU 진출 국내 증권사 현황

회사	점포명	진출 형태	국가	도시	설립 연월	주요 업무
NH투자 증권	NH투자 증권 런던사무소	사무소	영국	런던	2015.2	펀드 플레이스먼트 (fund placement) 업무
ואווטוובוח	대우증권 유럽	현지법인	영국	런던	1991.5	증권업: 한국주식 중개, 채권 중개 등
미래에셋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영국)	현지법인	영국	런던	2008.1	증권업: 브로커리지(기관)
삼성증권	삼성증권 유럽	현지법인	영국	런던	1995.12	증권업: 브로커리지(기관)
한국투자 증권	한국투자증권 유럽	현지법인	영국	런던	1995.4	증권업

자료: 금융감독원(2016); 금융중심지원센터(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¹⁴³⁾ 일례로 특정 증권사의 경우 과거 한국물 브로커리지 중심 사업의 영국 현지법인을 폐쇄하고 유럽 현지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상품을 분석하고 투자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사무소로 전환하기도 했다.

국내 증권사의 해외점포 자산 및 자본 규모도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우선 자산 규모의 경우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의 총자산은 2015년 기준 20.1억 달러로 국내 증권사 총자산의 0.7% 수준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자본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2015년 해외점포의 총자본은 15.3억 달러로 국내 증권사 총자본인 384.8억 달러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4-31. 국내 증권사의 해외점포 자산 및 자본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해외점포 자산	1,769	1,782	1,885	2,010
자산	(총자산 대비 해외 비중)	(0.8%)	(0.7%)	(0.6%)	(0.7%)
	국내 증권사 총자산	222,505	239,779	290,393	298,434
	해외점포 자본	1,290	1,272	1,465	1,530
자본	(총자본 대비 해외 비중)	(3.7%)	(3.6%)	(3.9%)	(4.0%)
	국내 증권사 총자본	34,488	35,197	37,921	38,480

자료: 금융감독원(2016); 금융중심지원센터(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볼 경우에도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의 기여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15년 현재 국내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25.4억 달러 중에서 전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2,390만 달러로 그 비중은 0.9%에 불과하다.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 중에서 영국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은 30만 달러 수준으로 국내 증권사 당기순이익의 0.01%만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 해외사업의 수익은 주로 아시아, 특히 홍콩에서 발생하며,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표 4-32. 국내 증권사의 해외점포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 달러)

				(=11 1= = 1)
구분	2012	2013	2014	2015
영국 점포 당기순이익	-1.7	-2.4	-1.0	0.3
(총당기순이익 영국 비중)	(-0.2%)	(-1.7%)	(-0.1%)	(0.01%)
해외점포 당기순이익	-8.7	-24.4	15.1	23.9
(총당기순이익 해외점포 비중)	(-1.0%)	(-17.0%)	(1.2%)	(0.9%)
국내 증권사 당기순이익	868.4	143.1	1,280.0	2,543.6

자료: 금융감독원(2016); 금융중심지원센터(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자산운용업

2016년 6월 말 기준 영국에 진출한 국내 자산운용사는 2개가 있으며, 모두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 런던 현지법인의 주요 업무는 한 국에 판매되는 해외펀드의 운용, 한국 펀드의 영국 및 기타 EU 기관투자자에 대한 마케팅 및 일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현지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의 모집 및 운용 활동은 활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4-33. 영국 및 EU 진출 국내 자산운용사 현황

회사명	점포	진출 형태	국가	도시	설립연월	업무
미래에셋 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영국)	현지 법인	영국	런던	2007.1	• 해외펀드 운용 및 마케팅 업무
삼성 자산운용	Samsung Asset Management London Ltd.	현지 법인	영국	런던	2015.12	• 해외펀드의 운용 및 기관 마케팅 통한 자금조달 업무

자료: 금융감독원(2016); 금융중심지원센터(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소 결

브렉시트가 영국을 비롯한 EU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국내 은행,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EU 해외점포 규모가 크지 않고기여하는 수익 규모 비중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에 진출한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 사업환경의 악화로 최근 지점 · 현지법인을 폐쇄하거나 업무를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추세로 단기적으로는 브렉시트의 영향이 더욱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내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는 브렉시트에 따른 규제환경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현재 영국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한 국내 은행 및 증권사는 제3국가 기업(TCF: Third-Country Firm)이 되기 때문에 EU 단일시장에 대한 패스포트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TCF에 대해서도 현재 EU의 규제는 소매업무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반면, 도매업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양호한 수준이다. 즉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과 EU 규제체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는 주로 리테일 부문에서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며, 기업 및 전문ㆍ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높다.

영국에 지점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영국 내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국내 은행들은 현재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 부분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이나 EU에서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가 갖추어야 할 자본요건이나 준수해야 할 건전성 규제 등은 영국 및 EU 모두 바젤 III 등 국제적인 기준에 기반하는 만큼 향후에도 두 지역 간의 격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서 탈퇴하고, 이로 인해 패스포트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부 업무, 특히 소매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EU 대륙 내

지점 · 현지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국내 은행들은 해당 지역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인가 등을 획득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영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은행 7개 중 3개는 이미 EU 대륙에도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은행들은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나머지 4개 은행의 경우에도 주요 사업이 영국 시장에 국한 또는 집중되어 있기때문에 패스포팅의 필요성이 제한적이다. 또한 대부분 EU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은 청산결제 등의 업무를 비용 효율성 차원에서 글로벌 은행에 위탁하고 있기때문에 해당 업무와 관련해서 브렉시트의 직접적 영향은 피할 수 있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에도 영국을 중심으로 EU에서의 주요 사업이 소매 부문이 아니고 기관투자자 대상 한국물 중개이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인한 규제적변화의 충격이 덜할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최근 국내 증권사의 EU 내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브렉시트가 국내 증권사 사업전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현재 2개사만현지법인을 두고 있으며, 이들 자산운용사의 현지 영업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이루어지고 있고 리테일 고객 대상의 영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브렉시트로인한 규제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내 금융회사의 EU 지역 해외사업이 현재 다소 제한적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브렉시트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다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경우 향후 국내 금융회사가 유럽 지역 해외진출 및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브렉시트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전략을 보다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은 전개되고 있는 브렉시트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2) 영국을 통한 한국 포트폴리오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영국의 포트폴리오 투자 역할

영국은 세계 각국 자본시장으로 펼쳐지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주요 중심지로서 자리잡고 있다. 영국은 뉴욕 다음으로 큰 세계 자산운용의 중심지이며, 운용자산(AUM: Asset Under Management) 규모는 5.5조 파운드, 자산운용과관련된 고용인력은 35,000명에 달한다. 144) 영국에 설립된 자산운용사와 공모·사모펀드는 영국을 포함한 EU 전역의 투자자들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이렇게 모집된 투자금은 영국에서 운영되어 세계 각국 자산에 투자된다. 또한영국 외 지역에 설립된 여러 공모·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의 운용 자체는영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영국이 세계 금융중심지로서 가진 우수한 인력, 정보 네트워크, 거래 인프라 등에 기인한다.

영국은 특히 유럽의 사모펀드, 즉 대체투자펀드(AIF: Alternative Investment Fund)의 중심지이며, 여기에는 각종 헤지펀드(hedge fund), 프라이빗 에쿼티 (private equity), 투자신탁(investment trusts) 등이 포함된다. 145) 영국 기반 AIF는 AIFMD의 패스포트 제도에 따라 모집 자금을 EU에 투자할 수 있으며, 반 대로 EU 투자자금을 영국을 통해 세계 각국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인해 AIFMD로 보장되는 패스포트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영국을 통한 EU 자금의 모집 및 투자가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반면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EEA의 회원으로 남아 있다면 패스포트가 여전히 가능하며, 이 경우 브렉시트 이후에도 AIF의 활동은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부분은 브렉시트 과정에서 영국과 EU 간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펀드의 운용에 있어서 영국은 룩셈부르크와 함께 UCITS의 중심지 역할

^{144) &}quot;Brexit: Asset managers retreat from the City of London" (2016. 7. 3).

¹⁴⁵⁾ 영국에 기반을 둔 사모펀드는 영국 금융업무행위감독기구(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2013년 7월부터 EU의 AIFMD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EU를 탈퇴할 경우 UCITS에서 현재 허용되는 패스포트가 가능할지 또한 불분명해진다. UCITS의 패스포트 허용은 AIFMD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EEA 회원국으로 남아 있을 경우 유지될 수 있으며, 이 또한 브렉시트 절차 과정에서의 협상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나) 영국 · EU발 한국 포트폴리오 투자 현황

브렉시트가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서 현재 영국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 현황을 살펴본다. IMF에서 제공하는 CPIS(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s) 자료를 사용하여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현황을 보면 2015년 현재 주식과 채권 모두를 포함하여 한국에 투자된 4,275억 달러 중 미국 1,711억 달러, 싱가포르 432억 달러, 영국 373억 달러, 룩셈부르크 306억 달러, 일본 252억 달러가 해당 국가를 통해 한국으로 투자되었다.146) 즉, 한국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영국을 통해 투자된 금액의 비중은 8.7%, 룩셈부르크를 통해 투자된 금액의 비중은 7.2%에 달한다. 한국에 대한 주식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경우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015년 기준 한국에 대한 총주식 포트폴리오 투자 2,840억 달러 중 미국발 투자가 49.0%, 영국발 투자가 9.5%, 룩셈부르크발 투자가 7.9%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유럽에서의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영국과 룩셈부르크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며, 영국의 경우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되는 비중이 높고, 룩셈부르크의 경우 공모펀드를 통해 주요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패스포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브렉시트가 향후 발효될 경우 룩셈부르크를 통한 투자는 크게 변하지

¹⁴⁶⁾ CPIS 자료에서 집계되는 투자 원산국은 투자 자체의 원천지가 아닌 투자 모집이 이루어진 국가를 의미한다. 즉 영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373억 달러는 영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영국에 설립된 자산운용사, 사모·공모펀드를 통해 모집되어 한국에 투자된 금액을 의미한다.

않을 것이지만 영국을 통한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패스포트가 상실될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패스포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영국이동등성(equivalence)의 원칙을 적용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영국이 지금 AIFMD의 주요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하고 있듯이 향후에도 EU 체계에 준하는 관련 규제체계를 유지하여 동등성을 인정받을 경우 현재의 패스포트 수준의 자유로운 투자자금 모집 및 운용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영국이지속적으로 EU와 규제체계를 맞추어가야 하며, 이 경우 영국이 주장하는 독립성을 상당 수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자산운용에 대한 패스포트 기능이 제한될 경우에도 영국이 주요 공모·사모펀드의 운용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이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 가진 다양한 장점, 특히 영국에 위치한 우수한 투자인력은 타 지역에서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브렉시트로 인해 일부 자산운용사 및 공모·사모펀드가 EU 대륙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투자운용 기능은 영국에 남아 있고, 위탁 방식으로 투자운용이 영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된다. 실제이러한 방식은 유럽에서 모집된 투자자금이 뉴욕에서 운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영국을 제외한 EU의 나머지 27개국이이라한 방식으로 영국에서 투자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5장



브렉시트와 한 · EU 통상관계

- 1. 브렉시트와 한 · EU FTA 5주년
- 2. 브렉시트에 따른 한 · EU FTA 변화
- 3. 한 · EU FTA와 한 · 영 FTA
- 4. 소결

1. 브렉시트와 한 · EU FTA 5주년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된 한 · EU FTA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발표된 며칠 뒤인 2016년 7월 1일 발효 5주년을 맞게 되었다. 발효 5주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상품양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접근 등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우선, 5주년이 지난 지금양국의 관세 양허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5-1]은 발효 5년 이후 한국의 EU에 대한 양허표이다. 보호의 수준이 높았던 농업과 수산업에서도 각각 62.5%와 67.2%의 품목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제조업에서의 무관세 비율은 99.5%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총 1만 1,261개품목 중 93.6%에 해당하는 1만 538개품목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향후 7년 차, 10년 차를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1.0%p, 3.5%p 정도 무관세 수입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 상황을 발효 직후와 비교해보면, 농업에서는 20.4%p, 수산업에서는 54.9%p, 제조업에서도 8.8%p 높아진 것으로서, 5년 전과 비교하여 3년 차, 5년 차 철폐 품목 1,343개를 추가로 무관세로 개방한 것이다. 앞으

표 5-1. 한·EU FTA 발효 5년 후 한국의 상품 양허표

(단위: 포모 수 %)

				(211: 67 1, 70)
구분	농업	수산업	제조업	합계
5년 이내 철폐 합계	905(62.5)	274(67.2)	9,359(99.5)	10,538(93.6)
7년 철폐 합계	48(3.3)	18(4.4)	45(0.5)	111(1.0)
10년 철폐1)	286(19.7)	111(27.2)	_	397(3.5)
10년 초과	155(10.7)	2(0.5)	_	157(1.4)
양허 계	1394(96.2)	405(99.3)	9,404(100)	11,203(99.5)
양허 제외/현행관세 유지	55(3.8)	3(0.7)	_	58(0.5)
전 체	1,449(100.0)	408(100.0)	9,404(100)	11,261(100.0)

주: 1) 10년 철폐 275개와 10년+TRQ 11개 품목을 합한 수치.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10)에서 저자 계산.

²⁾ 품목 수는 HS 2006, 수입액은 2004~06년 평균 기준.

³⁾ 농업세이프가드, 수입 쿼터, 시장진입 가격제도 등은 관세철폐 연도에 따라 분류.

로 농업에서 489개 품목, 수산업에서 131개 품목, 제조업에서 45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사라질 것이다.

한편 발효 5년차 EU의 양허 상황은 [표 5-2]에 나타나 있다. 당초 발효 직후에도 총 품목 수 기준 94.0%의 높은 즉시철폐 비율을 기록했던 EU 측이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에는 사실상 무관세 양허 100%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동안 남아 있던 관세부과 품목 590개 중 우리 측의 양허 제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규정한 쌀 및 쌀 관련 제품 39개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무관세로 수입되고있는 것이다.

표 5-2. 한·EU FTA 발효 5년 후 EU의 상품 양허표

(단위: 품목 수, %)

구분	농업	수산업	제조업	합계
5년 이내 철폐 합계	2,025(98.1)	380(100.0)	7,398(100.0)	9,803(99.6)
양허 계	2,025(98.1)	380(100.0)	7,398(100.0)	9,803(99.6)
양허 제외/현행관세 유지	39(1.9)	_	_	39(0.4)
전 체	2,064(100.0)	380(100.0)	7,398(100.0)	9,842(100.0)

주: 품목 수는 CN Code, 수입액은 2004~06년 평균 기준; 쌀 및 쌀 관련 39개 제품에 대해 양허 제외.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10)에서 저자 계산.

이런 상황에서 브렉시트 탈퇴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영국과 한국이 새로운 무역특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관세장 벽이 생기게 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우리의 대영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선박, 화학, 고무제품 등이나 우리의 대영 주력 수입품목인 자동차, 의약품, 주류, 화학제품 등에서 교역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한 · EU FTA 발효 5주년은 상품 교역에서만 전기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자자기적합성선언(SDoC) 도입, 자동차 비관세조치(UNECE 규정) 도입, 통신서비스 면허비용에 대한 상한, 설립의 유보조항(이탈리아의 경우) 폐지, 법 률서비스, 회계서비스, 세무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접근 제한조치 해제, 하수처리서비스(waste water service)의 내국민대우 허용,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재절차, 관세 환급(duty drawback)에 관한 협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기합의한 개방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147)

또한 한 · EU FTA 협상은 2007~09년에 이루어져서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기 직전이었다. 리스본 조약에 따라 투자정책에 대한 전권을 보장받은 EU는 설립이라는 한정된 분야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투자규범 전반에 관하여한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유럽 개별 국가들과 맺은 양자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의 내용이 투자자유화및 투자자보호 분야에서 허점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투자규범을 EU 차원에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 · EU FTA 발효 5년차를 맞이하여, 종합적으로 이 FTA 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행 성과를 점검하며, 기 합의한 추가 양허사항 및 FTA의 개방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사항을 협의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148) 그런데 문제는 영국이 이제 한 · EU FTA에서 한시적인 회원국의 위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양허 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해당되지만 오히려 관세양허 이외의 분야에서 핵심적 이해가 걸린 영국으로서는한 · EU FTA에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으로 다가올 것이다.

크게 보아 한 · EU FTA의 개정작업과 새로운 한 · 영 FTA의 수립은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대체로 일치하는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 면 현명한 지혜와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는 불확실성의 영역이 남아 있다. 이하 에서는 브렉시트 탈퇴협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한 · EU FTA 개정작업 및 한 · 영 FTA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 이슈를 점검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 FTA 협상을 진행해 갈지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¹⁴⁷⁾ 김흥종(2016), 브렉시트 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비공개).

^{148) 2016}년 7월 15일 몽골 아셈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한 \cdot EU FTA 발효 이후 5년간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 한 \cdot EU FTA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브렉시트에 따른 한 · EU FTA 변화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브렉시트가 야기하게 될 가장 중요한 법적 이슈 중 하나는 한 · EU FTA의 효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후 한 · EU FTA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주로 초국가적 기구 (supranational organization)로서 EU가 체결하는 국제 협정의 특수성으로인해 발생한다. 일반적인 국가간, 양자간 무역협정과는 달리 EU는 체결하고자하는 협정의 범위가 EU의 권한을 벗어나는 경우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소위 혼합협정(mixed agreement)을 체결해왔고 한 · EU FTA도이와 같은 혼합협정으로 체결되었다.

한 · EU FTA와 같이 EU와 회원국의 상대방이 하나인 혼합협정은 규율하는 관계의 특성으로 볼 때 양자적 성격을 가지나 협정 당사자는 복수인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되므로 기존의 국가간 협정과는 다른 여러 법적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일반적인 주권국가간의 양자 협정이라면 일방 당사자가 협정 당사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협정이 종료되나, 양자적 혼합협정은 EU 회원국이 협정 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협정 전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다자협정과 같이 지위를 상실한 회원국에 한해서만 협정이 종료된다. 아래에서는 혼합협정에 대해 개관하고 이를 토대로 브렉시트로 인해 한 · EU FTA의 효력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혼합협정 문제

EU가 전통적인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와는 달리 회원국이 기구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주권을 제한한 초국가적 기구라고는 하나 회원국으로부터 모든 분야에서 권하을 행사하도록 위임받지는 못하였다. EU

의 권한은 배타적 권한(exclusive competence), 149) 공동 권한(shared competence), 150) 지원, 조정, 보조 권한(supporting, coordinating or supplementing competence) 151)으로 구분되고, 공동 권한 및 지원, 조정, 보조권한에 속하거나 혹은 회원국이 전적인 권한을 갖는 사항을 다루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혼합협정(mixed agreement)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한 · EU FTA도 한국을 한쪽 당사자로, EU와 그 회원국을 다른 쪽 당사자로 하는 혼합협정으로 체결되었다.

이론적으로 회원국의 EU 탈퇴가 혼합협정의 효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하다. 첫째, 혼합협정의 성격을 다자협정으로 보아 회 원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여전히 협정의 당사자로 협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는 주장이다. 둘째, EU가 배타적 권한을 갖지 못하는 분야에서는 EU를 탈퇴한

¹⁴⁹⁾ EU 기능조약 제3조는 다음의 분야에서 EU가 배타적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관세 동맹(customs union) ② 내부 시장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경쟁 규칙 제정(the establishing of the competition rules necessary for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③ 유로 사용 회원국의 통화 정책(monetary policy for the Member States whose currency is euro) ④ 공동어업정책에 따른 해양생물자원 보존(the conservation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under the common fisheries policy) ⑤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 이 밖에도 기능조약제3조는 유럽연합의 입법행위(legislative act)에서 체결을 명시하고 있는 국제협정의 체결 또는 국제협정의 체결이 유럽연합의 내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하고, 공동 규칙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범위를 변경시키는 경우, 그 국제협정의 체결을 유럽연합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¹⁵⁰⁾ EU 기능조약 제4조는 다음의 분야에서 EU와 회원국이 공동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내부 시장(internal market) ② 사회 정책(social policy) ③ 경제, 사회, 영역 통합(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 ④ 농업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를 제외한 어업(agriculture and fisheries, excluding the conservation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⑤ 환경 (environment) ⑥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사) 운송(transport) (아) 트랜스 유럽 네트워크(trans-European networks) ⑦ 에너지(energy) ⑧ 자유, 안보 및 사법 분야(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⑨ 공공보건 문제에 있어서 공동안전(common safety concerns in public health matters). 이들 분야에서는 EU가 입법행위(legislative act)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면 더 이상 회원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EU가 배타적 권한을 갖게 된다. 한편 공동 권한에 속하는 연구, 기술개발 및 우주 관련 분야,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의 경우 EU의 권한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회원국이 계속해서 공동 권한을 보유한다.

¹⁵¹⁾ EU 기능조약 제6조는 다음의 분야에서 EU가 회원국의 행위를 지원, 조정, 보조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건강 보호 및 증진(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human health) ② 산업(industry) ③ 문화(culture) ④ 관광(tourism) ⑤ 교육, 직업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youth and sport) ⑥ 시민 보호(civil protection) ⑦ 행정 협력(administrative cooperation).

회원국에 대해 협정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다음의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 · EU FTA와 같이 협정 상대방이 하나인 EU 혼합협정 은 통상 회원국이 EU를 탈퇴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협정의 또 다른 당사자가 되 지 못하는 양자협정 성격을 갖는다. 한 · EU FTA도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n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ther part"로 하여 동 협정이 양자협정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152) 회원국이 권한을 갖는 문화 분야 협력에 있 어서도 "a party"와 "the other party" 등 양자적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153)

둘째, EU 법상 권한 배분 원칙에 따라 협정 규정별로 권한을 EU와 회원국 간에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EU와 회원국이 공동 권한을 갖는 경우에도 회원국은 EU가 해당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154) 즉 회원국과 EU의 공동 권한 범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EU의 권한 행사 여부에 따라 변화하고, "EU의 권한 행사"의 개념도 CJEU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혼합협정을 조항별로 EU 내부 권한 배분에 따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다. 155) 만약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조항이

¹⁵²⁾ 고영노(2016), p. 50 참고.

¹⁵³⁾ 문화협력위원회에 관한 문화협력 의정서 제3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Party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Party in the Committee on Cultural Cooperation regarding any matter of mutual interest arising under this Protocol..."

¹⁵⁴⁾ EU 기능조약 제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When the Treaties confer on the Union a competence shared with the Member States in a specific area, the Union and the Member States may legislate and adopt legally binding acts in that area. The Member States shall exercise their competence to the extent that the Union has not exercised its competence. The Member States shall again exercise their competence to the extent that the Union has decided to cease exercising its competence."

¹⁵⁵⁾ 고영노(2016), p. 50 참고. 한편 과거에는 EU 입법이나 EU 내 공동 입장(common position) 형성 등 절차적으로 명확한 경우에 EU의 권한 행사가 인정되었으나 최근 CJEU는 대외적 행동에 대한 EU 내의 전략 수립 정도만 있어도 EU의 권한 행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관련한 판례로는 Case C-246/07, Commission v Sweden [2010] ECR I-3317 참고.

EU의 권한에 속하는 한 · EU FTA와 같은 통상협정의 경우 나머지 조항이 탈퇴한 회원국에 적용되더라도 협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므로 탈퇴한 회원국이 협정의 독립된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156)

본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한 · EU FTA의 독립된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한 · EU FTA 조항, 특히 영역적 적용 조항은 EU를 탈퇴하는 회원국이 한 · EU FTA의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회원국의 EU 탈퇴 시 탈퇴한 회원국에 대해 FTA가 종료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 영역적 적용 조항에 의한 협정의 자동 종료

한 · EU FTA의 영역적 적용 범위를 규정한 제15.15조 제1항은 "이 협정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적용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그 조약들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이 협정에서 "영역"이라는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의미로 이해된다"고 하여 한 · EU FTA가 EU 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EU 조약 제50조 제3항에 따라 영국의 EU 탈퇴협정이 발효되거나 탈퇴협상 개시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유럽이사회가 협상기간 연장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 EU 조약과 EU 기능조약은 영국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 한 · EU FTA도 제15.15조 제1항에 따라 영국에 대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156) &#}x27;한 · EU FTA 서명 및 잠정 적용에 대한 이사회 결정'은 EU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볼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형사적 집행(criminal enforcement)에 관한 조항(협정 제10.54 내지 10.61조)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4조 제3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조 및 제8조 내지 제9조를 협정의 잠정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물론, 협정의 잠정적용 대상 규정이 EU의 권한 배분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통해 협정이 다루고 있는 회원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Council Decision 2011/265/EU, Article 3(2) 참고.

다. 협정의 폐기

영역적 적용 조항에 의한 협정의 자동 종료 외에도 브렉시트 이후 한국이한 · EU FTA 제15.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영국에 대해 협정을 폐기하는 것이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157) 제15.11조 제2항은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폐기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폐기는 제2항에 따른 통보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여 협정 당사자의 일방적인 협정 폐기권을 규정하고 있다.

한 · EU FTA 제15.11조 제2항이 규정한 협정의 폐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해 협정 전부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사자 일부에 대해서만 협정을 종료시키는 것도 가능하므로¹⁵⁸⁾ 영국에 대해서만 협정을 폐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폐기 의사 통보 후 협정이 폐기되기까지 6개월이 소요되고, 영국의 EU 탈퇴 이전에 우리나라가 협정 폐기를 선언할 실익이 없으며, 협정을 폐기하지 않아도 영역적 적용 조항에 의해 협정이자동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제15.11조의 실무적 효용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한 · EU FTA와 한 · 영 FTA

EU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국의 EU 탈퇴를 「비엔나 조약법 협약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이하 VCLT」제61조

¹⁵⁷⁾ 조약의 "종료"와 "폐기"는 술어상 구분되는 개념이다. 조약의 "종료(termination)"는 조약이 발효 이후 특별한 사정의 개입으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조약의 "폐기(denunciation)"는 당사자의 선언으로 조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김대순 (2013), pp. 190~196 참고.

¹⁵⁸⁾ Giegerich(2012), pp. 945-962.

의 "사정의 근본적 변경"으로 보아 한 · EU FTA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 법원에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되고,159)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FTA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이유로 FTA 폐기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한국과 EU는 한 · EU FTA에서 영국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는 협정 개정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협정의 효력이 계속해서 양측에 유지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이후 한-EU 관계는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한-영 관계는 상황이 훨씬 복잡하다. 한 · EU FTA가 영국에 대해 종료되는 상황에 대비해 한국과 영국은 우선 한 · EU FTA에 근거해 부여하던 양자간 무역특혜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혜를 유지하는 경우 양국은 크게 한 · EU FTA 개정을 통해 영국에 대한 한 · EU FTA 효력을 유지하는 방안과 한 · EU FTA를 영국에 대해 종료시키고 영국과 새로운 FTA를 체결하는 방안과 한 · EU FTA를 영국에 대해 종료시키고 영국과 새로운 FTA를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반면 특혜를 포기하거나 한 · EU FTA 종료 직후 한 · 영FTA 체결까지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양국은 통상 관련 국내법을 상호 무역에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보다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력 유지

브렉시트 이후 한 · EU FTA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영국을 EU와는 별개인 제3의 당사자로 하는 협정으로 개정하여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 · EU FTA 효력을 영국에 대해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 · EU FTA 제15.5조 제 1항은 "양 당사자는 협정의 개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자

¹⁵⁹⁾ Aust(2013), p. 263.

가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발표한다"고 하여 당사자가 합의에의해 협정을 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U 조약 제4조 제3항의 성실한 협력 의무(Duty of Sincere Cooperation)에 따라 EU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는 공통통상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 국이 독자적으로 제3국과 협상에 임할 수 없으므로 한 · 영 FTA도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나 협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60)이 경우 영국의 EU 탈퇴 시부터 한 · 영 FTA 체결 시까지 한 · EU FTA에 따라 한 · 영 간 무역에 적용되던 모든 특혜가 사라지게 된다. 한 · EU FTA를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에 적용할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에 영국을 제3의 당사자로 하는 협정 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한 · EU FTA를 영국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EU와 관세동맹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발생하므로 브렉시트 이후 제3국과 독자적인 통상 협상을 희망하는 영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161)

둘째, 한 · EU FTA가 혼합협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영국을 제3의 당사

¹⁶⁰⁾ EU 조약 제4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quot;Pursuant to the principle of sincere cooperation, the Un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in full mutual respect, assist each other in carrying out tasks which flow from the Treaties.

The Member States shall take any appropriate measure, general or particular, to ensure fulfilment of the obligations arising out of the Treaties or resulting from the acts of the institutions of the Union.

The Member States shall facilitate the achievement of the Union's tasks and refrain from any measure which could jeopardise the attainment of the Union's objectives."

CJEU는 혼합협정과 관련하여 동 조항으로부터 나오는 '성실한 협력 의무'에 따라 회원국이 EU의 배 타적 권한 사항은 물론 공동 권한 사항에 대해서도 회원국이 독자적 행동으로 EU의 국제적 행위에 있어서의 단일성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관련한 보다 자세한 논의로는 Casteleiro and Larik(2011), p. 524 참고.

¹⁶¹⁾ 반면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와 관세동맹을 유지하는 경우 "상품의 관세 대우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한, 이 협정은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유럽연합 관세영역지역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 한 · EU FTA 제15.15조 제2항에 따라 상품 관세 대우와 관련해서는 한 · EU FTA 관련 규정을 영국에 그 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로 하는 개정을 위해서는 EU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여 장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고¹⁶²⁾ 경우에 따라서는 개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명백하게 회원국 권한에 속하는 규정으로 분류되어 잠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조항¹⁶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대표하여 협상하고 회원국의 비준 없이 EU 내부 개정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 · EU FTA에서 영국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기술적인 개정과는 달리 영국을 제3의 당사자로 하는 개정은 혼합협정 개정 원칙에 따라 회원국의 비준이 요구된다고 볼 여지도 있어 개정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

언급한 법적 문제들을 비롯한 기타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영구적으로 영국을 제3의 당사자로 하는 협정 개정이 어렵다면 한 · 영 FTA 발효 시 또는 양국에 다른 통상 규범을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 · EU FTA를 영국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하고 EU 권한에 속하는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과 영국은 독자적인 통상협정 체결이 가능하고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도 한 · EU FTA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한시적으로만 허용하게 되므로 잠정적용을 하는 데 있어 EU 회원국의 반대도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개정 협상을 탈퇴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 영국에 대해 한 · EU FTA가 종료되고, 한국과 영국이 상호 무역에 부여하던 특혜를 잃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한 · EU FTA를 개정하여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에 적용하는 안을 고려하는 경우 탈퇴 협상기간 중에 개정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4)

¹⁶²⁾ 혼합협정인 한 · EU 기본협정 개정의 경우 서명(2010. 5. 10)부터 발효(2014. 6. 1)까지 4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163) &#}x27;한 · EU FTA 서명 및 잠정 적용에 대한 이사회 결정'은 지적재산권의 형사적 집행(criminal enforcement)에 관한 조항(협정 제10.54조 내지 제10.61조)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4조 제 3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조 및 제8조 내지 제9조를 잠정 적용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다. Council Decision 2011/265/EU, Article 3(2) 참고.

¹⁶⁴⁾ 이와 같은 견해로는 Cremona, Marise(2016. 7. 25)이 있음.

나. 한·영 FTA 체결

새로운 한 · 영 FTA 체결은 한국과 영국의 무역 당국이 한 · EU FTA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자주 거론하고 있는 안이다. 165) 한 · EU FTA가 영국에 대해 종료됨에 따라 한국과 영국이 양국에 부여하던 무역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무제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한 · 영 FTA 체결을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제도적 문제로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협상 추진 및 체결 시기이다. 한 · EU FTA를 대체할 통상 규범의 협상 시기는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이 무역특혜를 유지할수 있는지 여부 및 유지할수 없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둘째, 한 · EU FTA의 내용을 새로운 한 · 영 FTA에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통상협정의 양허는 무역 규모, 무역수지, 국내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다르게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기간도 통상 수년에 이른다. 그러나 한 · EU FTA의 종료 이후 협상을 시작할 경우 상당기간 동안 한 · 영 통상관계에 있어 무역특혜 상실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 영국이 50여 개가 넘는 EU 통상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시한 · EU FTA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 영 FTA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수 있을 것이다.166)

독자적인 한 · 영 FTA 체결 추진은 한 · EU FTA를 개정하여 영국에 계속 적용하는 방안보다는 EU의 영향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통상협상이 가능하다는이점이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 이전에 영국이 협상에 나서는 경우 상술한 바와

¹⁶⁵⁾ 정경환(2016. 10. 8); 윤병세(2016. 6. 24).

¹⁶⁶⁾ 브렉시트가 한 · 영 통상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 EU FTA의 내용을 그 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 · 영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제현정, 정혜선(2016), p. 33 참고.

같이 '성실한 협력 의무'에 위반 소지가 있고, 브렉시트 이후에 협상에 임하는 경우 한 · EU FTA가 종료되고 새로운 한 · 영 FTA가 발효되기까지 양국간에 무역특혜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시간적 제약 등 어려움으로 인해한 · 영 FTA에 한 · EU FTA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독립적인 통상협상을 하지 못한다는 국내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통상협정을 체결할 수 없게된다는 문제가 있다.

다. 통상 관련 국내법 적용

양국이 양자 무역특혜를 포기하거나, 영국에 대한 한 · EU FTA 종료 시부터 한 · 영 FTA 체결 전까지 시간적 공백으로 브렉시트 이후 양국에 적용할 양자 통상협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 영 간 무역에 적용될 규범으로 종종 WTO 협정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우선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을 독자적인 WTO 회원국으로 볼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WTO 협정 제11조 제1항은 WTO 협정 및 다자간 협상을 수락하고, GATT 1994 및 GATS에 자국의 양허를 부속시킨 GATT 1947 체약국을 WTO의 원회원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167) 이에 따르면 EU를 통해 GATT 1994와 GATS에 부속하는 양허를 제출한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독자적인 WTO의 원회원국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168) 더하여 영국이 독자적인 WTO의 회원국 지위를 유

¹⁶⁷⁾ WTO 협정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contracting parties to GATT 1947 as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the European Communities, which accept this Agree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and for which Schedules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 are annexed to GATT 1994 and for which 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 are annexed to GATS shall become original Members of the WTO."

¹⁶⁸⁾ 같은 견해로 Fernekeß, Palevičienė and Thadikkaran(2013), pp. 53-54 참고.

지한다고 하더라도 EU와 관세동맹을 맺지 않는 한 독자적인 상품 양허 및 별도의 서비스 양허를 164개 WTO 회원국과 협상하여 확정해야 하는데, 타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자국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회원국이 다수나올 경우 타결 자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169)

결국, 브렉시트 이후 적용할 양자 통상협정이 없는 경우 영국과의 무역에 적용할 통상협정이 존재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영국이 관세율, 원산지, 서비스 무역 등 통상 관련 국내 입법을 완료하고한국과 영국이 각자 관련한 국내법을 상호 무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서비스 무역에는 대부분 입법 없이 관련 국내 법령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상품 무역에 대해서는 EU의 WTO 양허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영국이 국내 입법을 완료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양국간무역에 적용할 규범에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한국과 EU는 한 · EU FTA의 발효 5주년을 맞이했다. 발효 5주년을 맞이하여 이 FTA는 상품양허 분야와 비관세, 서비스 분야 등에서 명실상부하게 수준 높은 FTA로 올라섰다. 양국의 상품 양허율은 각각94.6%와 100%에 달할 정도이고, 비관세분야나 서비스에서 당초 약속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 · EU FTA 발효 5년 이후영국의 관심분야 이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브렉시트는 영국과 한국사이에 새로운 특혜협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발효 5년 후 한 · EU FTA의 현 상황은 리스본 협정 이후 EU의 권한 강화, 양국 통상관계의 상황 변화, 이

¹⁶⁹⁾ 같은 견해로, Eeckhout(2016) 참고.

행 협의와 함께 브렉시트에 의해서 더욱 더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와 동시에 한 · EU FTA는 영국에 대해 종료되므로 한국과 영국은 양국의 무역에 적용할 통상 규범을 되도록 신속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 활용 가능한 한 · 영 간 무역 규범으로 한 · EU FTA, 한 · 영 FTA와 한국과 영국의 통상관련 국내법을 살펴보았다. 브렉시트 이후한 · 영 통상관계는 영국과 EU 관계, 탈퇴협정의 내용, 영국의 국내 정치상황등 여러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므로 탈퇴협정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 형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 · EU FTA에 따라 양국에 부여하던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한 · 영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영국이 양자 통상협정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양국 통상관계를 구상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과 영국의 통상 당국의 입장으로 미루어 볼 때 양국은 새로운 한 · 영 FTA 체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 영 FTA 체결을 추진할 경우 EU 법상 '성실한 협력 의무'로 인해 탈퇴협정 타결 전에 영국이 독자적으로 한국과 FTA 협상을 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한시적이지만 양국간 무역특혜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 · EU FTA를 개정하여 한 · 영 FTA 발효 시까지 한시적으로 영국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개정 협상에 영국이 EU와 함께 나서야 하므로 협정 종료 이전에도 '성실한 협력 의무'에 위반하지 않고 협상이 가능하며 협정 종료 전에 협상을 추진하게 하므로 양국의 무역특혜가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에 용이한 방안이다. 다만 전 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 EU FTA가 EU 회원국의 비준이 요구되는 혼합협정이므로 개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잠정 적용 등을 통해 무역특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제6장 **《**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016년 6월 23일에 실시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영국국민은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하였다. 국민투표 결과 이후 영국의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2017년 적절한 시기에 영국정부와 EU는 탈퇴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탈퇴의 과정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탈퇴협상이 2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큰데 이 경우 협상 연장의 동의를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문제가 있으며, 탈퇴협상이 끝나 협정문이 완성된다고 할지라도 EU의 배타적 권한의 범위에 따라 각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할 분야에 대한 처리문제, EU 의회 승인과정에서 영국 의원들의 투표권 부여 문제 등 곳곳에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 제2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의 관계를 상정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단일시장 접근성 문제인데, 이는 4대 이동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독자적통상정책과 이민 통제권, 동일성 원칙의 유지여부가 단일시장 접근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패스포팅 권한을 유지하려면 4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할수 없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 단일시장모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분적단일시장모형의 경우에 자연인의 이동 중 일부 범주를 제한할수 있는데 이것은 FTA에서의 허용수준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타 3대 이동의 자유를 EU가 받기 어렵다. 비단일시장모형으로서 FTA의 경우 패스포팅 권한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 브렉시트는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계경제의 GDP를 2017년 0.06~0.34%, 2018년에는 0.12~0.66% 감소시키며, 우리 경제의 GDP에도 2017년 0.06~0.35%, 2018년 0.15~0.78%만큼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브렉시트는 2017~18년 사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2p정도 상

승시키며, 실업률도 약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와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보다 투자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비는 최대 0.38%감소하는 데 반해, 투자와 수출은 각각 0.05~0.74%, 0.08~1.18% 감소가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간 경제관계를 약화시키고 이러 한 효과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는 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에서 오히려 긍정 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드브렉시트와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를 나 누어서 분석해 보았는데, 각각의 경우 우리 경제에 0.088%와 0.043%의 경제 성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되어, 하드브렉시트의 경우가 소프트브렉시 트의 경우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 영국과 EU 경제에는 큰 악영향이 예상되는데,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영국과 EU는 각각 -1.56%, -0.18%,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각각 -0.949%, -0.133%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영국과 EU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한 · 영 FTA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 · 영 FTA가 없는 경우와 비교를 해 보면 한 · 영 FTA를 체결할 경우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0.038%p. 소프트브 렉시트의 경우 0.037%p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 · 영 FTA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영국과 EU 간 탈퇴협상의 최종형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나 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은 한국과 FTA를 맺는 것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0.018%p, 소프트브렉시트의 경 우 0.017%p 정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EU는 반대로 어느 경우에서든지 한 · 영 FTA가 없는 경우 0.002%p 정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의 경 우 한 · 영 FTA의 체결은 브렉시트로 인한 이득을 약간 감소시킬 수 있으나 그 영향은 미미하다.

한편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전 산업의 대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세

계 투입산출분석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브렉시트는 우리 산업의 대영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제3국의 대영 수출이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3국 수출이 영향을 받는 경로인데 직접효과의 34.4%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보다 국내 부가가치 비율이 낮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잘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간접효과가 더 클 것이다.

다음으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제조업 세부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함수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먼저 산업별 브렉시트로 인한 GDP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파악해 보았는데, 우리의 대EU 수출에서 1차금속과 화학산업이 EU의 GDP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산업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영국 수출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산업이 GDP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고, 섬유 및 가죽산업이 GDP 충격에 가장 둔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브렉시트로 인하여 EU나 영국의 GDP가 감소하면 일차적으로 1차금속과 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등의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상은 단기적 거시경제 변화 분석 시 사용한 시나리오별로 추계해 보았을 때도 유사한 추세를 보여준다. 즉, 대EU 수출에서는 1차금속과 화학, 섬유가죽이, 대영 수출에서는 자동차, 화학, 1차금속이 영향을 받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추정하였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기타수송기기와 기계류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생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직물의 경우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 의복과 전자, 화학, 기타제조업에서 생산이 증가하나 그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 반면 기타수송기기, 기계, 자동차, 철강, 섬유, 비철금속에서 생산이 감소한다.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면,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에는 그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 · 영 FTA가 없는 경우에는 하드브렉시트의 경우 산업에 따른 증감이 혼재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프트브렉시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산업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의 금융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큰 것으 로 나타나지 않았다. 먼저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 영업활동을 보면, 국내 금융회 사의 관점에서 브렉시트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패스포트 제도의 유지 여부인데, 영국에 진출한 국내은행들의 경우 상당수는 대륙에 지점이나 현지법 인이 있고, 없는 은행들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영국에 집중되어 있어 패스포 팅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활동 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내 금융회사의 사업 현황을 종합해 볼 때 단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영국을 포함한 EU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 로 평가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국내 금융회사가 유럽 지역의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는 해외사업 전략을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 금융기관의 국 내 진출을 보면, 한국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럽 투자자들의 투자여력과 한국 자산의 상대적 매력도이다. 즉, 브렉시트로 인한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주요 변화는 규제적인 요인보다는 경제적 인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특히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및 EU의 경제성장 률 둔화 수준과 이에 따른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여력 및 포트폴리오 전 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한 · 영, 한 · EU 간 통상관계는 한 · EU FTA의 개정, 영국과 EU 관계, 탈퇴협정의 내용, 영국과 EU의 국내 정치상황 등 여러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 · EU FTA 발효 5년이 지나 새로운 단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 FTA에 의해 양국에 부여하던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한국과 영국이 양자 통상협정을 유

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양국 통상관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EU 탈퇴와 동시에 한 · EU FTA는 영국에 대해 종료되므로 한국과 영국은 양국의 무역에 적용할 통상 규범을 되도록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 한국과 EU는 한 · EU FTA에서 영국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는 협정 개정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협정의 효력이 계속해서 양측에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영 관계에서는 우선 새로운 한 · 영 FTA의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한 · 영 FTA 체결을 추진할 경우 EU 법상 '성실한 협력 의무'로 인해 탈퇴협정 타결 전에 영국이 독자적으로 한국과 FTA 협상을 시작할 수 없으므로 한시적이지만 양국간 무역 특혜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 EU FTA를 개정할 때, 영국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 · 영 FTA 발효 시까지 한시적으로 한 · EU FTA를 영국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개정 협상에 영국이 EU와 함께 할 수 있으므로 협정 종료 이전에도 협상이 가능하고, 협정 종료 전에 협상을 추진하게 하므로 양국의 무역 특혜가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에도 좋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 · EU FTA가 혼합협정의 성격이 있으므로 개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잠정 적용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통상전문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미처 예상치 못한 결과라서 더욱 당혹감은 커졌는데, 이러한 상황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발표 이후 전 세계 외환, 금융시장의 출렁임에서 가늠할 수 있었다. 다행히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은 이후 충격을 수습하고 정상화되었으나, 2017년부터 시작될 탈퇴협상은 유럽체제의 불안정을 심화시키

고 세계경제의 또 하나의 위험요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브렉시트 탈퇴협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과 법적 쟁점, 거시경제적 영향 및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 · EU FTA를 포 함한 한 · EU 통상관계의 변화 등에 대하여 폭넓게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과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브렉시트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유 행처럼 번지고 있는 반세계화, 자국중심주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의 개방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선진국 국민들은 지금의 경제적 침체를 개방화와 세계화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브렉 시트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개방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국민에게 제 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대외개방을 통해서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경쟁을 제고하여 경제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통상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개방의 효과를 엄밀히 분석하고 개방이 실제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에 따른 국내 경제의 충격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평가보고서가 모든 개방정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도 우리정부는 FTA 등 개방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이행평가 등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평가를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한 종합 평가로 확대하고 이를 규범화하여 개방적통상정책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볼 때 브렉시트는 부정적 영향이 있고, 특히 한국의 대영, 대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조업 특히 1차금속, 자동차, 화학 등 우리의 핵심 수출상품에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산업에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많이 편입된 산업일수록 간접효과가 크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더 클것이다. 그러므로, 영국, EU에 대한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다른 주요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임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 업계 및 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분석결과에 따르면, 영국과 EU의 관계는 단일시장 접근성 및 인력이 동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제3국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국간의 관계보다 양국과 우리나라가 어떠한 무역특혜관계를 재설정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영국과 EU 간의 관계가 어떻게 결정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대유럽 통상전략은 일단 영국과 유럽 대륙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단위로 생각했던 EU를 분리하여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영 및 대EU 통상전략을 수립할수 있을 것이다. 이때 대영 통상전략은 영국이 갖고 있는 다층적인 경제관계,즉 대서양 관계(미국-영국), 영연방(Commonwealth), 영국-일본, 영국-중국관계, 그리고 영국-EU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연방,일본, 중국 등 영국과 주요 대외통상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EU 국가로서의 영국'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던 범주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넷째, 금융·자본시장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유럽 대륙에서 영국의 활동은 좀 위축될 수 있으나 여타 지역에서보다 공격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영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대영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패스포팅 권한의 상실이 한·영 및 한·EU 간 금융·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차원에서 영국자본을 더욱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다섯째, 한 · EU FTA의 개정작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작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협정문에 대한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를 덧붙이는 형태로 영국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70) 그러나 이 경우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한 · EU FTA 협상 당시

^{170) 2013}년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후에는 한 · EU FTA 협정문과 별도로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였다. 추

영국의 이해가 EU의 그것과 비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영국조항의 삭제는 한국과 EU 간 이해의 균형을 깰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한 · EU FTA 개정작업이 단순히 브렉시트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효 5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국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해야할 것이다. 또한한 · EU FTA 개정 당시에한·영특혜무역관계의갑작스러운 소멸을 예상하여한·영관계에서한·EU FTA 잠정적용 또는MFN 관계 적용유예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여섯째, 한 · 영 FTA와 관련하여 영국은 한국과 잠정협정의 형태로 한 · EU FTA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이 잠정협정을 새롭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잠정협정 기간 중 상대방의 예상 요구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특히 과거 한 · EU FTA 협상 당시 영국 측의 요구가 있었으나 EU 차원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 양국간 산업구조 차이로 인한 비교우위 분야, 그리고 영국 · EU 간 누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서비스, 사업서비스, 법률서비스 등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 농산물 지재권 추가 보호, 투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곱째, 한 · EU FTA에서 EU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부 조항이 영국에 대해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범위는 지식재산권의 형사적 집행과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조항에 한정되어 사실상 협정 본문의 대부분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영국과의 정책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브렉시트와 같은 반세계화적 사건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대외개방을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우호적인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

가의정서에는 서문에 크로아티아를 추가하고, 이어지는 서비스 양허표에 크로아티아에 대한 양허를 추가하였다.

WTO 등 다양한 국제기구나 G20, ASEM, APEC 등 다자간 협력체에서 보호 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개방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원택, 조홍식. 2009. 『하나의 유럽: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푸른길.
- 고영노. 2016. 「Brexit의 법적 영향: 한국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No. 129.
- 권민경. 2015. 「한·EU FTA 발효 5년을 맞이하여」. 『FTA무역리포트』. 10호, 국제원산지정보원.
- 김대순. 2013. 『국제법론』(제17판). 삼영사.
- 김용복, 곽법준. 2009. 「환율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제378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김흥종. 2016. 브렉시트 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비공개). (7월 1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브렉시트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통 상자원부 수탁용역과제.
- _____. 2017. 『브렉시트에 따른 중장기적 경제 환경 변화 및 대응방향』. 기획재 정부 수탁연구과제.
- 윤성훈. 2005. 「환율 변화가 품목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 제 22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이재랑, 이병창. 2005. 「업종별 실질실효환율을 이용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 분석」. 『경제분석』, 제11권 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이재열, 한희준. 2001. 「품목별 수출입 행태분석과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 (2월)
- 정규철. 2016. 「글로벌 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KDI 경제전망』, 2016 상반기. KDI.
- 제현정, 정혜선. 2016. 「한 · EU FTA와 브렉시트(Brexit): 한 · EU FTA 5주년 평가와 브렉시트 이후 전망」. *IIT Trade Focus*, No. 2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진병진. 2016. 「한·EU FTA 발효 5년의 성과와 대응방안」. 『FTA무역리포트』,

- 14호. 국제원산지정보원.
- 천창민. 2016.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규제환경 영향과 시사점」. 『자본시장리부』, 가을호.
- 한영기 외. 1996. 「품목별 수출입 행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1월)

[국외문헌]

- Aust, Anthony. 2013. *Modern Treaty Law*, 3rd ed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undenbacher, Carl ed. 2016. The Handbook of EEA Law. Springer.
- Casteleiro, Andés Delgado and Joris Larik. 2011. "The Duty to Remain Silent: Limitless Loyalty in EU External Relations?" *European Law Review*, No. 36.
- Engle, R.F. and C. W. J. Granger. 1987.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Econometrica*, 55(2).
- EU 집행위원회. 2016. "The Economic Outlook after the UK Referendum: A First Assessment for the Euro Area and the EU." European Commission.
- Fernekeß, Katrin, Solveiga Palevičienė and Manu Thadikkaran. 2013. "The Future of the United Kingdom in Europe: Exit Scenarios and Their implications on Trade Relations." *Trade and Investment Law Clinic Papers.* Centre for Trade and Economic Integration, Graduate Institute Geneva.
- Fontagne, L., A. Guillin, and C. Mitaritonna. 2011. "Estimations of Tariff Equivalents for the Service Sectors." CEPII Working Papers, 2011-24.
- Giegerich, Thomas. 2012. "Article 54: Termination of or withdrawal from a treaty under its provisions or by consent of the parties." Dörr Oliver and Schmalenbach Kirsten ed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Springer.
- Global Counsel. 2015. "Brexit: The Impact on the UK and the EU." (June)

- Goldstein, M. and M. S. Khan. 1978. "The Supply and Demand for Exports: A Simultaneous Approac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0, No. 2.
- _____. 1985. "Income and Price Effects In Foreign Trade."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II.
- Hillion, Christophe. 2016. "Leaving the European Union, the Union way: A legal analysis of Article 50 TEU." *European Policy Analysis*, No. 8.
- HM Government. 2016a. "HM Treasury analysis: the long-term economic impact of leaving the EU."
- _____. 2016b. "HM Treasury analysis: the immediate economic impact of leaving the EU."
- _____. 2016c. "The process for withdrawing from the European Union." (February). The Secretary of State for Foreign and Commonwealth Affairs UK.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51 6/ldselect/ldeucom/138/138.pdf(검색일: 2016. 9. 25).
- Hofmeister, Hannes. 2015. "Splendid Isolation or Continued Cooperation? Options for a State After Withdrawal from the EU." *Columbia Journal of European Law*, No. 21.
- Hollis, Duncan B. 2012. "Defining Treaties." Duncan B. Hollis ed. *The Oxford Guide to Trea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House of Commons. 2013. "Leaving the EU." Research Paper 13/42, No. 191.
- House of Lords. 2016. "The process of withdrawing from the European Union." 11th Report of Session 2015-2016. European Union Committee.
- IMF. 2009. "Crisis and Recovery." World Economic Outlook-April.
- Johansen, S. and K. Juselius. 1990.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nd Inference on Cointegration."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2.
- Koopman, Robert, Zhi Wang, and Shang-Jin Wei. 2014. "Tracing Value-Added and Double Counting in Gross Exports." *American*

- Economic Review, 104(2), 459-494.
- MacKinnon, J. 1996. "Numerical Distribution Functions for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1.
- Miller, Vaughne. 2016. "EU External Agreements: EU and Procedures."
 Briefing paper CBP 7192, 28. House of Commons.
- Minford, P., S. Gupta, V, Le, V. Mahambare, and Y. Xu. 2015. *Should Britain Leave the EU? An Economic Analysis of a Troubled Relationship.* Edward Elgar in association with the IEA, second edition.
- Minford, Patrick. 2016. "Brexit and trade: what are the options?" The economy after Brexit: Economics for Brexit. Economists for Brexit.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70a 10a460b5e93378a 26ac5/t/5722f8f6a3360ce7508c2acd/1461909779956/Economists+for+Brexit+-+The+Economy+after+Brexit.pdf(검색일: 2016. 12. 28).
- OECD. 2016. "The consequenc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Britain outside EU."
- Open Europe. 2015. "The consequenc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Britain outside EU."
- Pesaran, M. H., Y. Shin and R. J. Smith. 2001. "Bounds Testing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Level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6(3).
- Shearman & Sterling. 2016. "Brexit: What Does the Vote Mean for Business?" (June 24)
- Wyrozumska, Anna. 2013. "Article 50: Voluntary Withdrawal from the Union." Hermann-Josef Blanke and Stelio Mangiameli eds.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EU): A Commentary*. Springer.

[온라인 자료]

강유덕, 임유진. 2015. 「EU 역내 노동이동의 변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5-3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global_econo&nttId=185663(검

- 색일: 2016. 9. 28).
- 김흥종, 임유진. 2016.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6-1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global_econo&nttId=189550(검색일: 2016. 9. 2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2010.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10월 6일). http://fta.go.kr/eu/data/1/(검색일: 2016. 12. 15).
- 윤병세. 2016. 「브렉시트 관련 "한·영 FTA 등 다양한 대책 마련하겠다"」. (6월 24일).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 y?SCD=JF31&newsid=03309526612685000&DCD=A00603&Ou tLnkChk=Y(검색일: 2016. 12. 1).
- 정경환. 2016. 「한·영 재무장관 "자유무역 중요...FTA 긴밀 협력」. (10월 8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0080000 32 (검색일: 2016. 12. 1).
- BBC. 2016a. "Conservative conference: Theresa May's speech in full." (October 5). http://www.bbc.com/news/uk-politics-37563510 (검색일: 2016. 12. 18).
- _____. 2016b. "Brexit ruling: : Lord Chancellor backs judiciary amid row." (November 5). http://www.bbc.com/news/uk-politics-37 883576(검색일: 2016. 12. 18).
- Boffey, Daniel and Dan Glaister. 2016. "Brexit high court decision means nothing has been ruled out." *The Guardian.* (November 6).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6/nov/06/brexit-high-court-decision-nothing-ruled-out(검색일: 2016. 11. 11).
- Cremona, Marise. 2016. "Negotiating Trade Deals Before Brexit?" (July 25). *Social Europe.* https://www.socialeurope.eu/2016/07/neg otiating-trade-dealsbrexit/(검색일: 2016. 12. 1).
- Eeckhout, Piet. 2016. "Brexit and trade: the view over the hill." (June 16). London-Brussels One-Way or Return. https://londonbrussels.wordpress.com/2016/06/16/brexit-and-trade-the-view-over-the-hill/(검색일: 2016. 12. 2).
- Henley, Jon. 2016. "EU states set to veto any Brexit deal threatening free

- movement." (September 17).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6/sep/17/eastern-bloc-countries-will-uphold-citizens-rights-to-live-in-uk(검색일: 2016. 10. 21).
- IMF. 2016. "United Kingdom: Selected Issues." IMF Country Report No. 16/169. (June). https://www.imf.org/external/pubs/ft/scr/2016/cr16169.pdf(검색일: 2016. 12. 15).
- Ipsos MORI. 2016. "Issues Index aggregates 2015 Issues Facing Britain." https://www.ipsos-mori.com/researchpublications/researcharc hive/3684/Issues-Index-aggregates-2015.aspx?view=wide(검색 일: 2016. 12. 24).
- Johns, Claire. 2016. "Mario Draghi urges to take tough line with UK in Brexit talks." *Financial Times.* (September 27). https://www.ft.com/content/01b254ae-8400-11e6-8897-2359a58ac7a5(검색일: 2016. 11. 11).
- Piris, Jean-Claude. 2016. "If the UK votes to leave: The seven alternatives to EU membership." (January). Centre for European Union. https://www.cer.org.uk/sites/default/files/pb_piris_brexit_12jan16.pdf(검색일: 2016. 10. 21).
- Reuters. 2016. "Angela Merkel hints Brexit talks could include wriggle room on free movement." *The Guardian.* (November 16).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6/nov/16/angelamerkel-brexit-free-movement-eu(검색일: 2016. 11. 16).
- TheCityUK. 2016. "The UK: Europe's Financial Center." https://www.thecityuk.com/assets/2016/Reports-PDF/The-UK-Europes-financial-centre.pdf(검색일: 2016. 10. 25).
- UCL. 2014. "Positive economic impact of UK immigration from the Euro pean Union: new evidence." https://www.ucl.ac.uk/news/news-articles/1114/051114-economic-impact-EU-immigration(검색일: 2016. 12. 15).
- Watts, Joe. 2016. "Theresa May indicates 'hard Brexit' and dismisses free movement deal to keep single market access." *Independent*. (October 3). http://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

- theresa-may-hard-brexit-soft-article-free-movement-deal-single-market-access-a7341886.html(검색일: 2016. 11. 11).
- "Brexit: Asset managers retreat from the City of London." 2016. Financial Times. (July 3). https://www.ft.com/content/080f6a48-3fa0-11 e6-9f2c-36b487ebd80a(검색일: 2016. 12. 15).
- "Minister Flanagan on the UK referendum on its EU membership."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ttps://www.dfa.ie/news-and-media/speeches/speeches-archive/2016/april/flanagan-speech-uk-referendum/(검색일: 2016. 9. 8).
- Z/yen. 2016. "The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20." Z/yen Group. (September). http://www.zyen.com/research/gfci.html(검색일: 2016. 12. 1).

[법률, 협정문 등의 자료]

- WTO 협정문. 「Ma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영문본」.
- EU 조약.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http://eur-lex.europa.eu/resource.html?uri=cellar:2bf140bf-a 3f8-4ab2-b506-fd71826e6da6.0023.02/DOC_1&format=PDF (검색일: 2016. 12. 12).
- EU 기능조약.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http://eur-lex.europa.eu/resource.html?uri=cellar:2bf140bf-a3f8-4ab2-b506-fd71826e6da6.0023. 02/DOC_2&format=PDF(검색일: 2016. 12. 12).
- Council Decision 2011/265/EU. Council Decision 2011/265/EU of 16 September 2010 on the signing, on behalf of the European Union and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ther part [2011] OJ L 168/1.
- Service Directive 2006/123. Directive 2006/1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2006] OJ L 376/36.

- Directive 2004/38/EC. Directive 2004/3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on and their family members to move and reside free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s [2004] OJ L 158/77.
- Directive 2004/58/EC. Directive 2004/5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right of citizens of the Union and their family members to move and reside free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s [2004] OJ L 229/35.
- Directive 2005/36/EC. Directive 2005/3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September 2005 on the recogni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2005] OJ L 255/22.
- Directive 2013/55/EU. Directive 2013/5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November 2013 amending Directive 2005/36/EC on the recogni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Regulation (EU) No 1024/2012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through the Internal Market Information System [2013] OJ L 354/132.
- Regulation (EEC) No 1612/68. Regulation (EEC) No 1612/68 of the Council of 15 October 1968 on freedom of movement for workers within the Community [1968] OJ L 257/2.

[유럽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판결]

Case 24/68 *Commission v Italy* [1969] ECR 193.

Case 106/84 *Commission v Denmark* [1986] ECR 833.

Case 2/73 Geddo v Ente Nazionale Risi [1973] ECR 865.

Case 8/74 Dassonville [1974] ECR.

Case 4/75 Rewe-Zentralfinanz [1975] ECR 843.

Case 120/78 Cassis de Dijon [1979] ECR 649.

Case 249/81 Buy Irish Campaign [1981] ECR 4005.

Case 207/83 Commission v UK [1985] ECR 1201.

Case 324/93 Evans Medical & Macfarlan Smith [1995] ECR I-563.

Case C-470/93 Mars [1995] ECR I-1923.

Case C-12/00 Commission v Spain [2003] ECR I-459.

Case 286/81 Oosthoek's [1982] ECR 4575.

Case 220/81 Robertson and Others [1983] ECR 2349.

Case 155/80 Oebel [1981] ECR 1993.

Case 240/83 ADBHU [1985] ECR 531.

Cases 60 and 61/84 Cinéthèque [1985] ECR 2065.

Case C-120/95 Decker [1998] ECR I-1831.

Case C-244/06 Dynamic Medien v Avides Media [2008] ECR I-505.

Case C-267/91 Keck and Mithouard [1993] ECR I-6097.

Case C-69 and 258/93 Punto Casa and PPV [1994] ECR I-2355.

Cases C-401 and 402/92 *Tankstation t'Heuske and J B E Boermans* [1994] ECR I-2199.

Case 7/78 Regina v Ernest George Thompson [1978] ECR 02247.

Case C-388/95 *Rioja wine exports* [2000] ECR I-3123.

Case C-55/94 Gebhard v Milan Bar Council [1995] ECR I-4165.

Case 33/74 Van Binsbergen [1974] ECR 1299.

Case C-384/93 Alpine Investments v Minister van Financiën [1995] ECR I-1141.

Cases 286/82 and 26/83 Luisi and Carnbone [1984] ECR 377.

Case C-153/02 Neri v European School of Economics [2003] ECR I-13555.

Case C-438/05 *Viking Line* [2007] ECR I-10779.

Case C-169/08 *Regione Sardegna* [2009] ECR I-10821.

Case C-215/01 Schnitzer [2003] ECR I-14847.

Case 197/84 Steinhauser v City of Biarritz [1985] ECR 1819.

Case C-4 and 5/95 *Stöber and Pereira* [1997] ECR I-511.

Case 66/85 Lawrie-Blum [1986] ECR 2121.

Case 139/85 Kempf [1982] ECR 1035.

Case C-3/90, Bernini [1992] ECR I-1071.

Case C-292/89 Antonissen [1991] ECR I-745.

Case C-43/99 Leclere and Deaconescu [2001] ECR I-4265.

Case C-237/94 O'Flynn v Adjudication Officer [1996] ECR I-2617.

Case 298/84 *Iorio* [1986] ECR 247.

Case 316/85 *Leben* [1987] ECR 2811.

Case C-85/96 Martinez Sala [1998] ECR I-2691.

Case C-184/99 *Grzelczyk* [2001] ECR I-6229.

Case C-200/02 Zhu and Chen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04] ECR I-9925.

Case C-224/02, *Pusa* [2004] ECR I-5763.

Case C-367/98 *Commission v Portugal* [2002] ECR I-4731.

Case C-439/97 Sandoz [1999] ECR I-7041.

Case C-302/97 Konle [1999] ECR I-3099.

Case C-11/07 Eckelkamp & Others [2008] ECR I-6845.

Case C-246/07, Commission v Sweden [2010] ECR I-3317.

Case 32/75 Fiorini v SNCF [1975] ECR 1085.

[통계자료]

한국무역협회. 2016.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9~12).

관세청. 2016. 수출입무역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index.do(검색일: 2016. 10. 26).

금융감독원. 2016.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검색일: 2016. 12. 15).

금융중심지원센터. 2016. 금융회사 해외진출현황. http://http://www.fnhubkorea.kr/fhk_kor/foreign/outbound_list6.jsp(검색일: 2016. 12. 15).

Eurostat. 2016. Eurostat DB.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6. 9. 12).

Oxford Economics. 2016. Oxford Economics Global Model Workstation(검색일: 2016. 10. 16).

WIOD. http://www.wiod.org/home(검색일: 2016. 10. 1).

WTO. 2016. WTO Tariff Download Facility. http://tariffdata.wto.org

(검색일: 2016. 10. 28).

[관련자료 목록]

- Miller *et al.* 2016. "Exiting the EU: UK Reform Proposals, Legal Impact and Alternatives to Membership." House of Commons Library Briefing Paper, No. 07214. (February 12)
- Miller, Vaughne ed. 2016. "Exiting the EU: Impact in Key UK Policy Areas." House of Commons Library Briefing Paper, No. 07213. (February 12)



- 1. 세계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 산업 분류
- 2. 투입산출 분석방법론
- 3. HS Code 2단위 품목별 코드 매칭표

1. 세계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 산업 분류

부록 표 1-1. 세계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 산업 분류

н ал
WIOD 본 연구 산업 분류 분류
차판매, 수리, 연료 소매업 서비스업
도매업 서비스업
소매업 서비스업
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업
내륙 운송 서비스업
해운 서비스업
항공운송 서비스업
여행업 서비스업
우편, 통신 서비스업
금융 서비스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건강, 사회복지 서비스업
타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서비스
민간가계서비스 서비스업

자료: WIOD 데이터(검색일: 2016. 10.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투입산출 분석방법론

이 연구의 분석방법론은 기본적으로 Koopman, Wang, and Wei(2014)를 따랐으며, 이 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용하는 세계투입산출표는 [부록 표 2-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산출, 투입, 최종재 수요의행렬로 구성되며 아래의 (식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begin{bmatrix} X_{\text{한국}} \\ X_{\text{영국}} \\ \vdots \\ X_{RoW} \end{bmatrix} = \begin{bmatrix} X_{\text{한국}, \text{한국}} & X_{\text{한국}, \text{영국}} & \cdots & X_{\text{한국}, RoW} \\ X_{\text{영국}, \text{한국}} & X_{\text{영국}, \text{영국}} & \cdots & X_{\text{영국}, RoW}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X_{RoW, \text{한국}} & X_{RoW, \text{영국}} & \cdots & X_{RoW, RoW} \end{bmatrix} + \begin{bmatrix} Y_{\text{한국}} \\ Y_{\text{영국}} \\ \vdots \\ Y_{RoW} \end{bmatrix}$$
(실 1)

위의 세계 투입산출표 구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산출은 최종수요 및 중 간재 수요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총산출에서 각국이 기여한 중간재 비중을 구하기 위하여 중간재를 총산출로 나누면 투입계수행렬인 A가 도출된다.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아래 의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bmatrix} X_{\text{한}} \\ X_{\text{ঔ}} \\ \vdots \\ X_{RoW} \end{bmatrix} = \begin{bmatrix} A_{\text{한}} \\ A_{\text{한}} \\ A_{\text{\%}} \\ A_{\text{\%}} \\ A_{\text{\%}} \\ A_{\text{\%}} \\ A_{\text{\%}} \\ A_{\text{Ro}} \\ A_{\text{\%}} \\ A_{\text{Ro}} \\ A_{\text{\%}} \\ A_{\text{Ro}} \\ A_{\text{W}} \\ A_{\text{Ro}} \\$$

부록 표 2-1. 투입계수행렬(7개 지역, 1개 산업)

А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1)	RoW
한국	0.469	0.001	0.001	0.006	0.004	0.002	0.004
영국	0.002	0.377	0.002	0.001	0.001	0.008	0.003
미국	0.015	0.014	0.383	0.006	0.004	0.010	0.016
중국	0.028	0.006	0.007	0.602	0.008	0.008	0.012
일본	0.016	0.002	0.002	0.006	0.427	0.002	0.007
EU(-1)	0.012	0.044	0.009	0.009	0.003	0.435	0.027
RoW	0.082	0.028	0.032	0.038	0.034	0.037	0.421

자료: WIOD(검색일: 2016. 10. 1)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투입산출계수는 한 국가가 자국 또는 상대국에서 생산된 중간재의 사용비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투입산출 계수값 중에서 $A_{한국,영국}$ 은 한국에서 생산된 중간재가 영국 생산에 사용된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식 2)는 아래의 (식 3)으로 변형시킬 수 있으며 [I-A]-1은 생산유발계수행 렬 혹은 레온티에프 역행렬(Leontief inverse matrix)이라고 부른다. 생산유발계수행렬은 상대국의 최종수요(Y)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자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의 총생산 증가를 나타낸다. [I-A]-1을 B로 치환하면 $B_{한국,영국}$ 은 영국에서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한국에서의 총생산 증가를 의미한다.

$$\begin{bmatrix} X_{\mathfrak{V}\mathfrak{T}} \\ X_{\mathfrak{S}\mathfrak{T}} \\ \vdots \\ X_{RoW} \end{bmatrix} = \begin{bmatrix} I - A_{\mathfrak{V}\mathfrak{T},\mathfrak{V}\mathfrak{T}} - A_{\mathfrak{V}\mathfrak{T},\mathfrak{S}\mathfrak{T}} & \cdots & -A_{\mathfrak{V}\mathfrak{T},RoW} \\ - A_{\mathfrak{S}\mathfrak{T},\mathfrak{V}\mathfrak{T}} & I - A_{\mathfrak{S}\mathfrak{T},\mathfrak{S}\mathfrak{T}} & -A_{\mathfrak{S}\mathfrak{T},RoW}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 A_{RoW,\mathfrak{V}\mathfrak{T}} & -A_{RoW,\mathfrak{S}\mathfrak{T}} & \cdots & I - A_{RoW,RoW} \end{bmatrix}^{-1} \begin{bmatrix} Y_{\mathfrak{V}\mathfrak{T}} \\ Y_{\mathfrak{S}\mathfrak{T}} \\ \vdots \\ Y_{RoW} \end{bmatrix}$$
(A) 3)

$$=\begin{bmatrix}B_{\mathfrak{G}^{\pm},\mathfrak{G}^{\pm}} & B_{\mathfrak{G}^{\pm},\mathfrak{G}^{\pm}} & \cdots & B_{\mathfrak{G}^{\pm},Ro\,W} \\ & & & & & \\ B_{\mathfrak{G}^{\pm},\mathfrak{G}^{\pm}} & B_{\mathfrak{G}^{\pm},\mathfrak{G}^{\pm}} & & B_{\mathfrak{G}^{\pm},Ro\,W}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 B_{Ro\,W,\mathfrak{G}^{\pm}} & B_{Ro\,W,\mathfrak{G}^{\pm}} & \cdots & B_{Ro\,W,Ro\,W}\end{bmatrix}\begin{bmatrix}Y_{\mathfrak{G}^{\pm}} \\ Y_{\mathfrak{G}^{\pm}} \\ \vdots \\ Y_{Ro\,W}\end{bmatrix}$$

(식 3)은 행렬 표현법을 이용하여 아래의 (식 4)와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X = (I - A)^{-1}Y = BY \tag{2 4}$$

[표 4-2]를 이용하여 실제로 계산한 생산유발계수행렬 B는 [부록 표 2-2] 이다.

부록 표 2-2. 생산유발계수행렬(7개 지역, 1개 산업)

В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1)	RoW
한국	1.888	0.005	0.005	0.030	0.013	0.008	0.013
영국	0.007	1.608	0.007	0.005	0.002	0.025	0.010
미국	0.055	0.041	1.624	0.032	0.016	0.032	0.047
중국	0.144	0.030	0.034	2.522	0.038	0.039	0.056
일본	0.057	0.007	0.008	0.030	1.748	0.007	0.022
EU(- 1)	0.058	0.130	0.032	0.050	0.015	1.780	0.086
RoW	0.289	0.091	0.096	0.179	0.108	0.120	1.744

자료: WIOD(검색일: 2016. 10. 1)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투입계수행렬인 A를 이용하여 한국의 총산출에서 직접 국내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171) $V_{\rm 한국}$ 은 아래의 (식 5)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V_{한국} = I - \sum_{s} A_{s, 한국}$$
 (식 5)
 $(s =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1), Ro W)$

결국 $V_{\dot{v}}$ 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 유입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에서 구한 $Vs(s=\dot{v}$ 중국, 이국, 중국, 일본, EU(-1), RoW)를 하나의 행렬 V로 표현하면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 = \begin{bmatrix} V_{\text{한국}} & 0 & \cdots & 0 \\ 0 & V_{\text{영국}} & \cdots & 0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0 & 0 & \cdots & V_{RoW} \end{bmatrix}$$
(식 6)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비중행렬은 아래의 (식 7)을 이용해 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비중행렬은 국내에서 재화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및 해외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2]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비중행렬 VAS는 [부록 표 2-3]에 제시하였다. 부가가치비중행렬의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부록 표 2-3]에서 한국의 재화 한 단위 생산을 위한 한국 자신 및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1), RoW의 부가가치비중은 각각 71.2%, 0.4%, 3.1%, 4.8%, 2.9%, 2.9%, 그리고 14.7%인 것이다.

¹⁷¹⁾ the share of direct domestic value added in total output.

$$VAS = \begin{bmatrix} V_{\text{한}}, 0 & \cdots & 0 \\ 0 & V_{\text{G}}, \cdots & 0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0 & 0 & \cdots & V_{RoW} \end{bmatrix} \begin{bmatrix} B_{\text{한}}, \text{한}}, B_{\text{한}}, \text{G}, \text{G}}, B_{\text{한}}, \text{G}}, \cdots & B_{\text{한}}, RoW} \\ B_{\text{G}}, \text{한}}, B_{\text{G}}, \text{G}}, C & \cdots & B_{\text{G}}, RoW}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B_{RoW}, \text{한}}, B_{\text{G}}, \text{G}}, \cdots & B_{\text{RoW}}, RoW} \end{bmatrix} (A 7)$$

$$= \begin{bmatrix} V_{\text{한}}, B_{\text{D}}, \text{E}}, \text{E}}, V_{\text{D}}, A_{\text{E}}, \text{E}}, A_{\text{E}}, \text{E}}, A_{\text{E}}, \text{E}}, C & \cdots & V_{\text{E}}, B_{\text{E}}, RoW} \\ V_{\text{G}}, B_{\text{G}}, \text{E}}, V_{\text{G}}, B_{\text{G}}, \text{G}}, C & \cdots & V_{\text{G}}, B_{\text{G}}, RoW}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V_{RoW}B_{RoW}, \text{E}}, V_{RoW}B_{RoW}, \text{E}}, V_{RoW}B_{RoW}, RoW} \end{bmatrix} (A 7)$$

(식 7)은 행렬 표현법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식 8)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VAS = VB$$
 (4) 8)

부록 표 2-3. 부가가치비중행렬(7개 지역, 1개 산업)

VAS	한국	영국	미국	중국	일본	EU(-1)	RoW
한국	0.712	0.002	0.002	0.011	0.005	0.003	0.005
영국	0.004	0.850	0.003	0.003	0.001	0.013	0.005
미국	0.031	0.023	0.915	0.018	0.009	0.018	0.026
중국	0.048	0.010	0.011	0.837	0.013	0.013	0.018
일본	0.029	0.004	0.004	0.016	0.909	0.004	0.011
EU (-1)	0.029	0.065	0.016	0.025	0.008	0.888	0.043
RoW	0.147	0.047	0.049	0.091	0.055	0.061	0.890

자료: WIOD(검색일: 2016. 10. 1)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3. HS Code 2단위 품목별 코드 매칭표

부록 표 3-3. HS Code 2단위 품목별 코드 매칭표

HS		HS	
Code	산업분류	Code	산업분류
(2단위)		(2단위)	
01		50	
02		51	
03		52	
04		53	
05		54	
06		55	
07		56	
80		57	
09		58	가죽, 섬유, 신발
10		59	기독, 납ㅠ, 산글
11		60	
12	누리스시교	61	
13	농림수산품	62	
14		63	
15		64	
16		65	
17		66	
18		67	
19		68	
20		69	
21		70	비금속광물
22		71	
23		72	
24		73	철강

부록 표 3-3. 계속

HS Code (2단위) 25 공산품 74 75 26				
(2단위) 25			HS	
25		산업분류		산업분류
26 광산품 75 27 28 29 30 31 32 33 34 34 35 36 37 38 39 월라스틱 및 고무 40 41 71 41 71 42 71 41 71 42 71 43 44 45 46 47 48 48	(2단위)		(2단위)	
26	25	광사포	74	
28 29 30 31 31 32 33 34 84 82 83 34 35 86 87 88 88 39 40 플라스틱 및 고무 90 90 광학기기 41 41 71축, 섬유, 신발 92 43 44 45 46 47 48 48	26	028	75	
29 30 30 31 80 81 82 83 84 일반기계 35 86 87 88 88 39 40 플라스틱 및 고무 90 광학기기 41 7축, 섬유, 신발 92 93 44 45 46 47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27		76	
30 31 32 33 34 82 83 84 일반기계 85 전기, 전자부품 86 87 4송장비 39 골라스틱 및 고무 90 광학기기 41 71록, 섬유, 신발 92 93 44 45 46 47 48 목재, 코르크, 종이, 인쇄 96 97 98	28		78	
31 32 33 34 82 83 84 일반기계 35 86 86 87 37 88 89 90 광학기기 41 91 가죽, 섬유, 신발 92 93 44 44 45 46 47 48 49 45 98	29		79	금속
32 화학 82 83 84 일반기계 85 전기, 전자부품 86 86 87 수송장비 88 89 90 광학기기 41 기죽, 섬유, 신발 92 93 44 45 46 47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30		80	
33 화학 83 34 84 일반기계 35 85 전기, 전자부품 36 87 88 37 88 89 40 플라스틱 및 고무 90 광학기기 41 91 91 42 가죽, 섬유, 신발 92 43 94 44 94 95 기타 46 47 96 47 98	31		81	
33 84 일반기계 85 전기, 전자부품 36 86 87 수송장비 88 89 90 광학기기 41 91 가죽, 섬유, 신발 92 43 93 44 45 46 목재, 코르크, 종이, 인쇄 96 97 98	32	취하	82	
35 정 전기, 전자부품 36 86 87 수송장비 38 39 플라스틱 및 고무 89 90 광학기기 41 91 42 가죽, 섬유, 신발 92 93 44 45 45 46 목재, 코르크, 종이, 인쇄 96 97 98	33	Y의	83	
36 37 88 87 수송장비 38 39 플라스틱 및 고무 90 광학기기 41 91 42 가죽, 섬유, 신발 92 93 44 45 45 46 47 48 목재, 코르크, 종이, 인쇄 96 97 98	34		84	일반기계
37 88 88 88 39 40 90 광학기기 91 41 91 42 가죽, 섬유, 신발 92 93 44 45 46 47 48 목재, 코르크, 종이, 인쇄 98	35		85	전기, 전자부품
38 88 수송장비 39 플라스틱 및 고무 90 광학기기 41 91 42 가죽, 섬유, 신발 92 43 93 44 45 46 목재, 코르크, 종이, 인쇄 96 97 98	36		86	
38 88 89 40 90 광학기기 41 91 42 가죽, 섬유, 신발 92 93 44 45 45 95 71타 96 46 47 48 목재, 코르크, 종이, 인쇄 98	37		87	
40 플라스틱 및 고무 90 광학기기 41 91 42 가죽, 섬유, 신발 92 43 93 44 94 45 95 기타 46 97 48 98	38		88	T684
40 90 광학기기 41 91 42 가죽, 섬유, 신발 92 43 93 44 45 95 46 47 48 목재, 코르크, 종이, 인쇄 96 97 98	39	#31.4EI DI 7.D	89	
42 가죽, 섬유, 신발 92 43 93 44 94 45 95 기타 46 47 48 97 98	40	글디스닉 및 고구	90	광학기기
43 93 94 94 95 기타 96 97 98	41		91	
44 45 46 47 48 목재, 코르크, 종이, 인쇄 96 97 98	42	가죽, 섬유, 신발	92	
45 46 47 48 48 95 96 97 97 98	43		93	
46 47 48 목재, 코르크, 종이, 인쇄 96 97 98	44		94	
목재, 코르크, 종이, 인쇄 97 48 98	45		95	기타
47 97 48 98	46		96	
	47	숙제, 고드크, 꽁이, 인쇄	97	
49 99	48		98	
	49		99	

Executive Summary

Economic Impacts of Brexi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KIM Heungchong et al.

The Brexit referendum, which took place on 23 June, 2016, revealed the British people's willingness for their country to leave the EU. The year 2017 will witness the beginning of Brexit negotiations between the UK and the EU taking place in a time full of uncertainties arising from the possibility of the negotiations extending beyond the originally planned duration of two years, ambiguity in EU's competency areas leading to a complicated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Council, whether or not British MEPs should be given voting rights i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so forth.

One of the key issue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UK and the EU in the post-Brexit era is whether or not the UK maintains full access to the Single Market,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issue of if the principle of free movement of the four factors of people, capital, goods and services still holds after Brexit. It will be a key factor to evaluate accessibility to the Single Market if British sovereignty on commercial policy and immigration is restored, and the principle of homogeneity does hold. Thinking carefully over several cases of the models of Single Market, half Single Market, or non-Single Market would lead to a pessimistic reasoning that the UK would hardly be able to maintain Single Market accessibility, and be inclined to take the non-Single Market model.

With regard to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Brexit on the world and Korea, Brexit is expected to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world in the short-term while having positive impacts in the longer-term. The world GDP may decline by 0.06–0.34% in 2017 and 0.12–0.66% in 2018, and Korea's GDP may also shrink by 0.06–0.35% in 2017 and 0.15–0.78% in 2018. Negative impacts would be spread out not only in the stock market and employment, but also in the areas of consumption and investment, with a harder hit being dealt to investment than consumption.

In the medium-to-longer term, Brexit brings about positive impacts on the third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terms of economic growth and consumer welfare. Korea's economic growth would be accelerated by 0.088% and 0.043% in the cases of Hard Brexit and Soft Brexit, respectively. Without a Korea-UK FTA, the positive impacts of Brexit on Korea's growth rate would diminish by 0.038% (Hard Brexit) and 0.037% (Soft Brexit) from the previous positive numbers. Hard Brexit will decrease the growth rates of the UK and the EU by -1.56% and -0.18%, while Soft Brexit will do so by -0.949% and -0.133%. Establishing a new Korea-UK FTA results in a positive impact on the UK economy by 0.018% (Hard Brexit) and 0.017% (Soft Brexi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Brexit on the production and

export of Korea's industries, too. First, Brexit leads to shrinking exports of Korea to the UK, and negative impacts would be bigger in the case of industries with stronger GVCs, such as manufacturing. Second, an elasticity analysis shows us that the automobile industry is one of the most sensitive industries in Korea's exports to the UK. while the textile and leather industries are the least. With regard to Korea's export to the EU, primary metals and chemicals are susceptible to GDP changes in the EU led by Brexit, while the automobile industry is less so. Third, Brexit leads to positive impacts on Korea's industrial production in the long-term if Korea-UK preferential trade relations are established. Such a positive influence would be larger in the case of Hard Brexit than that of Soft Brexit. Automobiles and textile are estimated to be the biggest beneficiary industries. Without a Korea-UK FTA, most of industrial production shrinks in the case of Soft Brexit, while no clear signs can be observed in the case of Hard Brexit. Fourth, Brexit may lead to rather moderate impacts on the Korean banking and financial sector. The negative impacts of losing passporting rights in the European continent will be minimized at least in the short-term. as most of Korean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have maintained a separate market strategy between the UK and the rest of the EU, and/or have not actively used the rights in their business. In the longer-term, it is true that rising uncertainty and costs from Brexit will be harmful to outbound activities of Korean financial companies. As for the inbound area,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s foreign banking and financial companies' business activities in Korea will be the attractiveness of Korean assets in

general, related to fundamental economic conditions rather than institutional changes led by Brexit.

In the post-Brexit era, Korea-EU and Korea-UK economic and commercial relations will be heavily dependent upon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Korea-EU FTA, EU-UK relations after Brexit, the contents of the Brexit agreement, economic conditions in the UK and the EU after Brexit, and so on. As both Korea and the EU have considerably benefited from the Korea-EU FTA, it is now a proper time to think about how to upgrade this FTA after five years of entry into force. Therefore, it would be utmost important to retain preferential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K after Brexit, which requires the initiative to embark on a new Korea-UK FTA after the Brexit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the UK is concluded.

A way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of an institutional vacuum in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UK and Korea after Brexit, would be to include an interim clause of "extension of the preferential factors of the existing Korea-EU FTA to the case of Korea-UK" in a revised Korea-EU FTA.

Based upon the analysis, we draw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process of a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on market opening initiatives such as FTAs needs to be carefully designed and strictly implemented. Brexit is an exemplary case that symbolizes the anti-liberalization and protectionism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This is, in a sense, like a revolt by the ordinary people against elitism and globalization led by elites in the advanced economies. In order for market opening policies to successfully

exploit foreign markets and enhance efficiency in the domestic market through strengthened competition, the general public should be brought to realize the benefits of market opening policies, which requires a more comprehensive and well-designed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process.

Second, better communication and closer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private companies and related industry associations are needed to cope with the growing possibilities of negative impacts of Brexit on some industries with higher GVCs, as those industries are more susceptible to negative impacts from stronger direct effects.

Third, Korea-UK relations need to be newly developed apart from the Korea-EU relations. Brexit will accelerate the divergence of the UK economy from the EU, which will require an independent policy towards the UK. Trade policy toward the UK needs to consider the multi-layered characteristics in the economic relations of the UK not only with the EU but also with transatlantic nations, the Commonwealth, East Asia, etc. In this regard, Korea needs to make full use of strengthening its financial network with the UK, especially for the inbound business area, as the UK's business activities in the banking and financing sector may become more active and worldwide after Brexit.

Fourth, the contemporary Korea-EU FTA needs to be revised in due course. The first step to revise the pact is to include any change of circumstances after Brexit. Additional protocol on the occasion of Brexit is to be developed and attached to the original text. The second step to revise the pact is to embark on a new deal for

full-revision of the pact, making considerations to rebalance mutual interests, as Brexit provides the off-balance fields of interests in the existing Korea-EU FTA. The five years of entry into force of the FTA, together with Brexit, raise the necessity for revision of the pact, too. A temporary extension of the preferential provision to the case of Korea-UK needs to be reflected in the revised pact.

Fifth, it is not too early to think about a concrete type of Korea-UK FTA. There is no reason for the Korea-UK FTA to be a duplication of the Korea-EU FTA, as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UK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EU. A new pact between Korea and the UK should reflect careful consideration on the areas that the UK had asked for but failed to include within the EU's request lists in the Korea-EU FTA, detailed compilation of the industries with comparative edges of the two, and strategic judgement on the change in the cumulation method between the UK and the EU after Brexit. We need to consider the issues in market opening in services and in enforcement of IPR, especially in agricultural IPR, and those in sustainable development areas.

Sixth, as mentioned above, Brexit is a symbol of protectionism and anti-globalization, and it is not good for a small, open economy like Korea to contribute to this trend. Therefore, we should make honest efforts to set out a virtuous mechanism to spread the fruits of market opening out to all people in the society and to firmly abide by trade liberaliz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OECD and WTO, and multilateral fora like G20, ASEM, APEC, and so on.

★ 15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6년

- 16-01 뉴노멀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 이승신ㆍ이현태ㆍ나수엽ㆍ조고운ㆍ오윤미ㆍ이준구
- 16-02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김경훈 · 최혜린 · 강은정
- 16-03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ㆍ이동은
- 16-04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ㆍ이효영ㆍ박지현ㆍ이준원ㆍ김도희
- 16-05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김종덕 · 조문희 · 엄준현 · 정민철
- 16-06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이승래
-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괴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 임수호 · 이효영 · 최장호 · 최지영 · 최유정
- 16-08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최장호·임수호·이정균·임소정
- 16-09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 임호열 · 이현태 · 김홍원 · 김준영 · 오윤미 · 최필수
- 16-10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 김규판 · 이형근 · 김승현 · 이정은
- 16-11 한 · 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 곽성일 · 정재완 · 김제국 · 신민이 · 라미령
- 16-12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 이 응·배찬권·이정미·신세린·김신주
- 16-13 SDG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 권 율·정지원·허윤선·정지선·이주영

문진영 · 정지원 · 송지혜 · 이성희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노수연 김원기 · 윤여준 · 김종혁 · 권혁주 · 천소라 16-17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 김흥종 외 김흥종 · 이철원 · 이현진 · 양효은 · 강유덕 16-20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 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16-22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 박영호 · 방호경 · 정재완 · 김예진 · 이보얀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강태수 · 임태훈 · 서현덕 · 강은정

최혜린 · 한민수 · 황운중 · 김수빈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한민수 · 서봉규 · 임태훈 · 강은정 · 김영선

15-06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15-0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정은이

최낙균 · 박순찬

김종덕 · 성한경

■ 2015년

- 16-18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
- 16-19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
- 박정호 · 민지영 · 강부균 · 윤지현 · 권가원 · 예브게니 홍

16-21 국제유가 하락과 한 · 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

임호열·최장호·방호경·임소정·김준영·주셴핑·진화림·

- 16-16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
- 16-15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이승래 · 강준구 · 김혁황 · 박지현 · 이준원 · 이주미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수연 · 오종혁 · 박진희 · 이한나 15-10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이장규 · 김부용 · 최필수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이효진 15-11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정지현 · 김홍원 · 이승은 · 최지원 15-12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최보영 · 방호경 · 이보람 · 유새별 15-13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김준영 · 임소정 · 최유정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이신애 15-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 · 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 문진영 · 권 율 · 이주영 · 송지혜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곽성일 · 이창수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이민영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 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윤아 · 나희량 · 이재호 · 신민금 · 신민이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 정지선 · 박현주 ·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윤여준·이 웅·문성만·권혁주

-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 · 러 협력방안 / 제성훈 · 강부균 · 민지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5-01
- 15-26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 서은숙 · 빈기범
- - 전략지역심층연구 15-02
 - 15-27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 김한성 · 이홍식 · 강문성 · 송백훈

 - 전략지역심층연구 15-03

 - · 조희문 · 권정인 · 김혜민 전략지역심층연구 15-05
 - 15-30 한 · 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
 - 한홍열 · 윤성욱 · 변현섭 · 박지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5-06
 - 15-31 21세기 한 · 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 전략지역심층연구 15-07
- 부문을 중심으로 / 정경원 · 조구호 · 신정환 · 김원호 · 문남권 · 정기웅 · 하상섭

- 전략지역심층연구 15-04 15-29 중남미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 이미정

전략지역심층연구 15-08

전략지역심층연구 15-09

윤택동 · 이성준 · 이재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10

15-32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 원동욱 · 성원용 · 김재관 · 백준기

15-33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 · 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 박복영 · 김용복 · 박철형 · Shaimaa Hussien

15-35 아프리카 모바일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개나와 우간다를 중심 으로 / 황규득 · 장용규 · 서상현 · 허서희 · 육숙희 · 최두영

15-34 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어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

15-28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 이순철 · 김완중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하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이라비이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장윤희

- 15-36 중국 · 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 임호열 · 김영찬 · 방호경 · 김준영 · 최필수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2 15-37 북한의 경제 특구·개발구 지원방안 / 양문수·이석기·김석진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3
- 15-38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 장형수 · 박해식 · 박춘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4
- 15-39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 David Dollar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5 15-40 중 ·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中朝经济与合作朝鲜变革发 展展望) / 찐저 · 쉬워지 · 위즈쌴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6 15-41 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統一韓国におけるインフラ 整備と日本の役割) / 이누이 토모히코 · 권혁욱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7 15-42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사 점과 교훈(Основные черты и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г
- о переход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оссии: политические вы воды и уроки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Vasily Mikheev and
- 2014년 14-01 체제전화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Vitaly Shvydko

-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지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14-07 TPP 주요국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업준현 · 이주미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시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엽 · 이효진 · 이장규 · 박민숙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博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 · 이 웅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 · 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웅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 · 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채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시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 · 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1 14-26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3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4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5 14-30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 성한경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6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8

전재성 · 김성배

имовна)

편주현

-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2
- United States) /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 14-23 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14-27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朝鲜半岛统一与中国的

14-28 한 토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韓国統一と日本経済) /

14-29 한반도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의비용 분석 (Анализзатративыго

14-31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 강문성 · 김형주 · 박순찬 · 이만종 · 이영훈 · 이종화 · 이홍식 ·

14-32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

최보영 · 선주연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 최유정

14-33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협력방안 /

国家利益) / 진징이(金景一) · 진창이(金强一) · 베야오인쩌(朴恩哲)

후카오 코지(深尾京司) · 이누이 토모히코(乾友彦) · 권혁욱(権赫旭)

ддляРоссиивоссоединенияКорейскогополуостро ва) / 알렉산더 제빈(ЖЕБИН Александр Захарови ч)·스베틀라나 수슬리나(СУСЛИНА Светлана Сераф

김흥종(金興鍾)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석·박사 미국 UC Berkeley Fulbright Fellow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現, E-mail: hc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A Changing Landscape(공저, 2013) 『아세안에서 아시아공동체(AU)로: EU의 사례로 본 아세안지역 통합의 현실과

미래」, Global Affairs, 15(3)(2015) 외 김영귀(金榮貴)

한양대학교 경제학 학사, 일반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연구위원

(現, E-mail: yg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공저, 2014)

한민수(韓敏洙)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Penn State University Ph.D.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본부 부연구위원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5)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공저, 2015) 외

김종덕(金鍾德)

저서 및 논문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kim.jd@kiep.go.kr)

저서 및 논문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공저, 2014)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5) 외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 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공저, 2015) 외

조문희(趙文熙)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경제학) 학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現, E-Mail: mhcho@kiep.go.kr)

저서 및 논문

"Essays on the effects of GATT/WTO and financial crisis on international trade" (2015) 외

임유진(林瑜眞)

김 규 건 (於水)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연구원 (現, E-mail: yjlim@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저서 및 논문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 점검」(공저, 오늘의 세계경제 16-26)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공저, 오늘의 세계경제 16-17) 외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문연구위원

(Email: youngloko@korea.kr)

저서 및 논문

"A Commo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EU-Korea Relations" *The*

Strengthening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5) WTO Legality of Enforcement Measures of the Human Rights

Conditionality Clause (통상법률 2016) 외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The Legal Framework for

천창민(千昶民)

McGill대학교 법학 석사

Hamburg대학교 법학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 연구위원(금융법제팀장)

(現, E-mail: cc@kcmi.re.kr)

저서 및 논문

연구총서 15-02(공저, 2015) 『미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와 시사점』자본시장연구원 조사보고서 15-08 (2016) 외

최순영(崔淳永)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연구위원 (現, E-mail: soonchoi@kcmi.re.kr)

저서 및 논문

자본시장연구원(2015) 『국내 증권사 해외진출 특징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2016) 외

『국제가치사슬 구조에서 본 산업별 경쟁력 분석 및 정책과제』(공저, 2015)

『미국 증권회사의 특화-전문화 전략: 부티크IB 사례 중심으로』,

미국 시카고대학교(The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학사, 석·박사

산업연구원 글로벌전략연구단 부연구위원 (現, E-mail: swhong@kiet.re.kr)

Texas A&M 대학교 경제학 박사

저서 및 논문

연세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 연구위원 (現, E-mail: shmin@kiet.re.kr)

저서 및 논문

『대내외 경제충격의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공저, 2015)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침체 가능성 검토』(공저, 2015)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이번베표 바가면 이제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А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기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한글)	(한문)
(성명)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	<u> </u>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	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딩	당난에 ✔ 표	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연구자회			
* 회원번호		* 갱신통보시	·····································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is 16-17



Economic Impacts of Brexi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KIM Heungchong et al.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되자, 전 세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국민투표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EU 탈퇴과정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브렉시트가 향후 몇 년 동안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브렉시트의 복합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 연구의 일환으로, 브렉시트 탈퇴협상의 진행상황과 향후 전망, 탈퇴과정상에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과 법적 쟁점, 브렉시트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 · EU FTA를 포함한 한 · EU 경제통상관계의 변화에 대한 경제학적 · 법적 해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등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ISBN 978-89-322-1632-4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